표지와 같은 도비라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날짜 확인해주세요!

창간호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회장 박준석입니다.

글로벌시대에 있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은 보이지 않는 갈등과 정치적 · 경제적 · 문화적 · 군사적 · 환경적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국가와 국민에 심각한 국익과 경제적 피해와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 강화와 국가적 손실방지를 위한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안보체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안보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속되는 포괄안보, 위기관리와 테러, 사이버테러, 산업스파이, 경호, 재난, 재해, 치안, 범죄의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복구, 관리 등을 포함하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법 정립과 대응체계, 복구관리 주무부서의 역할과 기능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학회에서는 대한민국도 이러한 위협과 재난에 대한 포괄적인 국가 국민안전위기관리체계를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 국가기관 등의 협업을 통하여 위기관리의 예방 대응 복구 등의 전문적인 대처방안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선진국형 위기대응 메뉴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체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의 위기관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재정립과 포괄적인 국가안보 · 위기관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공조하여 산 · 학 · 관 협력을 통한 한국형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본 학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학문적 정립의 구축을 위해서 국방, 외교, 경제, 사회, 정치, 법학, 경영, 치안, 범죄, 위기관리, 재난 분야의 정부부처(청와대, 국정원,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법무부, 경찰 등)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기능과 활동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학회의 임무로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각 정부부처의 임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질적 국민안전과 국익을 창출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발전에 정책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학문과 대학의 학과 관련 신설과 전공자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세계적인 전문서적을 만들어 국가와 국민의 안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일임할 생각입니다. 처음으로 범위가 넓지만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있어 안전 분야에 최초로 학회를 만드는 학자로서 늘 부족하고 겸손하게 학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박준석 배상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회장
(사)한국안전교육정책연구소 이사장
한국경호경비학회 명예회장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발간사

오늘날 개인과 사회, 국가에 주요한 안보 또는 안전의 위협이 되고 있는 문제들은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다. 그것들은 이전과는 달리 더 이상 개별적인 형태로 이해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도 없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메르스 상황과 같은 각종 재난이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의 문제,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안보위협, 그리고 점증하는 중국의 노골적 제국주의 경향들은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때문에 통합적인 이해와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점점 더 이러한 여러 안보와 안전관련 상황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련 학문과 전문지식들을 융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이 학술지는 그러한 상황적 필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융합 학문적 또는 융합 지식적 논의들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틀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년 6월 30일

한국국가안보 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장 윤민우

한국국가안보 국민안전학회 회장 박준석

차 례

■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나아갈 방향
강 욱 ····· 9

■ 북한 사이버 테러의 실상과 대응 방안
권혁빈 ····· 37

■ 국가안보에 관한 다루어지지 않던 논의들
윤민우 ····· 67

■ 포괄안보시대 융합적 안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이홍기 ····· 97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연구
– 정의, 역사,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최 관 ····· 121

Contents

- A New Direction fo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Kang, Uk ····· 9

- The Fact of Cyber Terrorism in North Korea and the Plan for Reaction
  Kwon, Hyuk Bin ····· 37

- Think the Unthinkable on National Security
  Yun, Min woo ····· 67

- Necessity and Progress Direction on Construction of Integrated Security System in Inclusive National Security Period
  Lee, Hong gi ····· 97

- A Study on the Korean Disaster and Security Management Act for Civil Safety: Focus on the Definition, History, Problem, and Improvement
  Choi, Kwan ····· 121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 제1호(2015)
투고일 2015. 05. 04, 심사일 2015. 06. 10, 게재확정일 2015. 06. 17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나아갈 방향

강 욱

KNSPSA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나아갈 방향

강 욱*

[국문초록]

지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어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국민안전처의 신설은 그 규모와 권한 강화 측면에서 미국의 국토안보부 창설과도 비견되며 재난관리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일본과 비교하였을 때도 시스템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평가받을 만 하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의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금까지의 논의가 기관 출범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측면의 논의에 소홀하여 마스터플랜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출범하여 충실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민안전처가 이러한 대책을 마련할 때 재난관리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모든 위험 접근법(All-hazard approach)을 적용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선진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환경적 특성을 감안한 방식을 적용하여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제어: 재난관리, 국민안전처, 모든 위험 접근법, 국가재난안전관리 체계, 한국

* 본 논문은 2014년 12월 5일 용인대학교에서 개최한 2014년 경호경비학회 동계학술대회글로벌 안보환경 시대의 경호, 경비, 보안, 최근 동향과 이슈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목 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재난안전관리체계
Ⅲ. 외국의 재난안전관리체계
Ⅳ. 평가 및 개선방향
Ⅴ. 결 론

Ⅰ. 서 론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기존의 국가 재난대응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산된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2014년 11월 19일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다. 국민안전처의 신설은 국가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조직과 인사, 권한 등 행정적 측면에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원이 1만 명이 넘는 거대 부처가 출범하였고, 이 부처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차관 외에도 실국장 등 고위급 공무원의 자리가 증가하는 한편, 부처에 관련기관에 대한 경고나 담당공무원의 징계요구권을 포함하는 안전관리 관련 총괄 조정권,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재난관련 특별교부세 배분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 조직의 권한도 대폭 강화되어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출범과도 비견되고 있는데 이는 안전관리에 대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포함한 적폐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안전처의 신설은 우리나라의 재난대응 시스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되지만, 국민안전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적지 않은 우려도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의 인력을 흡수하여 이들이 기존

조직의 칸막이를 넘어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거나,[1] 국민안전처의 신설이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다소 미흡하여 사전예방보다는 사후 수습에 역점을 둔 것 같다는 의견[2]도 있었으며,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마스터플랜 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서[3] 앞으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출범 이후 2015년에도 '승진잔치'가 계속되고 있는 비판이 있다.[4]

이는 지금까지의 논의가 주로 국민안전처의 신설과 관련법의 제·개정 등 주로 하드웨어 측면에 집중하였고, 하드웨어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소프트웨어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민안전처는 2015년 2월까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재난관리와 대응에 대한 원칙,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서의 기초적인 대책과 실행계획이 담겨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현황을 재난관리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앞으로 국민안전처가 갖추어야 할 소프트웨어 측면과 관련하여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모든 위험접근법(All-Hazard Approach)을 통한 재난대응을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향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Ⅱ. 한국의 재난안전관리체계

1. 국민안전처 신설관련 정부조직 개편내용[5]

최근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드러난 기존의 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동안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

1) 헤럴드 경제 2014. 11. 19. <사설> 국민안전처, 골든타임 대처할 화학적 통합이 과제
2) 경향신문, 2014. 11. 20. [기고] 국민안전처에 바란다.
3) 서울신문, 2014. 11. 21. 마스터플랜도 없이 출범한 국민안전처
4) 연합뉴스, 2015. 2. 2.'세월호 후속 부처'국민안전처 새해에도승진 잔치'
5) 이하 정부조직 개편관련 내용은 안전행정부 보도자료"안전한 사회 구현 및 공직개혁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법」 개정·시행으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출범(14. 11. 18)"의 주요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응체계를 통합하여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다. 기능측면에서 국민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하여 신설되었으며,[6] 기존 해양경찰청의 수사·정보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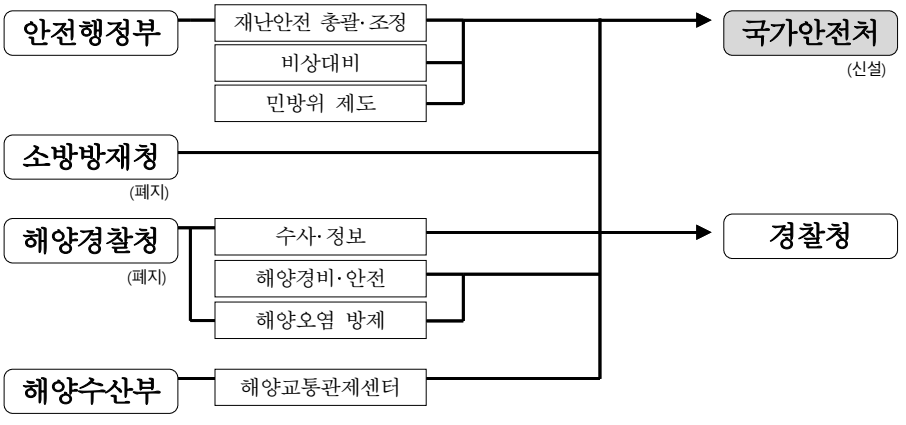

<그림 1> 국가안전처 신설 관련 부처별 기능개편 내용

※ 출처: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재구성

이러한 국민안전처의 신설은 재난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국민안전처 신설관련 주요 내용

항목	세부내용
재난안전 현장대응기능 대폭보강	(육상 분야) 현행 「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대폭 보강하여 현행 「112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를 확대·개편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 '15년 이후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및 「호남119특수구조대」 추가 신설예정 (해상 분야)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개편하고, '15년 이후 「동해특수구조대」와 「서해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 예정

6) 안전행정부 보도자료"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14. 5. 28)" 참조

항목	세부내용
육상과 해상재난 통합관리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개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 통합관리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로 개편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재난실'을 신설
재난안전 비서관 신설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 보좌기능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 비서관직 신설

또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의 정원은 각 부처로부터 이체 받는 인력 9,372명을 포함하여 총 10,045명으로 출범하며, 특히 인력증원 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소방본부는 350명, 해양경비안전본부는 543명, 안전관리 기능에 164명이 2단계에 걸쳐 증원될 예정이다.

2. 국민안전처 신설관련 법령개정내용[7)]

먼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민안전처의 신설근거를 마련하였는데, 국민안전처의 수행 기능, 기관장 등 직급, 각 부처 총괄·조정 권한 등을 동법 제22조의 2에 명시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소방, 방재, 해양에서의 경비·안전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둔다. 2) 국민안전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다음으로, 국민안전처 신설 등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재난 유형에 따라 안행부, 방재청이 각각 수행하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모든 기능이 국가안전처로 일원화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7) 이하 법령개정내용은"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14. 5. 28)"의 주요 부분을 발췌 요약한 것임

<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내용

항목	세부내용
재난관리기능의 일원화	–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재난관리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일원화 – 국가안전처장관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 수행 – 다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대형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조정 명시	– 재난안전관리에 관해 중앙부처·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명시 – 불이행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구 또는 기관 경고 등의 조치 가능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권을 행사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국가안전처장관에게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계획을 제출 – 국가안전처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검토결과를 통보 –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
재난발생시 현장지휘 체계 및 구조활동 지원 명문화	– 긴급구조활동 참여기관(경찰,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 또는 해양안전기관의 지휘를 받음 – 긴급구조활동 종료는 지역사고수습본부장(재난관리 주관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장), 통합지원본부장(시·군·구 부단체장) 등과 협의하여 결정 – 긴급구조활동 종료 후에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수습 상황을 총괄·조정
안전점검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안전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강화
기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재해대책수요)의 교부권 행사 –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운영 – 민간시설 위기 상황 매뉴얼 작성·훈련 의무화,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백서 작성·관리

Ⅲ. 외국의 재난안전관리체계

1.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구축과정[8)]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수립과정을 살펴보면, 1950년 이전까지는 대규모의 자연재

8) 이하 강욱·박준석·조준택(2014)의 미국 재난관리 및 대응의 연혁 관련부분을 발췌·요약함

난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주로 의회가 피해지역에 재난복구비를 지원하고 증액하는 내용의 한시적인 법령을 제정하여 대응하였다(Bullock 등, 2009). 1950년대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위험 대응보다는 민방위(Civil Defense)의 개념이 강조되었으며, 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시 동원을 위한 대비(Preparedness)가 중요시되었다. 소련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방민방위법(The Federal Civil Defense Act of 1950) 제정을 통해 핵방공호(Fallout Shelter)건설 및 보급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기도 하였다(DHS, 2006).

1960년대에는 미국에서 자연재해가 재난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대규모 지진과 허리케인의 피해가 심각하자 미국 행정부는 재난에 대한 연방차원의 접근방식을 변화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에 백악관 내에 비상대비실(Office of Emergency Preparedness)을 설치한 것이 대표적이다(DHS, 2006).

1970년대에도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닉슨 대통령 때는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를 정책의 범위에 포함시켜 연방정부의 재원을 군사적인 공격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자연재난대비를 위해 주정부와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양자활용 접근법(Dual-Use Approach) 개념이 도입되었는데(DHS, 2006), 이후 자연재난 발생시 여러 부처에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의 혼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일부 주에서 주지사 협회를 통해 재난관리를 전담하는 단일의 연방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여(Derthick, 2009) 조지아 주지사 출신인 카터 대통령은 1978년 재난대비, 경감, 대응과 관련된 기관들을 단일 연방기관인 통합시켜 연방 재난관리청(FEMA)을 창설하였다(Bullock 등, 2009).

1980년대에는 과거와 같은 심각한 자연재난은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핵공격 등 테러에 대한 정부의 대비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최우선순위의 미션으로 설정하였고(DHS, 2006) 이후 군 출신 Julius Becton이 청장으로 임명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 이 시대에 연방 재난관리청(FEMA)은 지역 재난관리에 관한 의미 있는 발전을 보이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존재자체에 회의론이 난무하던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재난관리 경력이 있는 최초의 청장으로 James Lee Witt를 임명하였다. 소련의 붕괴 등 국제정세의 변화로 핵공격의 위험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재난의 위험성은 증대하여 연방재난관리청은 정책의 중심을 위험관리에서

자연재난 등을 포함한 모든 위험접근법(All-Hazard Approach)로 전환하였다(DHS, 2006) Witt의 재임 시기는 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황금기로 평가되고 있는데(Comfort, Waugh & Cigler, 2012), Witt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조직의 변화를 일으키는 한편, 외부고객들과의 관계를 증진시켰으며 연방 재난관리청(FEMA)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다. 또한 이 시기에는 심각한 허리케인 등 자연재난이 없어 전문화가 전파된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Derthick, 2009). 주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재난관리 프로그램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재난관리 전문가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에 관한 학과나 학위프로그램도 다수 개설되는 등 재난관리 분야가 전반적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2000년대에는 9/11사태가 발생하면서 테러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부시대통령은 긴급명령을 통해 백악관 내에 국토안보실(Office of Homeland Security)을 설치하고 2002년에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에 서명하여 국토안보부를 창설하고 연방 재난관리청(FEMA)를 포함한 22개 연방기관을 국토안보부 산하에 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DHS, 2006) 그리하여 2000년대 초반에는 재난관리가 모든 유형의 위험(All-Hazard)에 대한 관리 철학으로부터 벗어나 테러에 의한 위험에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러나 2005년도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가 발생하여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고, 정부의 대응도 실패하면서 국가의 재난관리체계의 초점이 다시 모든 유형의 위험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회귀하였으며, 카트리나 사후 안전개혁법(Post Katrina Emergency Reform Act)을 제정하여 연방 재난관리청(FEMA)이 국토안보부에 편입되면서 이관하였던 일부 기능을 다시 환원시키고, 연방 재난관리청(FEMA)에게 국토안보부 내 독립적인 외청의 권한을 부여하였다(Comfort 등,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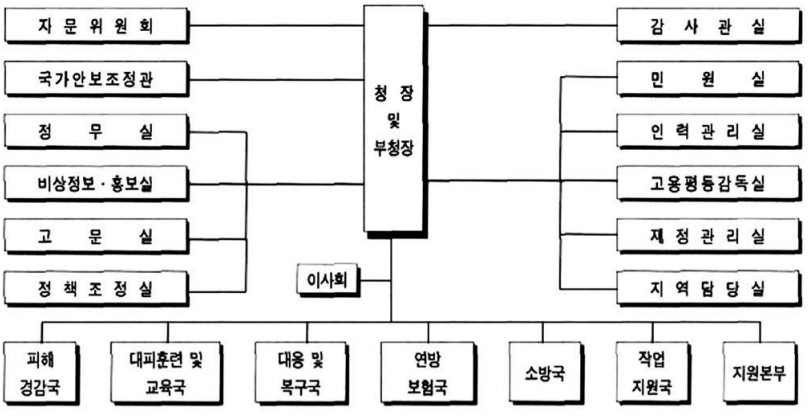

<그림 2> FEMA의 조직도

※ 출처: 박덕근(1999)

이러한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수립과정의 특징을 요약하면, 초기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의 피해지역에 국한된 한시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다가 피해가 심각해지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후 연방정부에 의한 접근에서 재난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됨에 따라 지휘체계의 혼선 등 문제가 제기되자 재난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단일 연방기관인 연방 재난관리청(FEMA)를 창설하였다. 911 테러 등 외적요인으로 인하여 기관 임무의 우선순위를 테러 및 핵공격에 대한 대비에 둠으로써 재난대응 역량이 저하되고 가장 중요한 임무인 재난대응에 실패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등 여러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미흡했던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Roberts(2010)는 미국의 재난관리 조직은 비록 비효율적인 측면은 있으나 강력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2.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구축과정

앞서 살펴본 미국과 더불어 재난관리에 있어서 체계가 잘 갖추어진 국가로서 일본이 있다. 일본은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해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

하는 나라이며 최근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일본은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찍부터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왔는데 이러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9년 이세만 태풍으로 약 5,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재난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시스템화하기 시작하여 1962년에는 재난대책 기본법을 제정하고 중앙방재회의[9]를 설치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서 재난관리 행동에 대한 기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후 일본의 재난대응체계는 1995년 1월 약 6,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10]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는데, 당시 대지진에 대한 일본 중앙정부의 초기 대응이 늦어 재난대응이 결국 실패한 이후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통해 재난의 분류를 더욱 구체화하여 지진, 태풍, 홍수, 화산재해 대응방침으로 재난방지 기본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초기대응 시스템을 1995년 2월에 구축하였다.(최선경, 2014)

또한 2001년 1월의 중앙부처 개편을 통해 방재분야가 내각의 중요정책 중의 하나로 설정됨에 따라서 새로 설치된 내각부에 방재부문을 두어 행정각부의 시책의 통일을 도모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계 부처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양기근, 2010). 구체적으로 내각부는 특명담당장관으로 방재담당장관이 있으며, 내각부 정책총괄관(방재담당)부국이 장관을 보좌하고 방재에 관한 기본적 정책사안과 대규모 재해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기획수립·종합조정을 담당하고 있다(류상일·안혜원, 2007) 또한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재난대응에 대한 수상의 권한을 강화하였는데, 대형재난의 경우 수상은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긴급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명령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배재현·박영원, 2014). 그리고 대규모 재난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내각관방

9) 중앙방재회의(Central Disaster Management Council)은 국가방재대책의 종합성,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조직으로 방재기본계획의 작성과 실시 및 방재 기본방침, 방재시책 조정, 비상재해에 즈음한 조치 등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자문하는 내각부의 부속기관이다(양기근, 2010)

10) 일본이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한 기점이 된 한신·아와지 대지진은 1995년 1월 17일에 발생하여 사망자 6,433명, 부상자 43,792명, 274,181동의 건물 피해를 발생시킨 매우 큰 자연재난이었고, 약 15만명이 생매장이 되어 이 중 약 115,000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약 35,000명의 사람들이 무너진 가옥 안에 갖혀 있었다고 한다(류상일·안혜원, 2007).

에 위기관리감과 내각정보집약센터를 설치하였는데, 위기관리감은 고베대지진(1995년) 이후 국가적 위기사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부처·기관·지자체간 유기적·체계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 속에 총리 중심의 위기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위기관리 업무(국가 방위에 관한 사항 제외)에 한해 총리와 관방장관을 보좌하는 기구이고, 내각정보집약센터는 4명이 5교대 근무를 통하여 국가 주요상황 정보망과 연계, 24시간 상황정보를 종합 수집·분석·보고·전파하여 내각위기관리감을 지원하며 위기상황 발생시 위기관리센터 기능을 수행한다(최호택·류상일, 2006) 이러한 일본의 국가재난대응 조직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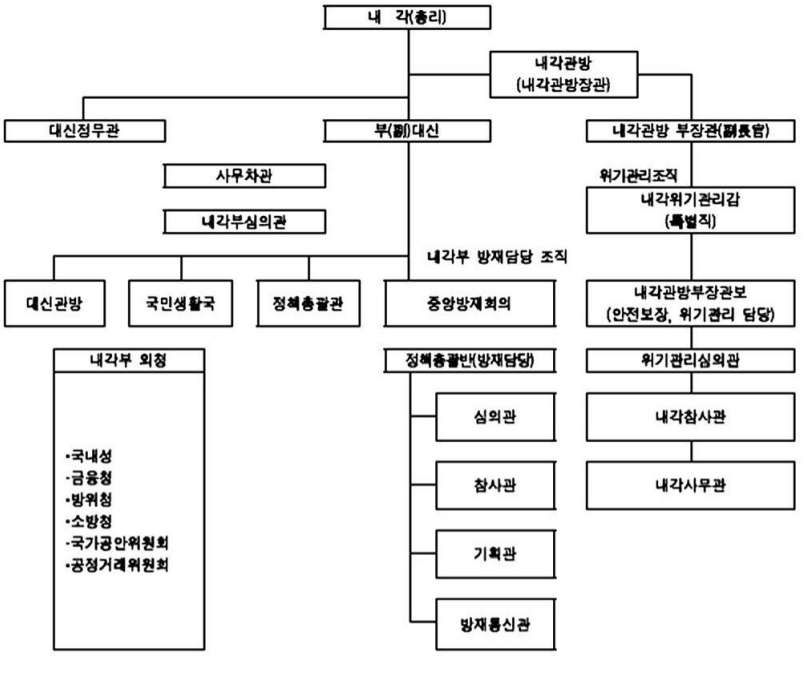

<그림 3> 일본의 국가재난대응 조직체계

※ 출처: 배재현·박영원(2014)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일본의 관리체계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빈번히 발생하는 여러 재난에 대한 대응의 실패와 반성을 통해 재난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중앙대응 조직체계는 미국의 경우와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재난관리의 정의와 그 대상에 대한 범위가 지진, 폭풍, 해일, 화산, 홍수 등의 대규모 자연재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납치, 테러, 원자력사고 및 대량 살상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여 각각의 재난관리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최선경, 2014),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 과정에 걸쳐 기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난에 대한 대응방식이 미국의 모든 위험접근법과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Ⅳ. 평가 및 개선방향

1. 국민안전처 신설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국민안전처의 신설은 조직의 규모, 권한 등의 측면에서 미국의 국토안보부 사례와 같이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강력한 대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외국사례와 비교할 때도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을만하다. 특히 국민안전처의 신설내용을 살펴보면 신설관련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예를 들어, 배재현·박영원(2014)은 당시 정부의 조직개편안의 내용 중 대규모 재난 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휘하도록 하는데, 조직관리상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장관이 다른 장관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고, 세월호 사고에서도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인 안전행정부장관과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해수부장관의 협력, 의사소통, 지휘명령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그 근거로 들면서 재난발생시 총괄·조정을 위한 지휘체계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정부의 국민안전처 신설 최종안을 보면 재난발생시 총괄·조정을 위한 지휘체계 측면에서 재난관리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하고 국가안전처장관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수행하지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대형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여 지휘명령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재난안전 현장대응기능을 대폭 보강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신설한 부분과,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 재난관련 특별교부

세 배분권, 안전점검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은 국민안전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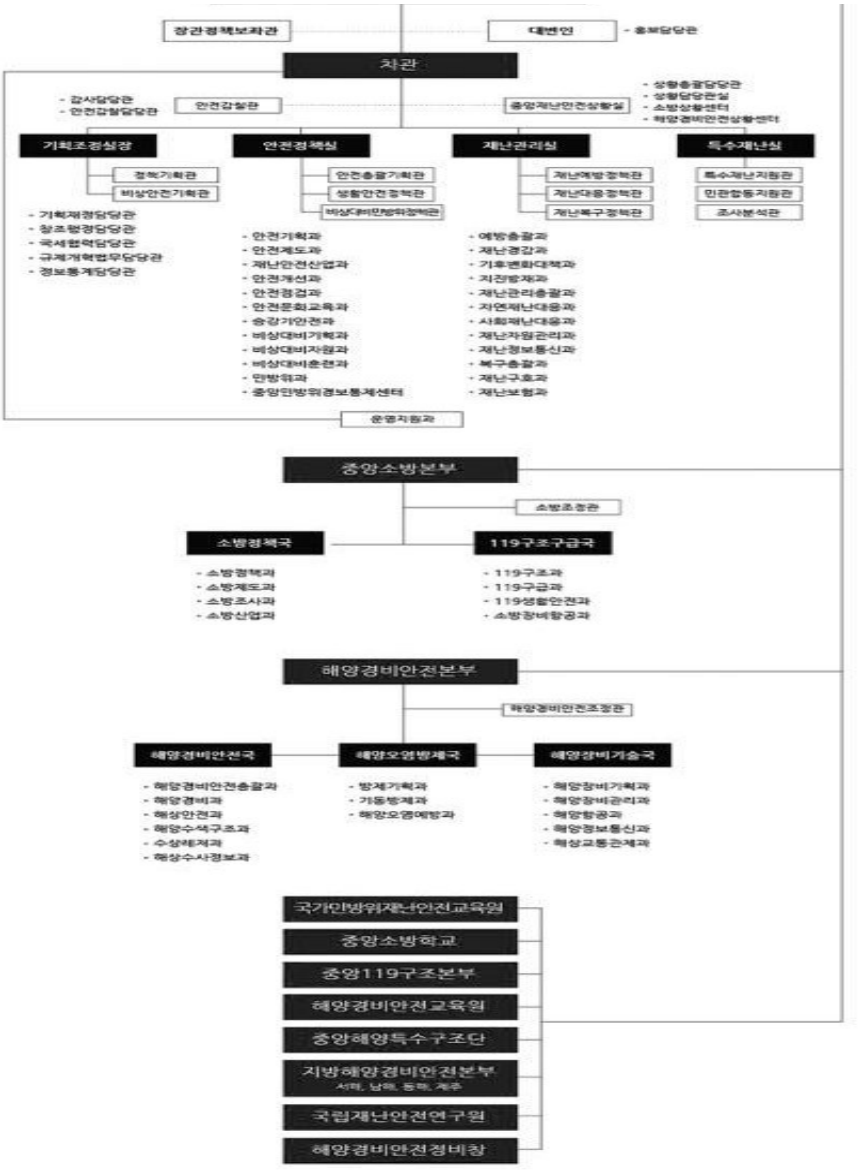

<그림 4> 신설 국민안전처의 조직도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조직의 신설과 권한부여를 통해 어느 정도 재난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가야할 길이 먼 것으로 판단된다. 출범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소홀하여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11] 국민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의 마련,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 등 앞으로 할 일이 많으며 이는 재난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향후 국가안전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한 제언

1) 재난관리 특성에 맞는 조직관리

위와 같이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재난과 안전관리만을 전담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일반 행정부처와는 달리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위스콘신대 재난관리센터의 Schramm과 Newman(1986)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난관리 조직의 운영과 관련한 관리의 원칙(Priciples of Management)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보고서에서는 프로그램 기획(Program Planning), 의사결정(Decision Making), 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 프로그램 감독과 통제(Program Supervision, Monitoring and Control), 인사관리(Personnel Management), 리더십(leadership), 동기부여(Motivation), 집단역학(Group Dynamics), 근무집단 관리(Managing Work Groups), 근무평가(Personnel Evaluation), 조직의 구조화(Structuring Organizations), 조직 발전(Organizational Development), 프로그램 평가 기준(Criteria for Assessing a Program), 사업종료 및 이전(Project Completion and Transfer) 등의 분야에 걸쳐 관리의 원칙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경우 향후 각종 프로그램의 수립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 기획 부분의 주요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획과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6단계의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야 하는데, 1단계는 기관이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과 제공할 수 있는 곳을 결정하여야 하고(Determining how and where

11) 뉴시스. 2014. 11. 20.“국민안전처 첫 업무보고 국회서 질타... 대응책 마련 철저히”

the agency can provide assistance), 2단계는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Stat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which direct activities toward the desired objectives). 3단계는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목적을 수립하고(Establishing goals and objectives and putting them in order according to priority), 4단계는 목적을 계량화 하며(Quantifying objectives), 5단계는 실행을 위한 전략과 접근방법을 결정하고(Determining strategies and approaches for implementation), 6단계는 예산과 자원배분을 통하여 계획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Making the plans operational through budgeting and resource allocation).

다음으로 기획과정과 관련하여 부딪힐 수 있는 핵심적인 이슈들과 그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적인 질문들이 정책의제설정, 목표 설정, 자원배분, 예산과정 분야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분류되는데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3> 기획과정의 핵심적인 이슈들

기획과정	핵심적인 의사결정
정책의제설정	1. 전반적인 계획을 실행하는데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 2. 정책들이 포괄적이며, 유연하고, 정돈되고 명확하게 수립되었는가? 3. 누구 또는 어떠한 부서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가? 4. 누구 또는 어떤 부서가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목표설정	1. 목표가 무엇인가? 2. 각각의 목표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어떠한가? 3. 목표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가? 4. 각각의 목표가 언제 측정되어야 하는가? 5. 각각의 목표가 어떻게 측정되는가? 6. 목적을 달성하는데 누구 또는 어떤 부서가 책임이 있는가?
자원배분	1.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자원은 무엇인가? 2. 자원의 수요와 관련된 가능한 변수는 무엇인가? 3. 각 변수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적절한 기법은 무엇인가? 4. 그러한 예측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나 부서는 누구인가?
예산	1. 예산항목에 어떠한 자원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2. 다양한 예산 요소간에 상호관계는 어떠한가? 3. 어떠한 예산기법이 활용되어야 하는가? 4. 예산의 준비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나 부서는 누구인가?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에서 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도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연구한 재난대비 프로그램의 기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프로젝트에 대한 잘못된 정의(Definition)

공식적인 목표나 목적이 없이 구호나 재건축(Re-construction)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수행되고 있으며, 종종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주택을 다시 건설하는 것과 같은 애매한 목표가 있다.

(2)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정책 수립의 실패

정책수립의 실패는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향후 의사결정을 위한 원칙이나 확고한 기반이 없도록 한다.

(3) 기획과정에 지역주민들을 온전히 참여시키는 것의 실패

(4) 선택사항의 가능한 범위를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함

기관은 주로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접근방법 중에서 최초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간의 부족이나 대안에 대한 친숙함 부족으로 가능한 선택사항을 충분히 탐색하지 못한다.

(5) 문제해결을 위해 단지 하나의 전략이나 접근방법만의 고수

기관은 종종 특정 전략만을 고수하거나 전체 프로그램을 하나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잘못되거나 제한된 성과만을 낼 경우 전체 프로그램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 한 가지 방식의 선택은 적용지역의 변이(Variance)에 대하여 충분하지 않다.

(6) 프로그램의 균형화 실패

균형적인 프로그램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 재건설 프로그램은 향상된 건설기술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고, 지역의 건설업자나 기술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해당지역의 위생개선과 같은 보조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단지 파손된 주택을 교체하는 프로그램만을 수행하

는 경우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7) 프로그램의 과도한 확장

반대로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하려고 할 때에는 불필요하게 확장될 수 있는데, 1976년에 과테말라에서 지진이 발생한 주택 재건축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부서가 보유한 예산에 비해 너무 넓은 지역을 맡게 됨으로써 실패한 사례가 있다.

(8)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 실패

예측의 실패는 주로 경험이 없는 것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선택사항에 대하여 고민하고 성과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기관은 많은 오류를 피할 수 있다. 기획과정의 일부로서 기관은 많은 건설사업에서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프로그램의 영향평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9) 예산과정에서의 실패

재난대응을 위한 예산을 추계하는 것은 어렵다. 예산은 물가상승기를 대비해서 준비되어야 하지만, 정확한 예산의 규모는 알기는 쉽지 않다.

(10) 적절한 기술 확보의 실패

많은 사례에서 기관은 모든 관련된 이슈들이나 이용 가능한 기술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부적절한 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것인데, 많은 재난 사례에서 기관은 최신의 기술과 장비를 보유한 구호팀을 파견하지만 주로 필요한 것은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이 아니라 위생과 같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예방조치들이다. 이 문제는 재난에 대응해 본 경험이 없는 기관에서 나타날 수 있다.

(11) 다른 구호기관이나 정부프로그램과의 조정 부족

기관은 다른 기관에 의해서 기획되거나 수행되는 활동을 종종 고려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간과는 의사소통의 부족 등이 원인이며 각종 조치의 중복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력 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대책마련을 위한 모든 위험접근법의 적용[12)]

조직운영과 더불어 국민안전처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재난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2015년 2월까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인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모든 위험 접근법(All-Hazard Approach)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모든 위험 접근법은 미국의 재난관리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위험 접근법은 모든 유형의 위험에 대하여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의 영향과 발생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위험평가를 통해서 재난에 대한 대응 수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FEMA, 2007). 그렇지 않고, 모든 위험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자원배분 등 대응할 경우 실패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위험은 발생가능성 × 결과(영향)을 의미한다(Pine, 2009). 그리하여 이러한 발생가능성과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위험에 대한 양적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데, 발생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발생가능성이 확실하거나 높은 경우,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몇 가지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다음으로 재난의 영향은 해당 위험이 미칠 피해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해당 위험이 초래할 부상자와 사상자의 양적 질적 수준에 따라 경미한 수준부터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발생가능성과 영향을 통해 FEMA(1997)는 아래 표와 같이 위험을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표 4> 위험의 4단계 분류

항목	세부내용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Extreme Risk)	– 재앙적인 피해가 확실히 예상되어 재난의 경감조치(Mitigation) 및 응급계획의 우선순위가 높은 고위험 상태로서 즉각적인 조치(Immediate action)이 필요한 경우 – 사망자나 심각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주요 시설이나 기간망이 1개월 이상 완벽히 마비되거나 피해지역에서 50% 이상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높은 수준의 위험(High Risk)	– 경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가 주로 해당되며, 재난의 경감조치와 위기에 대한 대비, 조건부 행동계획에 의한 관리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

12) 모든 위험접근법과 관련된 내용은 강욱·박준석·조준택(2014)의 관련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항목	세부내용
	– 신체적 장애나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고 주요 시설이나 기간망이 2주 이상 완벽히 마비되거나 피해지역에서 25% 이상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통 수준의 위험 (Moderate Risk)	–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주로 해당되는데 재난의 경감과 대비 등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한 상태 –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부상이나 질병 발생, 주요 시설이나 기간망이 1주 이상 완벽히 마비되거나 피해지역에서 10% 이상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낮은 수준의 위험(Low Risk)	– 추가적인 경감 조치나 조건부 계획이 필요한 낮은 수준의 위험 상태로서 평상시에는 주의나 경고 정도에 그침 – 초기 응급처치 정도만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나 주요 시설이나 기간망이 24시간 이상 완벽히 마비되거나 피해지역에서 1% 이상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출처: FEMA(1997)

이러한 위험평가를 통해 FEMA(1997)는 위험 매트릭스 접근법(Risk Matrix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험의 수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하여 대응 수준이 체계적으로 결정되는 점이 특징이다. 아래 <그림 5>와 같이 재난의 발생가능성과 영향에 의해 4단계의 위험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발생 가능성)					
	높음	C	B	A	A
	보통	C	B	B	A
	낮음	D	C	B	B
	매우 낮음	D	D	C	C
		경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영향)			

A	Extreme Risk
B	High Risk
C	Moderate Risk
D	Low Risk

<그림 5> 위험 매트릭스 접근법

※ 출처: FEMA(1997) 재구성

앞과 같은 매트릭스를 통한 위험평가를 통해 Pine(2009)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의 위험의 수준을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하였다.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위험의 수준은 항상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험 평가를 위해서는 재난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에 대한 충분한 양의 자료가 필요한데 재난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상청, 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여러 번의 반복적인 검증(Review)을 하면서 위험수준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다.

<표 5> 발생가능성과 영향에 따른 위험의 분류

위험의 종류	발생가능성	영향	위험
홍수(Flood)	약간 높음	심각	매우 높음
가뭄(Drought)	높음	심각	낮음
혹서(Extreme heat)	약간 높음	보통	높음
혹한(Extreme cold)	약간 높뭉	보통	높음
폭풍우(Thunderstorm/lightning)	거의 확실	경미	높음
토네이도(Tornadoes)	높음	심각	매우 높음
폭설(Severe snowstorms)	높음	보통	높음
빙설(Ice storms)	낮음	심각	높음
지반침하(Land subsidence)	매우 낮음	경미	낮음
지진(Earthquake)	매우 낮음	심각	높음
교통망 사고(Transportation accidents)	약간 높음	매우 심각	매우 높음
위험물질 교통사고 (hazmat transportation accidents)	낮음	보통	보통
주요 교통망의 폐쇄 (Closure of critical transportation routes)	낮음	보통	보통
전력사고(Power failures)	약간 높음	보통	높음
수도망 사고(Water/sewer line failure)	낮음	보통	보통
통신망 사고(Telecommunication failures)	낮음	경미	낮음
정보통신망 사고(Computer systems failures)	약간 높음	경미	보통
가스관 사고(Gas line break)	낮음	경미	낮음
화학물질 누출사고 (Stored chemical leak/accident)	낮음	보통	보통
시설의 고의적인 파괴 (Sabotage/intentional destruction)	약간 높음	심각	매우 높음
생물학적 전염병 (Biological communicable disease/plague)	약간 높음	심각	높음
실험실 사고(Laboratory accidents)	약간 높음	심각	매우 높음
건물 붕괴(building collapse)	매우 낮음	매우 심각	높음
건물 화재(building fire)	낮음	매우 심각	매우 높음
유행성 전염병(Epidemic)	낮음	심각	높음
독극물 중독 확산(Widespread poisoning)	낮음	심각	높음

※ 자료: Pine (2009) 표 재구성

위 <표 5>와 같이 향후 국민안전처도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문성으로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외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환경적 특성을 감안한 방식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국민안전처와 관련한 정부조직 개편내용과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 이와 관련된 미국과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수립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외국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강조되어야 할 것 중 하나는 향후 국민안전처의 운영이 일반 행정부처와 같이 해서는 실패할 수 있으므로, 재난관리의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여 상당한 인원과 예산 및 권한을 가지고 탄생한 국민안전처는 향후 안전관리 전담부처로서 현장성과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9·11 테러를 경험한 미국 정부가 2년에 걸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안전관리는 분화(전문화) 대 통합(조정)간, 계서제와 연결망의 두 원리가 균형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음[13]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은 상대적으로 통합(조정)과 계서제가 강조된 측면이 없지 않아 향후 전문성과 연결망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앞에서 언급한 Schramm과 Newman(1986)이 제기한 재난관리 조직의 운영과 관련한 관리의 원칙(Priciples of Management)에서 강조하였던 주요한 이슈들과 향후 예상문제점들을 잘 참고하여 마스터플랜과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향후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 있어서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 (FEMA)과 같이 모든 위험 접근법(All-Hazard Approach)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겪었듯이 사후 수습보다는 사전예

13) 문화일보, 2014. 11. 21.“<포럼> 신설 국민안전처 안착을 위한 과제”

방이 훨씬 중요함을 깨닫고 발상을 전환하여 위험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이전보다 많은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그 수준을 평가하여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관계 전문가와의 협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안전처는 재난이나 위험관련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과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의 실정을 반영한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의 신설은 안전관리에 대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포함한 적폐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성공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조직은 신설되었으니 앞으로는 본 연구의 문제제기와 같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떠한 컨텐츠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세부 계획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충실히 수립되어 집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 욱·박준석·조준택 (2014). 재난관리에 있어서 모든 위험 접근법(All-Hazard Approach)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0권, 7-33

김경호·성도경 (2011).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운영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 미국과 일본사례 비교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23권 제1호, 121-143

류상일·안혜원 (2007). 네트워크를 통한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한국과 일본의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2호, 170-179

배재현·박영원 (2014).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재설계에 관한 탐색적 논의, GRI연구논총 제16권 제2호, 319-340

양기근 (2010).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협력적 재난관리 방안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제5권 제1호, 121-153

이미정 (2013). 국가위기관리체계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능 및 구조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3호, 137-162.

이호준 (2004). 미국과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연수 후기, 한국방재학회지 제4권 제2호, 43-48.

주성빈·최응렬 (2013). 국가 통합위기관리체계 (IEMS)의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4호, 279-312.

최선경 (2014).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관하여,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64-67.

최호택·류상일 (2006).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개선방안: 미국,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6권 제12호, 235-243

하규만 (2010). 미국의 국가재난대응체계와 시사점, 정부학연구 제16권 제1호, 45-72

박덕근 (1999). 미국 백악관과 연방재난관리청 방문을 마치고, 대한토목학회지 제47권 제7호, 52-55

경향신문, 2014. 11. 20. [기고] 국민안전처에 바란다.

뉴시스. 2014. 11. 20. “국민안전처 첫 업무보고 국회서 질타... 대응책 마련 철저히”

문화일보, 2014. 11. 21. “<포럼> 신설 국민안전처 안착을 위한 과제”

서울신문, 2014. 11. 21. 마스터플랜도 없이 출범한 국민안전처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안전한 사회 구현 및 공직개혁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법」 개정·시행으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출범(14. 11. 18)”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14. 5. 28)”

헤럴드 경제 2014. 11. 19. <사설> 국민안전처, 골든타임 대처할 화학적 통합이 과제

2. 국외문헌

Bullock, J. A., Haddow, G. D., Coppola, D.P. & Yeletaysi, S. (2009). Historic Overview of the terrorist threat In Introduction to homeland security : Principles of all-hazards response 3rd ed. pp. 1-28, Burlington, MA: Elsevier/Butterworth-Heinemann

Comfort, K. L., Waugh, W. L., Cigler, B. A., , (2012).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and Practice in Public Administration: Emergence, Evolution, Expansion, and Future Direc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pp. 539-548

Derthick, M. (2009). The transformation that fell short : Bush, federalism, and emergency management pp. 1-27, The Nelson A. Rockefeller Institute of Government.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13). Threat and Hazard Ident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Guide : Comprehensive Preparedness Guide 201 2nd ed., pp. 1-20, Washington, DC: U.S.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12).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trategic Plan : Fiscal Years 2012-2016, Washington, DC: U.S.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09). FEMA's Progress in All-Hazards Mitigation, pp. 1-29, Office of Inspector General, Washington, DC: U.S.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06). Civil defense and homeland security : A short history of preparedness efforts, pp. 1-36, Homeland Security National Preparedness Task Force, Washington, DC: U.S.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 (2007). Principles of emergency management supplement, pp. 1-9, Washington, DC: U.S.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 (1997). Multi hazard ident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 A cornerstone of the national mitigation strategy, pp.297-319, Washington, DC: U.S.

Pine, J. C., (2009). Natural Hazards Analysis : Reducing the Impacts of Disasters, CRC Press: Taylor & Francis Group, FL: Boca Raton

Roberts, P. S., (2010), Private Choices, Public Harms : The Evolution of National Disaster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Eds.) Disaster and the Politics of Intervention, A. Lakoff, Columbia University Press

Schramm, D., & Newman, R. (1986). Principles of Management : Study Guide, University of Wisconsin Disaster Management Center

The White House. (2003a).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HSPD-5 : Management

of domestic incidents, pp.1-6

The White House. (2003b).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HSPD-8 : National Prepardness pp.1-6

【Abstract】

A New Direction fo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Kang, Uk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as established in order to handle all sorts of disasters because of Sewol ferry tragedy and the fundamental reform on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ll be performed.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s considered as the landmark for the disaster management when it is compared to those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erms of the size and the authority.

However, there are many tasks to be done for the settle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ore specifically, a real and substantial plan should be prepared because the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without blueprints or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This study suggests that all-hazard approach which is the one of the disaster management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when the substantial plan is prepared. All possible hazard should be analyzed, assessed, and prioritized.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effective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with the consideration of Korean context.

Key Words: Disaster Management,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All-Hazard Approach,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Korea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 제1호(2015)
투고일 2015. 05. 04, 심사일 2015. 06. 10, 게재확정일 2015. 06. 17

북한 사이버 테러의 실상과 대응 방안

권 혁 빈

KNSPSA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북한 사이버 테러의 실상과 대응 방안

권 혁 빈*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력 강화 방안의 분석을 목표로 사이버테러에 대한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북한의 사이버테러 역량과 대남 사이버테러의 사례들을 분석하며, 한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 현황을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한 사전 탐지 및 대응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역량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한국의 방어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도 요구된다.

둘째, 전문 보안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안보에 관련된 전문보안인력의 양성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사이버테러 관련제도 구축 및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사이버안전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설립되어야 한다.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독립된 전문기관을 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조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이버테러 대비 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응 훈련은 실제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여섯째,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제협력기구의 창설을 통해서 국제적인 경로를 통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였을 시, 긴밀한 협조와 공동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사이버테러를 자행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사이버테러를 중요한 안보위협의 하나로 재인식하고, 이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계 부처 및 민간영역과의 적절한 조율을 통해 그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사이버테러, 사이버범죄, 해킹, DDos, 컨트롤타워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초빙교수

목 차

Ⅰ. 서 론
Ⅱ. 사이버테러의 개념과 유형
Ⅲ. 북한의 사이버테러 전략
Ⅳ.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제언
Ⅴ. 논의 및 결론

Ⅰ. 서 론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다. 현실 세계와 사이버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사이버테러, 사이버전쟁을 비롯한 해킹, 네트워크 마비 등의 공격 위험성이 자주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1)]

특히 최근에는 국가전체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테러가 빈발하고 있으며, 범국가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기관은 물론 군사시설, 금융, 교통, 통신 등 주요 기반시설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국가적 차원의 대응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까지 정부기관 및 민간 기업 등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테러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고 있다. 정보당국의 조사결과 북한이 사용하는 동일한 수법과 공격 경유지 중복 등의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

1) 현재 우리나라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를 크게 사이버테러형범죄와 일반사이버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사이버테러형범죄로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유형은 일반사이버범죄로 구분하고 있다(경찰청 사이버대응센터 홈페이지).

다. 북한은 적은 비용과 인원 및 장비로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선전선동의 일환으로 대남 사이버테러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사이버테러 공작체계를 갖추고 공작원들을 양성시키면서 대남 사이버테러를 지속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1991년 걸프전이 미국주도하의 연합국 승리로 결속된 후, 현대 전쟁에서 사이버전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심각히 받아들여 총참모부에는 지휘자동화국을, 그리고 각 군단들에는 전자전연구소를 신설하고 각종 전자전전법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다(유동열, 2012 : 39). 이에 따라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이버전사를 양성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이후 변화된 남북한의 경제적·군사적 차이 극복을 위해 핵과 미사일, 사이버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가를 분리하여 양성을 강화하였다(신충근, 2014 : 8). 이후, 북한은 양성된 사이버전사들을 통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이버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테러에 대한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북한의 사이버테러 역량과 대남 사이버테러의 사례들을 분석하며, 한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 현황을 알아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사이버테러의 개념과 유형

1. 사이버 테러의 개념

테러리즘과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Dogrul, Aslan, & Celik, 2011: 31). 그러나 사이버 테러리즘과 사이버전쟁, 사이버 정보전 등의 개념을 구분한다면 후자의 두 개념은 타깃이 되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사이버 테러리즘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Dogrul, Aslan, & Celik, 2011).

이에 다양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백광훈(2001: 62-63)은 '법적으로 승인된 권한 없이 사이버시스템에 대하여 폭력, 파괴 또는 방해를 고의적으

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정준현(2011: 84-85)은 '정보를 지배하려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적대국가나 세력에 의하여 자신의 정치·종교적 또는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거나 무차별적으로 정보의 유통을 마비·왜곡시키거나 또는 정보를 탈취하여 개인이나 사회 및 국가의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김상욱·신용태(2010: 353)는 '컴퓨터 통신망에 구축된 가상공간인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폭력행위를 가리키는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침입,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파괴하는 등의 범죄행위'로 정의한다.

권한용(2014: 651)은 '사적 침해를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 또는 국책기관의 공적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 또는 파괴함으로써 국가기능 전체를 마비시킬 의도로 자행되는 것이 바로 사이버테러'라고 주장한다. 윤영성(2005)은 사이버테러를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와 해킹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민간의 정보통신 시스템에 침입 후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석(2012)의 개념정의는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나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가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심우민(2013)은 IT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행위 중 사회혼란을 야기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목적을 가진 행위로 보고 있다. 김광웅(2013)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은행, 기업 등 민간기관의 컴퓨터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해킹하거나 바이러스 유포 등의 공격을 통해 시스템장애를 일으킴으로써 국가안보적 위협,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처럼 사이버테러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존의 테러가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테러리즘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김흥석, 2010: 324) 사이버테러가 국제사회에서 정보전 또는 사이버전쟁수준으로 쉽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한 비용 대비 효과 측면, 익명성, 기망성 등의 측면에서 테러리스트들에게는 매력적인 공격수단이 되고 있다.(박기갑, 2011: 24-25) 이상 사이버테러의 개념정의는 아래의 표 1에서 정리되어 있다.

<표 1> 사이버테러의 정의

연구자	사이버테러의 정의
권한용(2014: 651)	사적 침해를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 또는 국책기관의 공적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 또는 파괴함으로써 국가기능 전체를 마비시킬 의도로 자행되는 것
김광웅 외(2013)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은행, 기업 등 민간기관의 컴퓨터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해킹하거나 바 이러스 유포 등의 공격을 통해 시스템장애를 일으킴으로써 국가안보적 위협,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
김상욱, 신용태(2010: 353)	컴퓨터 통신망에 구축된 가상공간인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폭력행위를 가리키는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침입,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파괴하는 등의 범죄행위
김정태, 이현우(2004: 645)	사이버 툴(tool)을 이용하여 에너지, 수송, 공공시설 등의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을 마비시킴으로써 정부나 시민을 위협하려는 목적의 행위'
김흥석(2010: 324)	기존의 테러가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테러리즘의 한 형태
백광훈(2001: 62-63)	법적으로 승인된 권한 없이 사이버시스템에 대하여 폭력, 파괴 또는 방해를 고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심우민(2013)	IT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행위 중 사회혼란을 야기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목적을 가진 행위
윤영성(2005)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와 해킹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민간의 정보통신 시스템에 침입 후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것
정기석(2011)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가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정준현(2011: 84-85)	정보를 지배하려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적대국가나 세력에 의하여 자신의 정치·종교적 또는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거나 무차별적으로 정보의 유통을 마비·왜곡시키거나 또는 정보를 탈취하여 개인이나 사회 및 국가의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행위
미국 국제관계 전략연구소	에너지, 교통, 정부기관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을 중단시키거나 정부 또는 시민들을 강제 또는 위협하기 위하여 컴퓨터 네트워크 도구를 이용하는 것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 테러집단이나 적성국 등이 해킹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 등 전자적 공격을 통해 주요 정보기반 시설을 오동작 파괴하거나 마비시킴으로써 사회 혼란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2. 사이버테러의 유형

한국의 사이버테러 유형은 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분류되고 있으며 학술적인 분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실무차원에서 사이버테러 수법이 한국의 북한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강화방안 연구과 수단 및 피해를 중심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강석구 외, 2010: 4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해킹과 악성프로그램 유포와 같은 기술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사이버테러형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표 2> 사이버범죄의 분류

사이버테러	일반사이버범죄
■ 해킹 (단순침입, 사용자 도용, 파일삭제 및 변경, 자료유출, 폭탄메일, 서비스거부 공격) ■ 악성프로그램	■ 사기(통신, 게임) ■ 불법복제(음란물, 프로그램) ■ 불법·유해사이트 ■ 명예훼손 ■ 개인정보침해 ■ 사이버스토킹 ■ 사이버성폭력 ■ 협박·공갈

※ 자료: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www.ctrc.go.kr)

사이버테러의 유형은 기술적 수단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뉘고 있다. 사이버테러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통제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두 가지 유형의 공격형태를 보인다.(Dogrul, Aslam, Celik, 2011: 34.)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사회기반시설을 공격하거나, 정보손상이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격, 테러를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기술적 제공 등이 사이버테러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권한용, 2014: 654) 해킹과 악성 프로그램이 이러한 사이버테러의 대표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영호(1988: 61)는 대표적인 사이버테러의 유형을 해킹을 통한 사이버테러와 컴퓨터 바이러스를 통한 사이버테러로 구분하고 있다. 해킹이란 (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ⅱ)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

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2]. 예를 들어 스누핑, 스니핑, 스푸핑, 스머핑, 이메일 폭탄, 스팸메일, 서비스거부, 고출력 전자총, 스캔공격, 전자기폭탄 등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디스크의 가장 처음부분인 부트 섹터에 감염되는 부트바이러스와 일반 프로그램에 감염되는 파일바이러스, 부트 섹터와 프로그램 모두에 감염되는 부트·파일 바이러스 등이 있다.(최영호, 1988: 327-328)

Lewis(2002)는 지금까지 분석된 사이버테러와 관련된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즉, i) 전자파일 또는 미디어 상의 다양한 자료를 손상, 파괴하거나 변경하는 정보공격(Information Attacks), ii) 시스템상의 중요한 자료를 파괴하거나, 하드웨어 손상, iii) 운영 플랫폼이나 프로그래밍을 와해하여 그 기능을 못 쓰게 만드는 기반시설 공격(Infrastructure Attacks), iv)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이버 테러리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 조장(Technological Facilitation), 테러단체의 이념홍보(Promotion)나 기금마련(Fundraising) 등에 이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는 수단과 수법 그리고 피해를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분류로 '경찰청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분류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전센터의 위해공격' 분류가 있다. 전자로는 단순침입, 사용자도용, 파일삭제 또는 자료유출, 폭탄메일 형태의 해킹과 트로이 목마, 인터넷 웜, 스파이웨어 등과 같은 악성프로그램 심기로 크게 나눈다. 반면에 후자는 국토해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방송통신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4조 제4호에 근거하여, 국가기밀에 대한 공격, 반국가단체, 국제범죄조직 및 테러단체에 의한 공격, 국가안전보장 관련 주요 통신기반시설 공격, 국가 핵심기술 대상의 공격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이버테러 유형 및 수법들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김광웅 외, 2013: 109-110) 먼저 해킹(Hacking)을 들 수 있다. 해킹은 해커(Hacker)가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정보를 빼내오거나 파일삭제, 전산망 마비 등의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해커들은 주로 네트워크나 시스템이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해킹을 시도한다.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서버용NT(New Technology)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홈페이지를 공격하는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공격수단을 사용한다. 또한 해킹

2) 정보통신망법 제48조

대상에게 대량의 메일을 발송하는 폭탄메일(Mail Bomb)도 활용한다. 폭탄메일은 공격대상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대용량의 메일을 보내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방법이다. 이 경우 메일용량이 초과되어 정작 다른 중요한 메일을 수신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외에도 수십만 건의 메일을 한 번에 보내거나, 메일내용을 확인할 경우 컴퓨터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유형의 공격 수단도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를 들 수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정상적인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파괴하도록 만들어진 악성프로그램을 말한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손상시키며 자신을 복제하는 행위를 통해 컴퓨터에 이상 징후를 발생시킨다.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손상부위, 손상정도 등이 다르게 나타나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만으로 모든 네트워크나 시스템이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악성프로그램에는 웜(Worm),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논리폭탄(Logic Bomb) 등이 있다. 웜은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을 복제하며 옮길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컴퓨터에 침투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으나 끊임없이 자신을 복제하는 바이러스이다. 단순한 복제만으로 정상적인 컴퓨터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공격방법이다. 트로이 목마는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안에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겉으로 외형상으로는 바이러스가 아닌 것처럼 보이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피해를 준다. 특히 트로이목마는 해커가 언제든지 컴퓨터에 침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자판정보를 외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유출시킬 우려가 있다. 논리폭탄은 특정한 시간, 주파수, 사용자 수, 데이터 값 등의 조건이 되었을 때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폭탄메일, 바이러스 유포 등을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거부공격(Denial of Services)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특정한 네트워크 및 서버에 대량의 신호(트래픽)을 한꺼번에 보냄으로써 해당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로써 국가인터넷망 등 기간망을 주 공격대상으로 하여 사회 혼란 및 마비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공격 유형 외에도 통신 환경 및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사이버테러 유형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규모 역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Ⅲ. 북한의 사이버테러 전략

1. 북한의 사이버테러 전략

북한은 체제선전과 대남 선전선동 및 외화획득을 포함한 경제적 수입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해 왔다. 북한에서는 내부 광케이블로 연결된 인트라넷을 사용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데,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만든 '광명'이라는 서버를 통해 전자우편, 웹사이트 검색 등의 주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 보급률이 낮아 일반 주민들은 쉽게 사용하기 힘든 현실이다.(김광웅 외, 2013: 111)

북한은 컴퓨터 하드웨어, 통신 등의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소프트웨어와 군사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1999년 국방성 인터넷사이트를 가장 많이 접속한 국가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이다(전영호, 2006: 113). 이는 인터넷과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북한의 관심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사이버공간에 관심에 갖게 된 이유는 다양한 부문에서 천착해 볼 수 있다. 먼저 실제 전쟁보다 인원, 자금 등은 적게 소요하면서 상대방의 피해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이버테러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통신기반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는데 비용이 들겠지만 물리적인 테러에 비해 최소한의 비용과 인원으로 사이버테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사이버테러의 흔적, 증거 및 기록을 삭제, 위조, 변형시킴으로써 공격대상으로부터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정재영, 2010: 11-12).

다음으로 공격방법 및 공격 장소를 다양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테러는 물리적인 테러와 달리 공격 목표에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테러 중 해킹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보안 기술도 함께 발전하지만 새로운 공격기법은 보안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에 따라 해킹을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해킹을 당한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민·관·군의 각 기관들이 유기적인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사이버테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이진수, 2000: 39).

따라서 자주적 군사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인원, 자금 등은 적게 소

요되면서도 공격효과는 극대화하여 상대방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효율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향후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는 점점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김광웅 외, 2013: 112-113)

2. 사이버테러 교육체계 및 공작체계

북한은 사이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사이버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중등교육부터 수재들을 선발하여 교육시키는 금성1, 2고등중학교가 있으며 이를 국가기반으로 간주하며 양성하고 있다(배달형, 2011: 155).

고등교육기관으로는 군 장비의 현대화와 사이버전의 전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김일군사대학이 있다. 이 대학은 1981년 당시 미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1986년부터는 평양자동화대학으로 개칭되어 소련 국방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인민무력부 산하 5년제 대학으로 매년 100여명의 사이버테러리스트 및 해커들을 조직적으로 양성해 내기 시작한 것이다. 1999년부터는 우수 사이버 전문요원으로 선발 될 경우 병역을 면제해 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박대광, 2009: 56). 또한 신분을 속여 중국, 러시아, 유럽 등에 유학을 보냈고, 유학 후에는 정찰총국 산하 110호 연구소와 총참모부 산하 전자지도국에 배치시켰다(박대우, 2011: 35).

이러한 교육기반을 바탕으로 북한은 실제 2개 계선의 사이버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는 최고사령부 작전부, 다른 하나는 노동당과 연계되어 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 테러부서는 2012년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다. 방송사와 은행 등에 대한 '3·20 사이버 테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정찰총국은 사이버전 전담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곳이다. 정찰총국은 2009년 2월 대남·해외 공작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기존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과 노동당 산하 작전부, 35호실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만들었다. 110호 연구소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 위장하고 있지만,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정보전연구소이자 해커지휘부로 운용하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김흥광, 2006). 그리고 총참모부 직속 지휘자동화국(IGA)에는 2개 여단 10,000여명 규모의 사이버 전문 인력이 편성되어 있다. 또한 노동당에는 조사부의 기초자료조사실이 있으며, 작전부에는 모란봉대학이 있다. 이외에도 사이버테러 관련 조직으로 통일전선

부의 작전부에도 정보수집 및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 운용되고 있다(배달형, 2011: 156).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테러 대남공작체계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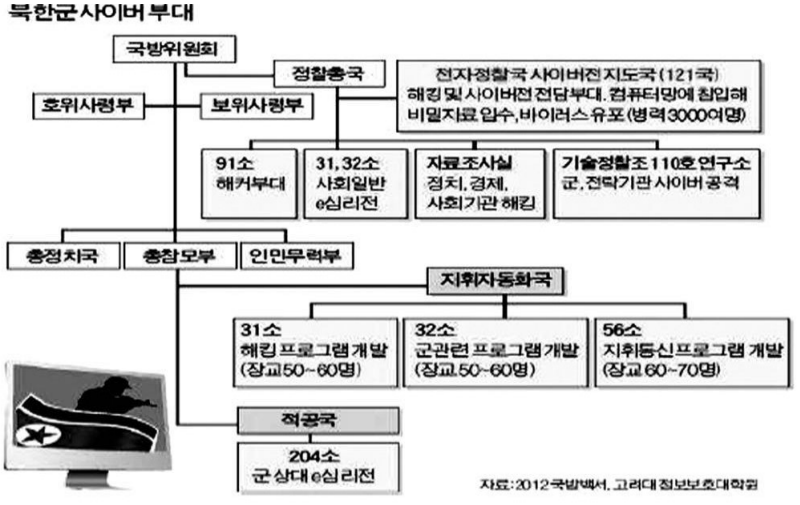

<그림 1> 북한의 사이버테러 대남공작체계

정찰총국 산하에 전자정찰국 사이버전지도국(121국)은 다른 나라 컴퓨터망에 침입해 비밀 자료를 해킹하고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사이버전 전담부대이다. 121국 산하조직으로 91소(해커부대), 3132소(사회일반 e심리전), 자료조사실(정치, 경제, 사회기관 해킹), 기술정찰조 110호 연구소(군·전략기관 사이버 공격)가 있다. 121국의 인력은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방위원회 산하 '총참모부' 하부에 '지휘자동화국'이 있다. '지휘자동화국'에는 31소(해킹프로그램 개발), 32소(군관련프로그램개발), 56소(지휘통신프로그램 개발)를 지휘하고, '적공국'이 204(군상대 e심리전)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은 2007년 3월 공장을 현지지도 하면서 "현대전은 전자전이다. 적의 전자전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전술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김상진, 2011). 또한 북한의 정보전 부대를 "나의 배짱이고 예비대"라고 칭찬하며 관련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연합뉴스 11/06/28). 그만큼 사이버 전문 인력 양성과 고도화된 사이버

조직을 구축, 사이버테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규모 사이버전 부대를 정치,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부대를 121국으로 승격시키고 병력을 증강했다(박대우, 2011: 35). 특히 적공국 204 사이버심리전 부대, 특수부대인 기술정찰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동남아 등을 비롯한 제3국에서 대남 사이버심리전, 사이버공격 등을 위한 각종 사이버전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연합뉴스 11/05/03).

3.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실태 및 추이

북한은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전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과 경험을 내부 인트라넷을 이용하고 있다. 나아가 각종 바이러스, 트로이목마, 스파이웨어, 웜 등 다양한 해킹 도구를 만들거나 전파했으며, 여러 가지 사이버테러 사례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해킹수법들과 도구들을 제작했다(김흥광, 2009: 48-50). 또한 사이버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임무들을 새롭게 수립해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킹부대의 조직구도를 해킹도구의 개발부문과 사이버전 수행에 필요한 기술부분으로 나누었다고 한다(김흥광, 2009: 45).

북한은 이러한 노력으로 하드웨어 부문이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은 상당한 기술수준을 보유하며,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 및 주변국을 상대로 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이버공간을 활용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북한으로는 과거 여러 차례 한국을 대상으로 감행한 사이버테러를 통해 핵무기에 버금가는 비대칭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검증했을 것이다(이상호, 2011:268).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테러 및 공작활동이 경제적 측면이나 전략적인 측면 모두 최소한의 투자대비 한국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고도의 군사전략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김광웅 외, 2013: 115)

<표 3>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 사이버테러

공격일자	공격 수법	공격대상 및 목적
2009. 7. 7	DDoS	청와대, 국회, 포털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 전산망 마비
2011. 3. 4	DDoS	청와대, 국회, 외교부 등 정부기관 40곳 전산망 마비
2011. 4. 12	악성코드	농협 전산망 유지보수업체 직원의 노트북을 통해 원격제어로 공격명력 프로그램 실행
2012. 4. 28	GPS교란	인천공항, 김포공항 GPS 교란
2012. 6. 9	해킹	중앙일보 전산망 마비, 신문제작시스템 데이터 삭제
2013. 3. 20	APT공격	KBS, MBC, YTN, 제주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의 내부시스템 파괴를 목적
2013. 6. 25	해킹, DDoS	청와대, 국무조정실, 새누리당, 연합뉴스, 조선일보, 매일신문, 대구일보 등 홈페이지 해킹, 주요 정부기관 DDoS

※ 자료: 김광웅 외(2013: 115).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감행한 대남 사이버테러 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공공기관 및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들 수 있다. 정부가 사이버테러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근거는 사이버테러의 공격 경로를 추적한 결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주소의 발견과 시스템파괴 및 주요 파일 삭제 그리고 악성코드 문자열 등의 방법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발생한 북한의 주요 대남 사이버테러는 2009년 7월 7일 DDoS, 2011년 3월 4일 DDoS, 2011년 4월 농협 전산망 마비, 2012년 6월 중앙일보 해킹, 2013년 3월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3] 공격 등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해킹하는 낮은 수준에서 테러가 이루어졌다면, 2011년부터는 대규모 DDoS 공격, 네트워크 침투 후 자료 삭제, 해킹코드 암호화 등으로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공격대상이 정부기관, 언론사, 금융기관 등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기반시설에 집중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김광웅, 2013: 116)

그리고 사이버심리전을 들 수 있다. 사이버심리전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은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혼란과 공포감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매체를 교란시키거나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는 사이버심리전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불안감을 크게 조장·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컴퓨터, 네트워크 해킹보다 파급효과

3) 내부시스템에 악성코드를 통해 잠입하여 들키지 않고 있다가 특정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빼내는 방식.

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국민들의 심리적 장애,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괴력과 심각성이 큰 것이다. 만약 사이버심리전과 함께 치밀하게 계산된 사이버테러가 국가기관시설과 사회기반시설에 발생할 경우, 생활 환경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혼란과 공포를 초래 할 수 있을 것이다(이상호, 2011: 269). 이는 재래식 전쟁에 버금가는 공포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하기 위해 북한은 조선 노동당 통일전선부에서 체제선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내나라>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이를 통해 한국 사회 내의 종북 사이트 등을 통해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광웅, 2013: 116)

Ⅲ. 사이버테러의 대응방안

1. 사이버테러에 대한 한국의 대응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지금까지의 한국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체계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분석)해 보면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국가, 공공분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과 민간부문에 대한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활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 외 국방부의 국군기무사령부와 경찰청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등에서 보안업무를 맡고 있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부서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효율적인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권문택, 2009; 권창범, 2011)

그러나 한국은 2003년도 인터넷 대란, 3.20 사이버테러, 2013년 6.25 사이버 공격 등 일련의 사이버테러를 계기로 국가사이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나름대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입법적인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 등의 도입을 통한 노력도 있어 왔다. 특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훈령으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만들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국가사이버 안보에 관한 법률”이 2013년 5월에 제안된 바 있고, 민·관 합동 정보공유분석센터 혹은 분석플랫폼 구축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다.(정완, 2013: 219-2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보안 선진국이나 국제기구의 정책적 노력에 비한다면 한국의 사이버보안 수준은 열악한 환경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권한용, 2014: 665-666)

한국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2003년 1월 슬래머 웜으로 인해 인터넷이 몇 시간 동안 마비된 대란이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2월 설립되었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주요업무는 다음 <표 4>와 같이 국가사이버안전 정책을 총괄하며 사이버위기 예방활동과 사이버공격 탐지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책임이 최근 더욱 강화되었다. 2013년 7월 4일 정부가 각종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사이버 위협이 발생 할 경우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휘, 통제하게 되고 실무총괄은 국가정보원이 맡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정보원의 업무가 기존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나, 상시로 운영되는 민·관·군 합동대응팀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맡겨졌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표 4>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 안전센터 주요업무

업무	내용
국가사이버안전 정책 총괄	■ 국가사이버안전 정책 기획·조율 ■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제도·지침 수립 ■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 및 대책회의 운영 ■ 민·군·관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
사이버위기 예방활동	■ 각급기관 전산망 보안컨설팅 및 안전측정 ■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및 보안적합성 검증 ■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사이버공격 탐지활동	■ 24시간 365일 각급기관 보안관제 ■ 단계별 사이버위기 경보발령 ■ 각급기관 보안관제 센터 운영 및 교육 지원 ■ 신종 해킹 탐지기술 개발·지원
사고조사 및 복구지원 활동	■ 해킹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원인규명 ■ 시스템복구 지원 및 공격기법 분석 ■ 사이버위기 대책본부 구성·운영 ■ 해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자료: 국가사이버안전센터(service1.nis.go.kr)

그동안 사이버 위기관리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민간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부분은 국가정보원, 군사부문은 국방부가 사이버테러 대응을 담당했지만, 금융기관 및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관할 부서가 나뉘어져 있어 업무가 중첩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가 발생해도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피해비용이 더 늘어나기도 한 측면이 있었다(신영웅 외, 2013: 158).

그러나 새롭게 발표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은 이러한 우려들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버위협 발생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각 기관간에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과 공조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김광웅 외, 2013: 118)

<그림 2>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 자료: 디지털데일리(2013년 7월 5일) 보도자료

2. 법률 및 규정

한국의 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사이버테러와 일반적인 개인정보 침해 등의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대통령훈령으로 제정된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규정은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테러 대응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법제화 된 것이다. 이후 2006년 당시 공성진 의원에 의해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입법화 되지 못했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정보화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방정보본부에 사이버사령부를 신설하여 정보사령부, 제777부대 등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김광웅 외, 2013: 119)

<표 5> 부처 별 관련 법령 및 담당업무

부처	관련법령	담당 업무
국방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군사이버사령부령	■ 국방 분야 사이버안전에 관한 사항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 및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주요 정보통신 기반 보호시설 보호대책 이행점검 및 보호 지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지정권고 등
안전행정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주요 정보통신 기반 보호시설 보호대책 이행점검 및 보호지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지정권고 등 ■ 기반보호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침해사고 대응

※ 자료: 심우민(2013: 3)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 사이버테러 대응과 관련한 법률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법령과 부처별 담당 업무가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체계는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할 개연성이 높다. 더구나 한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대통령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관부처 간 역할과 책임이 불문명하고 구속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법규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김광웅 외, 2013: 119)

3. 정보보호 예산

2013년 현재 정보보호 예산은 2,4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보안 관련 지출 비중이 0.8%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정보화 투자 예산인 3조 2,967억원의 7.3%에 불과한 실정이다(서울경제 13/03/21).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주요 대남 사이버테러가 발생했던 2009년과 2011년의 다음해에 정보보호 투자 예산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6> 정보보호 투자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보보호예산	1,018	1,608	1,757	2,695	2,035	2,633	2,402
정보화예산	34,104	34,048	31,378	32,869	32,897	33,053	32,967

※ 자료: 김광웅 외(2013: 120)

또한, 지난 10년간의 정보화 투자는 연평균 약 3조 2,000억원 규모로 국가 전체 예산에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1-2). 그러나 정보보호 예산은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보보호 투자 예산의 일관 되지못한 잦은 변동은 사이버테러 대응에 주먹구구식으로만 대처하게 할 뿐 체계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이버테러의 심각성과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이에 걸 맞는 수준의 사이버보안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김광웅 외, 2013: 120)

Ⅳ.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한 사전 탐지 및 대응 역량 확충

한국의 사이버테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발생했던 사이버테러 대응 및 사후 보완책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테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하게 공격당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 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

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인지하고 막지 못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국가의 행정망, 국방망, 항공, 전력 시스템 등과 같은 중요 기반시설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역량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한국의 방어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도 요구된다.(김광웅 외, 2013: 120-121)

사이버 테러는 사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탐지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사이버테러의 대부분이 국가와 민간에서 모두 탐지하는데 실패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테러 양상을 분석한 프로파일 DB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계속적인 진화를 거쳐 왔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조직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이 대남 사이버테러 위해서 감염시킨 좀비 PC가 여전히 치료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다. 즉, 이들을 활용한 다른 사이버테러가 발생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발생했던 사이버테러 때 이용되었던 좀비PC들을 점검하고, 이를 치료하는 백신을 범정부차원에서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치료 하여 좀비 PC들을 제거하거나, 북한 해커들이 주로 이용하는 좀비 PC를 역이용하여 사건 발생 전에 감지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접근도 고려해 볼 수 있다.(김양현, 2014: 18)

2. 전문 보안인력의 양성

전문화된 보안인력의 부족이 문제점이 되고 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현장의 열악한 직업환경은 우수한 인재를 키울 수가 없다. 일반 IT업계의 영세성은 양질의 인력양성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안보에 관련된 전문보안인력의 양성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정완, 2013: 235)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과 관련 법률 정비를 바탕으로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의 위협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 양성에 힘과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사이버테러에 대한 예방과 수사 및 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2013년 현재 전국에는 30여개의 대학에서 정

보보호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지만 향후 사이버 보안 수요를 예상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대회를 제도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보보안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군차원에서의 사이버 보안 전문장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김광웅 외, 2013: 122)

3. 관련제도 구축 및 법률 제정

현재의 사이버 테러 관련 법체계는 각 부처 간 대응법률의 분산으로 역할과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이 적용되지만, 그 외에 공공부문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적용되고 민간부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 지침 등이 혼재되어 있어 국가정보보안과 관련된 업무와 사이버안전 업무가 이원화 되어 규정되어 있다.(김양현, 2014: 17)

2013년 7월 발표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과 함께 사이버테러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사이버안전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개별법에 의해 분산되어 있는 사이버테러에 관련된 법률을 하나로 모아 기능 및 규제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없애야 한다. 현행 법률은 분야별, 적용대상별로 개별적인 규정만 두고 있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신영웅 외, 2013).

특히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예산집행 법안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테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전문가들이 보안투자 및 인력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조선일보 13/03/28). 지금의 보안 분야 예산을 통해서는 사이버테러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만큼 사이버안보 관련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테러 관련 예산확보 및 법률의 제정은 국가 중요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 강화와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강화 및 사이버보안 예산확대, 전문 인력 양성전략 그리고 학술적 차원에서 사이버테러 대응 기술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사이버공간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김광웅 외, 2013: 121)

4. 컨트롤 타워의 설립

한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대응부서의 분산을 얘기한다. 즉 컨트롤 타워의 부재이다. 정부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과 민·관 소통의 어려움, 정보공유의 불균형 등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사이버테러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효율적인 컨트롤 타워의 구축은 효율적인 대처능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권한용, 2014: 666)

또한 관련 법령이나 제도정비도 수반되어져야 하며 별도 예산 확보, 인력 양성, R&D 투자 확대를 통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3·20 사이버테러, 6·25 사이버테러 이후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된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으며, 청와대를 컨트롤 타워로 확정하였지만 세부적인 역할과 대응전략 체계 및 책임 등은 전혀 언급되지 못했다(안종하, 2014 : 143). 즉 사이버테러가 발생하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은 사이버테러에 상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초기대응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독립된 전문기관을 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조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김양현, 2014: 16-17)

5. 사이버테러 대비 훈련 강화

지난 2013년 8월 19일부터 실시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서는 공공기관의 사이버테러 대응 훈련이 실시되었다. 특히 3월과 6월에 발생한 사이버테러로 인하여 사이버테러 대응 훈련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러한 대응 훈련은 실제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민간기업도 사이버테러 대응훈련을 정례화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여 그에

따른 안전한 대응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테러 대응 훈련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사이버안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김광웅 외: 122-123)

6.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사이버테러의 특성상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이버테러 이후 수사기관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을 할 경우의 대부분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북한 및 중국 등 해외에 있기 때문에 검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된 사례의 대부분이 사법기관의 언론 브리핑을 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간의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국제협력 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 국제협력기구의 창설을 통해서 국제적인 경로를 통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였을 시, 긴밀한 협조와 공동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사이버테러를 자행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국제협력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사이버테러의 동향 및 새로운 사이버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기법 등에 대한 국가 간 공유가 필요하다.(김양현, 2014: 17)

국제사이버범죄 대응협약 등을 주도적으로 체결하거나 사법공조의 강화, 또한 국내입법과 국제입법간의 조화와 조정을 검토하여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국제협력 차원에서 규범적으로 집중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그 대상과 적용범위에 대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특성상 사이버테러에 대한 상이한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적인 대응방안이 기술적 보안체계의 강화에 중점을 두어 예방위주의 대응책이 주가 되겠지만, 국가 간의 정보공유와 공격시의 회복능력 그리고 사후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권한용, 2014: 666-667)

V. 결 론

지금까지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력 강화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사이버테러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북한의 사이버테러 수행능력과 역량 및 한국의 대응체계 등을 검토해보았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문제는 전통적인 테러와 비교해서 오늘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다.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은 모든 생활권과 금융, 국가안보에까지 IT기술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더욱 편리해진 일상만큼 그에 대한 폐해 또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북한과의 이념대립으로 아직도 투쟁의 시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최근 북한의 소행으로 간주되는 일련의 사이버테러가 언론과 금융, 각종 공공기관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버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가안보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부터 청와대, KBS, MBC, YTN 등 주요 방송사와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테러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12년에 대남 사이버 테러부서의 대대적인 개편을 이루는 등 사이버 테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한 사전 탐지 및 대응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역량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한국의 방어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도 요구된다.

둘째, 전문 보안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안보에 관련된 전문보안인력의 양성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사이버테러 관련제도 구축 및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사이버안전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설립되어야 한다.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독립된 전문기관을 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조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이버테러 대비 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응 훈련은 실제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여섯째,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제협력기구의 창설을 통해서 국제적인 경로를 통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였을 시, 긴밀한 협조와 공동대응 방안을 수립

하고 사이버테러를 자행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사이버테러를 중요한 안보위협의 하나로 재인식하고, 이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계 부처 및 민간영역과의 적절한 조율을 통해 그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석구 외.(2010).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가정보원.(2004).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권문택.(2009). 사이버안전관리 조직의 통일적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정보 보안 논문지, 9(3), 61-70.

권창범.(2011). 사이버 보안특집, 사이버 보안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 검토 및 발전방안, 연세의료 과학기술과 법. 2(2), 59-80.

권한용.(2014).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과 한국에의 시사점. 동아법학, 65, 649-675.

김광웅, 김용상, 문병기.(2013). 한국의 북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방안 연구. 한국보훈논총, 12(3), 105-127.

김상욱, 신용태.(2010). 국가 사이버재난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정보통신, 37(5), 351-362.

김양현.(2014).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사례연구. 한국테러학회보, 7(2), 5-21.

김정태, 이현우.(2004).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2004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김흥광.(2006). 북한의 사이버정보전 실태. 북한, 5월호, 북한연구소.

김흥석.(2010). 사이버테러와 국가안보. 저스티스, 121, 319-356.

박기갑.(2011). 사이버 전쟁 내지 사이버 공격과 국제법, 21세기 국제법의 현안과 과제. 서울: 삼우사.

박대우.(2011). 국가사이버보안정책에서 해킹에 대한 소고. 정보보호학회지, 21(6), 24-41.

배달형.(2011). 국가군사전략급 수준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과 한국군의 대응방향. 전략연구, 52, 147-174.

백광훈.(2001). 사이버테리리즘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영웅 외.(2013). 국가 사이버보안 피해금액 분석과 대안. 국가정보연구, 6, 129-173.

신충근.(2014).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전략 분석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우민.(2013). 최근 전산망 마비사태와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안종하.(2013). 사이버테러 범죄 위협 인식 및 대응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유동열.(2012).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 자유민주연구학회 학술자료집.
윤영성.(2005). 테러리즘에 대한 안전보장 및 대응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상호(2011). 북한 사이버 심리전의 실체와 대응방안.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1), 263-290.
전영호.(2006).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서울: 도서출판615.
정기석.(2012). 최근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 정보·보안 논문지, 12(1), 89-96.
정완.(2013). 한 미 사이버보안 법제 동향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48(3), 213-242.
정준현.(2011).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법제 현황과 개선방향. 디지털시대와 국가정보발전-한국국가정보학회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국가정보학회.
최영호.(1988). 정보범죄의 현황과 제도적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국외문헌

James A. Lewis.(2002). Assessing the Risks of Cyber Terrorism, Cyber War and Other Cyber Threat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Washington DC.
Murat Dogrul, Adil Aslan, Eyyup Celik.(2011). Develop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yber Defense and Deterrence against Cyber Terrorism, 2011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yber Conflict, C. Czosseck, E. Tyugu, T. Wingfield(Eds.), Tallinn, Estonia 2011, CCD COE Publications

【Abstract】

The Fact of Cyber Terrorism in North Korea and The Plan for Reaction

Kwon, Hyuk-Bin

This study aims to arrange concepts and categories of cyber-terrorism, to analyze North Korea's capability of cyber-terrorism and cases of cyber-terrorism against South Korea, and to look into the present condition of South Korea's response to cyber-terrorism in order to strengthen South Korea's defense against North Korea's cyber-terrorism.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are made:

First, the prior knowledge about North Korea's cyber-terrorism and the promotion of capability against it are needed. South Koreans should grasp and examine North Korea's exact capability of cyber-terrorism as well as their own level of defense.

Second, professional security personnels are needed to be trained. It is imperative as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security personnels is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Third, the establishment of laws regarding cyber-terrorism is necessary. The comprehensive legislation about cyber-security is needed in order to establish the nation-wide efficient and active response system to cyber-terrorism.

Fourth, a control tower for responding to cyber-terrorism is needed. The systematic response would be possible if there were a permanent, specialized, and independent agency for it.

Fifth, the training for dealing with cyber-terrorism is needed. Such training will let citizens not to panic and to swiftly deal with cyber-terrorism.

Sixth,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ystem is needed. Such system will allow close cooperation and joint response to cyber-terrorism through

international path, as well as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it.

Most of all, South Korea should realize that cyber-terrorism is one of the critical threat against national security and promote nation-wide capability against it. For this goal, the coordination between related government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and constant improvement of response system is needed.

Key Words: Cyber-Terrorism, Cyber-Crime, Hacking, DDos, Control Tower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 제1호(2015)
투고일 2015. 05. 04, 심사일 2015. 06. 10, 게재확정일 2015. 06. 17

국가안보에 관한 다루어지지 않던 논의들

윤 민 우

KNSPSA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국가안보에 관한 다루어지지 않던 논의들

윤 민 우*

[국문초록]

최근 우리국가를 둘러싼 국제안보정세의 흐름을 반영하여 이 글에서는 우리가 그 동안 통상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고 국가안보에 관해 그 동안 흔히 다루어지지 않아 왔던 생각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국가의 안보와 관련하여 기존의 상식과 정통적인 인식의 틀을 넘어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국가안보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발걸음일지 모른다.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대안 또는 인식 틀을 모색해보는 데 어떤 자극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식과 정통적이고 교조적인 접근에 갇혀있는 집단사고적 안보인식에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 역할을 함으로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안하는 것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국가안보에 관한 상식과 고정관념 또는 정상적인 방안과 정책들을 넘어선 국가안보에 관한 보다 혁신적인 논의들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국가안보, 인식, 전쟁, 전략, 구성주의

*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부교수

목 차

Ⅰ. 서 론
Ⅱ. 구성된 결과물로서의 국가안보
Ⅲ. 대화의 다른 수단으로서의 침묵과 폭력
Ⅳ. 무시될 수 있는 약속과 위반될 수 있는 규범
Ⅴ. 최선의 방어로서의 공격
Ⅵ. 계량적 크기가 아닌 활용예술로서의 군사력
Ⅶ. 생각할 수 있는 목표로서의 제국주의

Ⅰ. 서 론

최근 우리국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두 가지 매우 주요한 이슈들을 경험했다. 하나는 2015년 4월 27일 미국과 일본 간에 합의된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 발표이며, 또 다른 하나는 2015년 5월 9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astic Missiles) 발사시험 성공발표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국가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불안정 요소가 될 것이며 그 결과 우리국가의 안보는 향후 매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에게 힘을 투사하는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라이센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미국이 구축한 제국질서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수축되는 만큼의 부분이 일본에게 양도될지 모른다. 그리고 미-일이 구축한 대중국 동맹은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필리핀과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를 지원하면서 한국 또는 오스트레일리아(한국이 자의든 타의든 제외된다면)와 결합된 새로운 나토로 발전할지 모른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재접근과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는 미-일 동맹과 대척하면서 지역 내에서 새로운 냉전대결구도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도는 한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우리에게 결정적인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며

현명하고 모험적이며 용기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국가는 결정적 굴욕을 경험하거나 국가의 생존에 대한 치명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표는 더욱 우려스럽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20-30년간 우리가 누렸던 북한에 대한 군사력의 비교우위는 사실상 사라졌으며 상대적으로 매우 수세적인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과거 한국전쟁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북한의 선제공격에 버틸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소들이 발견된다. 하나는 부산을 축으로 한 낙동강 전선이라는 후방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병력과 장비, 물자의 공급이 가능했다. 또 미국의 참전이 보장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후방보급 기지로서의 역할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미국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 간접적 지원은 본토가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었기에 가능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북한의 SLBM은 핵 탄두 미사일 공격을 통해 부산을 축으로 한 후방을 직접 선제타격으로 초토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본토공격에 대한 위협을 통해 억제할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여론에 민감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일본이 핵공격 위협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단호히 용기 있게 대가를 무릅쓰고 지속적으로 한국을 지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북한의 SLBM을 다른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 공격, 사이버 심리전, EMP(Electro Magnetic Pulse) 폭탄, 테러, 특수전, 지상발사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및 재래식 전력 등과 총합적으로 연계해서 생각해 본다면 북한의 선제공격의 치명적 파괴력은 훨씬 더 위협적이다. 즉 북한의 선제 타격으로 우리국가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운명을 맞을 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유한 막강한 재래식 전력과 한미 연합전력을 사용하여 북한에 의미 있는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기회자체를 얻지 못하게 될 수 도 있다. 결국 북한이 구축한 최근의 군사력과 앞으로 북한이 지향하는 국방전력구축의 추이는 우리가 기존에 북한에 대해 갖고 있던 기존 안보전략 틀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며 동시에 우리국가에 분명하고 실존하는 위협을 던진다.

이런 최근 국제정세의 흐름을 반영하여 이 글에서는 우리가 그 동안 통상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고 국가안보에 관해 그 동안 흔히 다루어지지 않아 왔던 생각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직관적이고 세련되게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한 제안이 될 것이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일 지도 모른다. 또한 여기서 논의될 사항들은 이

론적으로 다듬어지지도 않았고 경험적으로 지지되지도 않은 브레인스토밍에 보다 가까운 성격의 것들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국가의 안보와 관련하여 기존의 상식과 정통적인 인식의 틀을 넘어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국가안보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발걸음일지 모른다.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대안 또는 인식 틀을 모색해보는 데 어떤 자극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식과 정통적이고 교조적인 접근에 갇혀있는 집단사고적 안보인식에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 역할을 함으로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학술지는 일반적으로 동료심사(Peer-Review)라는 필터링의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은 필터링은 논문의 질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지배적인 패러다임과 동떨어진 제안이나 방법론 등을 포함하는 논문들이 걸러져 퇴출되는 문지기(Gate-Keeper)로서도 기능한다. 때문에 이 논문과 같은 형식과 내용들이 기존학술지에 실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학술지는 이러한 논문들에 대해 보다 관대한 편이다. 엄격한 사회과학방법론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세련되고 권위 있는 기존의 주장이나 제안과 생소하거나 다른 제안들을 보다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논문은 그런 기회를 활용하여 보다 자유롭고 대담한 제안을 시도한다. 이 논문은 방법론적으로 미흡하고 기존의 세련되고 정통적인 주장들과 다르다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여기서 제기하는 사항들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Ⅱ. 구성된 결과물로서의 국가안보

국가안보에 대해 갖는 오해는 그것이 어떤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며, 변하지 않는 합의된 실체라는 것이다. 이는 국제정치의 주요 이론인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 자유주의 등에서 보편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하나의 전제이다. 국가는 하나의 확장된 인격체로서 받아들여진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최소 단위인 국가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마치 경제학에서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최소단위인 개인을 설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 여기서 개인에 해당하는 국가는 마치 사람처럼 생각과 판단의 능동적 주체로 간주된다. 국가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국가를 이루고 있는 개별인간과 사회 그리고 그 행위주체들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은 국가라는

하나의 블랙박스 안에서 잊혀 진다. 이 블랙박스는 개봉되지 않은 채 스스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된다. 이렇게 인격화된 국가는 스스로 생존(독립)에 대한 욕구를 가지며 안전(전쟁이 없음 또는 평화)에 대한 욕구를 가진다. 국가안보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인식된다. 국제사회를 이루는 각 국가들은 균일한 하나의 단위체가 되며 이러한 국가안보는 차이 없이 보편적으로 각 국가들에 해당되는 어떤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국가안보는 모든 국가들을 아울러는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된다. 즉 모든 국가들에게 국가안보는 동일한 하나의 객체적 대상이다. 또한 국가안보는 고정적이다. 시간이나 상황적 요인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국가안보의 의미와 내용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쉽게 예기하면 모든 국가들에 적용되는 국가안보의 의미와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며 시간적 상황적 요인과 무관하게 고정적이다.

구성주의는 국가안보에 대한 정통적인 인식에 주요한 의문을 제기한다. 구성주의에 따르면 국가안보는 보편적이지도 않으며 주관적으로 인식되어지고 구성되어 지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속적인 과정에 있는 찰나의 상태 있는 어떤 일시적인 결과물이다. 구성주의는 국가라는 블랙박스를 열어 제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구성원들 간의 관계들을 직접 들여다본다. 국가는 더 이상 쪼개어 질 수 없는 최소단위가 아니다. 국가는 인격적이지 않으며 이 국가라는 단위체가 내어놓는 판단과 행동은 내부 역동성의 일시적 결과물이다. 국가안보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런 점에서 구성주의의 주장은 현대 물리학에서 이룩한 성과들과 닮아 있다. 현대 물리학에서 물질세계는 더 이상 쪼개어질 수 없는 균일한 최소단위인 원자가 빚어내는 조합의 결과물이 아니다. 원자는 쪼개어질 수 있으며 이 원자의 내부를 구성하는 미시세계는 입자와 파동, 에너지가 만들어 내는 하나의 또 다른 우주가 된다. 이 또 하나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관찰자의 주관적 인식이 물질의 객관적 실체와 분리되지 않으며 주관적 인식에 따라 입자와 파동, 에너지의 실체와 운동방향 등이 결정되며 이러한 조합은 항상적 유동성을 띠게 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구성주의가 바라보는 국가안보는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과 집단이라는 입자와 그 입자들의 운동(사회활동이나 정치참여, 그리고 여러 다른 주장의 제기와 활동들), 그리고 축적된 역사적 경험과 외부로부터 투영되는 상황적 제약 등으로 이루어진 에너지가 엮어내는 하나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관찰자의 주관적 인식(대체로 이 경우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나 주요 권력 엘리트, 그리고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세력이나 전문가 그룹, 미디어, 여론 등)에 따라 다른 실체를 가지며 항상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일시적 실체이다. 이런 맥락에서는 각 국가들의 국가안보는 서로 다르게 구성되며 따라서 다른 실체가 된다.

국가마다 다른 실체를 가지는 구성된 결과물로서의 국가안보는 예를 들면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대략적으로나마 나누어 볼 수 있을지 모른다. 하나는 전사형이고 다른 하나는 선비형으로 이름 지을 수 있을 것이다(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국가안보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국가의 절대적 생존 그 자체는 아마도 서로 다른 두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분모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넘어서면 두 유형은 국가안보를 인식하고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응하는 양상에 있어 차이를 보여준다. 즉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국가안보가 구성된다.

먼저 전사형으로 구성된 국가안보는 현실주의적이고 세력투사적인 특성을 가진다. 여기서는 국가안보의 요소에 국가의 자존심, 명예, 국제질서에서의 권력적 지위 등과 같은 보다 확장된 국가안보의 요소들이 포함되고 이러한 것들을 국가안보의 구성요소로 적극적으로 인식한다. 국가들 간의 관계는 권력 투쟁적 현실주의적으로 인식되고 때문에 국가안보의 주요 테제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권력투사를 거부하고 다른 국가에 자신의 권력을 투사하는 항상적인 힘의 충돌로 이해된다. 여기서 평화는 자신과 다른 국가들 간의 힘의 균형관계가 유지될 때 나타나는 전쟁 없음의 상태이다. 이 힘의 균형 상태는 매우 주관적으로 이해되며 사실상 상대 국가로부터의 세력투사의 위협이 사라질 때를 의미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위험이 제거될 경우 해당 국가는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알려진 다른 국가에 대한 힘의 투사를 지향하게 되고 국가안보의 문제는 나의 힘의 투사와 관련된 다른 국가의 저항의 문제로 전환된다. 이 경우에 나의 세력 투사에 마찰력으로 작용하는 다른 국가의 거부나 도전은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인식된다.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응하는 양상은 전형적인 세력균형이 주가 된다. 국가 간 관계는 물리력의 충돌로 이해되며 때문에 내적 세력균형을 추구하거나(자체 군사력 강화와 같은) 다른 국가와의 동맹(군사동맹 또는 안전보장 동맹과 같은)을 통해 세력균형(사실상 군사력의 우위)을 이루려고 한다. 전쟁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되며 국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기보다는 세력투사와 유지를 위한 하나의 선택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다음으로 선비형을 들 수 있다. 이 유형은 조선이 취했던 국가안보전략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이 유형은 국가안보를 국가의 생존유지 자체로 매우 협소하게 이

해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의 자존심, 명예, 국제질서에서의 지위, 제국주의 정책의 지향은 극도로 억제되고 터부시 된다. 국제질서는 규범적으로 이해된다. 도덕, 국제법, 국제협약 등의 규범적 가치들이 국가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이러한 인식된 규범에 순응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국제질서에서 가급적 규범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자존감을 획득하려고 한다. 때문에 다른 국가의 규범적이라는 평판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국가 간의 갈등은 규범에 대한 위해로 간주하고 자신이 갈등상황에서 더 규범적이라는 사실을 어필함으로서 명분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갈등의 해결은 국제질서에서의 규범적 권위체(강대국이거나 국가 간 합의체)에 자신의 정당함을 어필함으로서 또 국제질서의 여러 다른 행위자들로부터 지지와 명분을 구함으로서 규범적 정당성의 우위를 통해 갈등 상대방으로부터 양해(사과나 행위의 중지)를 획득하는데 집중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국가안보의 위해는 매우 협소하게 이해되는데 이는 다른 국가의 세력투사(군사적 침략과 같은)로부터 초래되는 국가 생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심각한 국가이익의 위협에 대한 침탈 등으로 매우 협소하게 이해된다. 대체로 이러한 소극적 국가안보의 확보는 세력균형 보다는 강대국이나 국가 간의 협의체에 대한 편승(band-wagoning)전략이나 그러한 국제적 권위체로부터의 양해를 통해 구해진 고립(쇄국, 중립, 비동맹 등의)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다. 한편 국가의 모든 역량은 국가 내부로 향하게 되며 보통 이러한 노력은 해당 국가 내에서의 가장 최적화된 바람직한 사회의 건설로 향하게 된다. 반대로 힘의 투사를 통한 제국주의 팽창은 포기되고 따라서 세력의 확대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국가 간 갈등은 국가안보의 구성요소에서 배제된다.

전사형과 선비형의 두 다른 극단의 유형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국가를 구성하는데 주요한 투입요소가 되는 지배 엘리트 세력(국가 최도 지도자, 권력 엘리트, 전문가 그룹, 여론 주도세력 등)의 특성에 기인한다. 먼저 해당 국가가 과거에 경험했던 승리의 역사는 국가안보를 전사형으로 구성하게 만든다. 과거의 영광된 제국의 기억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과거 전쟁에서의 영광된 승리의 기억 역시 전사형 인식을 구성하도록 자극한다. 예를 들면 IS(Islamic State: 이슬람 국가)나 러시아, 일본, 중국 등이 과거의 제국건설을 명시적이건 암묵적이건 지향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이 국가안보를 제국주의적으로 인식하는 것 역시 거듭된 주요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억의 산물이다. 반면 과거 역사에서의 되풀이된 피해의 경험은 피해

자 정체성(victim identity)을 집단속에 심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험이 집단에 열등감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충격을 주고 세력 확장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금기시하고 선비형의 최소화된 국가안보인식을 구성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의 되풀이된 다른 국가로부터의 피해와 괴롭힘의 경험은 피해자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만들었을 지도 모른다. 흥미로운 점은 1차 대전 이전까지 전사형 국가안보 인식을 보였던 독일의 경우 1, 2차 세계대전의 되풀이 되는 피해 경험으로 인해 오늘날 선비형 국가안보 인식을 보인다는 점이다.

한 국가가 전사형을 띠는가 선비형을 띠는가는 그 국가를 구성하는 지배 엘리트의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전사형의 경우 지배 엘리트들은 대체로 무사이거나 군인, 게릴라, 무장집단과 같은 폭력을 수행하는 그룹으로부터 형성된다. 물론 이러한 지배엘리트에 폭력수행과 무관한 민간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지배그룹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폭력수행세력이 구축한 지배엘리트의 전사적 특성에 대체로 동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를 전투적으로 인식한다. 즉 국가 간의 관계는 상호세력 경쟁적이며 갈등적이고 현실적이다. 전쟁에서의 경험과 전사적 문화는 추상적 당위적 인식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힘의 논리를 선호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선비형의 경우는 지배 엘리트들의 주요한 출신배경은 폭력사용 경험이 거의 전무한 지식인들(특히 이상주의적 윤리적 지식인들)이다. 이들은 학습과 사유와 같은 비육체적이고 고립되며 위험하지 않는 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때문에 관심은 추상적인 옳고 그름과 같은 규범적 정당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규범적인 가치를 스스로 실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고립된 시간의 경험은 자신이 가지는 가치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다른 행위자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변화시켜 이상적인(자신이 생각하는) 상태를 만드는데 관심을 집중하며 또 실제로 다른 이들을 자신의 정당함과 설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관계에 그대로 투영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모험적 위기와 갈등상황에 직면해 보지 못했던 경험은 이들로 하여금 국가안보의 위협에 직면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의사결정의 무결정(Non-Decision)이나 갈등이나 충돌상황의 회피(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또는 다른 대상에 의지하려는 행태를 보이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대조적으로 전사형 지배엘리트는 모험적 위기와 갈등상황에 익숙하기 때문에 같은 위기상황에서 보다 결단력 있고(Decisive), 단호하며, 모험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물론 전사형 국가안보인식과 선비형 국가안보 인식이 뚜렷이 양분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는 하나의 연속된 스펙트럼 사이에서의 포지션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한쪽 끝에 조선과 같은 극단적인 선비형 국가안보 인식을 가진 국가를 상정에 볼 수 있다면 다른 쪽 극단에는 몽고제국이나 나치 독일과 같은 극단적 전사형 국가안보인식을 가진 국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대체로 많은 국가들은 이 스펙트럼 상에서 어디쯤인 가에 위치하며 어느 한 방향에 좀 더 지배적인 특성을 보일 것이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도 전사형 인식을 가진 엘리트와 선비형 인식을 가진 엘리트가 공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졌던 인식틀은 전사형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장면 전 총리의 인식틀은 선비형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그 국가의 경험역시 승리의 기억과 피해의 경험이 대체로 공존한다. 문제는 어떤 성향이 좀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가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배적인 경향 또는 정체는 그 국가의 지배적인 국가안보인식을 형성한다. 때문에 각 국가들은 서로 다른 국가안보인식을 가지며 각자의 인식틀을 통해 현실을 인식한다. 때문에 각 국들의 국가안보의 개념은 서로 다르게 구성되며 이 서로 다르게 구성된 국가안보가 국제질서에서 서로 충돌하는 경향을 보인다.

동북아시아의 주요 행위자들에 국가안보인식 유형을 투영해 본다면 대체로 우리 국가를 둘러싼 역내 다른 주요 행위자들은 전사형의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북한의 경우 국가건설에 참여했던 주요 지배엘리트들이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과 같은 실전을 경험한 군인들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의 향후 대략적 정체성이 결정되었다. 이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 구축에서 전사적 정체성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2차 대전 이후 중국의 국가형성은 인민해방군의 대일항쟁과 국공내전이라는 전쟁을 통해 이루어졌고 전쟁에서의 승리의 대가로 국가건설을 이루었다. 이러한 경험은 중국의 지배엘리트의 성격을 결정했고 이후 전사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진 것처럼 보인다(Johnston, 1996). 러시아 역시 볼셰비키 혁명이후 백군과 국제개입세력에 대한 내전과 이어지는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전사적인 지배엘리트의 성격이 대체로 형성되었으며 이후 푸틴의 집권과 통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실로비키(정보기관과 군 출신들로 이루어진)에 의해 러시아의 전사적 성향은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Hopf, 2002; Tsygankov, 2013). 미국 역시 건국과정

에서의 독립전쟁을 통한 승리의 경험과 전쟁경험을 가진 지배엘리트의 성향은 국가의 대체적 성격을 결정하였다. 이후 인디언 전쟁과 서부개척, 이어진 스페인과 멕시코, 영국, 프랑스 등과의 전쟁과 남북전쟁,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 그리고 이후에 세계도처에서의 여러 지역전쟁의 개입 등을 통해 국가의 전사적 지향성이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의 경우는 메이지 유신을 통한 근대 일본 국가건설에 참여한 주요 지배엘리트 세력이 사무라이들이었다는 점이 국가의 대체적 성격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상황에서 사무라이들은 유럽의 사례를 통해 강한 군사력의 건설과 식민지 확장정책을 주요 교훈으로 파악한 반면 조선의 선비들은 같은 사례를 보고 학문도입과 교육, 제도 구축을 핵심적 사안으로 이해한 것은 서로 다른 인식 틀이 같은 현상을 두고 얼마나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2차 대전의 패배로 일본의 팽창주의는 종결을 맺지만 현재 아베정권으로 이어지기까지 당시 제국 일본을 이끌었던 전사적 지배 엘리트들의 성향 자체는 대체로 유지되어 온 것처럼 보인다. 때문에 일본은 여전히 전사적 국가안보인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전사형 특성을 가지지만 과거의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은 각 국가의 방향성 즉 국가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에서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과 같은 역내 국가들은 과거 또는 현재 제국을 건설해 보았거나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과거의 경험은 그 국가의 궁극적 방향성이 제국을 유지하는 것이거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제국을 지향하도록 만든다. 미국이 예기하는 현상의 유지, 러시아의 국제사회에서의 정당한 지위로의 복귀(Hopf, 2002), 일본의 정상국가, 중국의 중화질서의 회복 또는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는 그러한 제국유지 또는 건설에 대한 각국의 상황과 입장을 반영한 다른 표현일 것이다. 한편 북한과 같이 과거에 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오히려 연속적인 피해의 경험을 가진 국가는 폭력적 수단으로 다른 국가의 영향력 투사에 거부하는 강한주체국가를 지향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북한의 이러한 소극적 세력투사는 북한이 갖고 있는 물리적 한계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상대적 취약성 때문이기도 하다. 이 점은 좀 더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어찌됐건 북한은 다른 주변의 전사형 국가안보인식을 가진 국가들과는 다른 소극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경향은 두드러진다.

우리국가가 동북아 평화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6자회담과 동북아 평화협

력구상은 주변 국가들이 갖고 있는 전사형 국가안보인식과 질적으로 배치된다. 국가들 간의 협력체를 구축하고 여기서 도출된 규범을 통해 국가들 간의 국가안보문제를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선비형 국가안보인식의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변국들이 모두 전사형 국가안보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들이 세력투사와 거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세력균형과 현실주의 안보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가 제시하고자하는 국가안보의 인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선비형 인식은 대화와 설득, 그리고 협상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전사형 인식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폭력사용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대안이며 상대방을 기만하거나 나의 의도를 숨기거나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이해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주장을 몽상적이거나 순진하다고 생각한다. 즉 서로 다른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 충돌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인식 틀 간의 조정은 쉽지 않으며 역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전사형 인식이 선비형 인식을 압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Ⅲ. 대화의 다른 수단으로서의 침묵과 폭력

해태 타이거스가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에 김응용 감독은 간간히 선수들을 다잡는 한 방편으로 덕아웃에서 의자를 집어던지거나 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면 해태 선수들은 느슨해졌던 정신력을 가다듬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열악한 모기업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한 때 우리나라의 프로야구를 주름잡았던 해태의 전성기는 김응룡 감독의 리더십에 힘입은 바가 컸다고 전해진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화는 반드시 언어의 소통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폭력적 행동은 또 다른 방식의 대화이다.

대화가 언어의 소통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또 다른 사례는 침묵이다. 부부싸움에서 많은 경우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다른 방법이다. 인질협상에서도 이 침묵의 기법은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인질범을 지치게 하거나 감정을 누그러뜨리거나 시간을 끌기 위해 침묵의 기법은 매우효과적인 대화의 다른 수단으로 활용된다. 침묵은 즉 또 다른 방식의 대화이다.

국가안보를 둘러싼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쟁, 폭력, 위협, 침묵 등은 또 다른 방식의 대화이다. 전쟁은 정치의 다른 수단이라는 말은 이러한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테러리즘이 또 다른 주요한 폭력행동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 간의 안보이슈나 갈등은 반드시 당사자 간의 직접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한 선택사안에 불과하며 침묵과 폭력행동, 위협과 같은 다른 선택사안 역시 대화의 다른 방편으로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대안이 보다 적절한지는 어떤 대안이 보다 윤리적이고 정당한가가 아닌 어떤 대안이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데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금기시 되어야 하는 선택사안은 없다.

북한과의 남북대화의 경우 정상회담 또는 남북 당국자 간 대화 등과 같이 대화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북한과의 문제가 불거질 경우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태도가 나타난다. 때로는 북한을 만나서 우리 측의 진정한 의도를 알리면 설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렇게 폭력사용과 위협, 침묵과 대화 등을 단절적으로 접근하면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인질협상에 있어서도 협상과 진압특공대의 전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석이다. 때로는 의도적인 대화단절이 인질범의 심리적 조작을 위해 사용된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서 인질범의 심리를 조작하고 협상에 있어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게 된다(McMains & Mullins, 2001). 북한이 경우는 우리보다는 훨씬 대화에 있어 다양한 옵션을 활용한다. 천안함 폭침, 불바다 위협, 의도적 침묵, 그리고 연평도 포격 등과 동시에 남북대화의 협력 등은 서로 단절된 선택대안이 아니라 북한의 국가목표를 위해 활용되는 여러 선택대안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이 모든 다른 옵션들은 다 본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다. 하지만 우리국가의 경우 이러한 옵션 선택에 있어 다양하고 유연하게 접근하지 못한다.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우리의 방향대로 이끌고 나가기 어렵다. 대화를 단지 만나서 언어를 교환하는 행위로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일본과 같은 다른 주변국가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을 향한 행동이자 동시에 대화이다.

Ⅳ. 무시될 수 있는 약속과 위반될 수 있는 규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국제질서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국가는 다른 국가와 맺은 약속 즉 협약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이익이라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는 이 약속은 언제든지 무시되거나 잊힐 수 있다. 국가가 반드시 약속을 지킴으로서 도덕적이 되어야할 필요는 없다. 국가의 궁극적 목표는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에 따른 이해관계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는 언제든 필요하다면 규범을 위반할 수 있다. 국제법이나 관례 등은 필요와 상황에 따라 지켜야 하는 대상에 불과하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 무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국가 의사결정과 행동의 주체는 국가 그 자신이다. 자신의 운명은 외부의 규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핵확산 금지조약의 경우 이는 우리국가의 필요에 의해 맺은 일시적 약속에 불과하다.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필요가 사라지거나 상황이 바뀐다면 국가안보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이 주어진다면 이 조약은 언제든 무시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미사일과 핵,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갖춘 상황에서는 핵확산 금지 조약의 폐기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일 수 있다.

도덕은 국가안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국가가 약속이나 규범을 지키는 행위자라는 평판을 쌓는 것은 그 평판이 해당 국가에게 안보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망각되어 도덕이나 규범을 지키는 그 자체에 매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많은 경우 국가안보이익이라는 목적이 망각되고 약속과 규범을 지키는 행위가 의미하는 수단 자체가 목적을 대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는 약속과 규범을 지키는 것이 늘 언제나 국가안보이익과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V. 최선의 방어로서의 공격

국가안보에 있어 공격과 방어는 분리되는 단절적 실체가 아니다. 공격과 방어는 하나의 실체이다. 즉 공격은 최선의 방어이며 방어는 최선의 공격일 수 있다. 이러한 단순한 교훈이 망각되었을 때 그 결과 하나의 방식(특히 방어에 매몰된)으로의 전쟁수행에 매몰되었을 때 얼마나 비극적 결과가 나타나는 지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 증명될 수 있다. 방어에 매몰된 프랑스의 전쟁계획은 나치독일의 침공에 무력하게 허물어 졌다. 당시 프랑스 국가와 군에 만연됐던 지배적인 방어적 전략의 패러다임과 문화의 결과였다(Kier, 1996). 공격이 방어적인 의미를 갖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적진을 공격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적국의 선제공격 의지와 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곧 적의 공격력을 억제하거나 완화함으로서 방어적 목적을 달성한다. 이의 극대화된 전략이 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상호확증파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심장부가 공격받을 수도 있다는 근심은 방어를 위한 군사력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필요를 발생시킨다. 이는 공격능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또 자신이 치명적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근심은 최후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선제공격을 주저하게끔 만든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수없이 때리는 것보다 자신이 받게 될 몇 차례의 타격을 더 우려한다. 다음으로 적진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은 전쟁의 무대를 적국으로 옮김으로서 전쟁의 피해를 적국에게 끼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도시가 불타고 공장이 파괴되고 농토가 잿더미가 되는 것을 적국으로 옮김으로서 적국의 전쟁수행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곧 적국의 공격능력을 감소시켜 방어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다.

일반적으로 적국의 선제타격(First Strike)을 먼저 얻어맞고 그 이후에 적국에 반격(Second Strike or Counter-Strike)을 가하는 것은 결정적 조건이 갖추어 져야 가능하다. 그 결정적 조건은 일단 선제타격을 맞은 이후에도 적국에게 치명적 타격을 가할 만큼의 대응타격의 파괴력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응타격력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는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선제공격을 받은 러시아와 소련은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등의 국가자체의 맷집을 통해 선제타격의 충격을 흡수하고 치명적 대응타격을 적에게 가할 수 있었다. 이는 일본에 맞선 미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대체로 국가의

영토와 인구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이런 점에서는 유리하다. 다른 하나는 냉전기간 중 MAD로 나타났다. 핵공격의 가능성은 영토와 인구가 큰 대규모 국가의 이점을 상당히 무력화했다. 선제 핵공격은 미국과 소련과 같은 대규모 국가도 이차타격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잿더미로 사라질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이런 딜레마에 직면하여 대응타격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SLBM은 대응타격의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서 적의 선제공격을 억제하는 결정적 수단이 되었다. 대응타격력의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친구 즉 동맹으로부터 온다. 청소년 또래집단에서 내가 나보다 약해 보이는 나를 괴롭히는 대상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형제나 친구로부터 이후에 보복을 당할 것이 근심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국제관계 역시 유사하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동맹국의 존재는 적국의 선제공격을 억제하는 유효한 대응공격 수단이 된다.

만약 자신의 대응타격력이 무력화된다면 스스로의 국가안보는 상대국의 호의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나의 운명이 상대방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는 복속된 노예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 대응타격력이 무력화 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적의 선제공격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거나 완전히 사멸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이차타격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우리국가의 경우처럼 영토가 협소하여 방어의 종심이 짧은 경우 또 핵을 가진 상대국가에 맞서 대응 핵타격능력이 없는 경우 이런 위험의 여지는 높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유사하다. 상대방을 급습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 한 번에 공격대상을 죽이거나 대응공격을 하지 못할 정도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으면 스스로가 공격받을 것이라는 근심 없이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나의 뒤를 엄호하는 동맹국의 대응타격이 주저되는 경우다. 개인이건 국가건 대체로 남의 불행에 무관심하며 별다른 이익이 없다면 자신의 치명적 위협을 무릅쓰고 불행에 빠진 다른 이를 돕지는 않으려 한다. 때문에 만약 동맹국이 치명적으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면 이미 선제타격으로 상당한 내상을 입은 우리국가를 대신에 적국에 대응타격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특히 미국처럼 여론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 민주국가의 경우 이러한 경향성은 더 클 수 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국가의 경우 역시 북한의 선제타격에 대한 이차타격능력을 확보함으로서 전쟁을 억제해온 측면이 있다. 우리국가의 이차타격 능력의 핵심은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확보와 미군의 지원이다. 지난 전쟁의 사례를 들면 북한

의 선제타격 시 일단 그 선제공격의 진행을 봉쇄하고 방어선의 후방에서 우리의 재래식 전력을 결집한 다음 적에 대한 전면적 반격에 나서는 것이다. 이 반격에는 미군 전력도 역시 함께 가세하게 된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전쟁 시나리오에서는 상당한 열세에 놓이게 된다. 선제타격을 통해 우리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힐 수 도 없으며 한미연합전력의 대응타격을 감당할 만한 재래식 군사력도 확보할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한다.

하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그리고 SLBM과 테러 및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북한의 선제 타격능력은 매우 치명적이 될 수 있다. 급작스런 선제타격에서 핵과 미사일, SLBM을 통한 타격은 부산에서 목포에 이르는 우리의 후방을 폐허로 만들 수 있다. 또한 이 타격은 우리국가의 대응타격력의 상당 부분을 파괴할 수 있다. 이 지역에 우리의 원자력 발전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핵타격 가능성은 이들 국가의 여론을 통해 이들 국가가 한국을 지원하는 군사력과 지원활동의 전개를 무력화 시킬지 모른다. 우리사회의 대부분이 도시화되고 이웃과 단절되어 개인화된 상황은 테러와 사이버 공격이 가져다주는 혼란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도심 곳곳에서의 테러발생과 사이버 공격과 심리전에서 비롯된 커뮤니케이션의 심각한 불통과 혼란은 국가의 이차타격 역량을 결집하는데 상당한 지연 및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다면 우리 국가의 대응타격능력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

북한에 대한 억제능력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모색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데 하나는 북한의 치명적 급소가 어디인가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면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그 급소를 공격해야 하는 것인가이다. 북한의 결정적 취약성은 북한이 왕조국가라는 특성에서 발견될지 모른다. 최근의 인민무력부장 즉결 처형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의 모든 권력은 김정은에게 집중되어 있다. 즉, 북한은 김정은과 그 가족, 그리고 김정은을 둘러싼 측근 지배엘리트와 그 가족,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평양이라는 집중된 공간이 그들의 강점이자 취약점이 될 수 있다. 고난의 행군 당시에 보이듯이 이 집중된 북한의 핵심을 벗어난 주변부에 해당하는 지방과 일반 인민들의 극심한 고통과 막대한 희생은 국가정체 자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이 집중된 핵심에서의 심각한 위기는 북한국가 자체에 결정적 위협이 될지 모른다. 즉 북한에 대한 물리적 타격은 이 평양, 지배엘리

트와 그 가족, 그리고 김정은과 그 가족이라는 북한의 핵심을 파괴하거나 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주변부 지역과 주민들이 유사시에 불안정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김정은이 집권이후 함경북도와 같은 지역을 거의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차별받고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정도가 높은 북한의 주변부 지역에서는 만약 북한의 핵심부가 치명적 공격을 당한다면 상당한 전력이탈이 초래될 수 도 있을 것이다.

공격능력의 확보를 위한 선택대안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자체 핵무장을 시도하여 미소 간에 구축되었던 MAD를 남북한 간에 미니 MAD로 재현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의 강력한 저항과 외교적, 경제적 압박과 같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마찰을 우회하는 한 방법으로 일본과의 공동핵개발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동북아 역내에서 사실상 한국과 일본 두 국가만이 핵전력이 없다. 때문에 양국은 핵전력의 공동개발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가진다. 특히 일본이 제국주의적 세력 확장을 모색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노리고 있다는 점은 우리국가가 이러한 일본의 이해를 활용하여 우리의 핵전력 구축을 모색할 수 도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방법은 미국의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국가가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치명적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로스엔젤리스나 하와이 같은 미국 서부의 주요 지역이나 미 항공모함이나 괌의 미군기지와 같은 주요 군사목표물이 북한의 핵 공격을 받는 현실을 무릅쓰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응타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서의 공고화이다. 때문에 현재의 한미안보동맹과 미군의 한반도 배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문화적, 심리적, 정치적, 그리고 실체적 연대가 이루어져야할지 모른다.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 간의 민간인과 사회적 수준에서의 문화적 동질성과 유대가 확대 심화되거나 서로 공유하는 가치들이 더욱 공고화되는 수준에서의 연대가 필요하며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경우에 따라서는 전투 병력의 해외 파병과 같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집단적 군사전력 전개에 대한 동참과 같은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맹은 협정과 연합훈련보다는 서로 함께 어깨를 맞대고 피를 흘리며 싸운 경험에서 더욱 공고해 질 수 있다. 한편 동시에 미국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힘을 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인 정치적 실체적 연대도 고려되어야 한다.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에 대한 지지는 매우 핵심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은 미국의 역내 군사력 전개에 있어 결정적인 디딤판이기 때문에 이에 대

한 고려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일본을 배제하려한다면 제주도를 적극적으로 군사기지화 하여 미군의 군사력 전개의 디딤판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도나 한반도 남부지역에 미 해군 기지를 제공하여 미국의 항모전력이나 핵잠수함 전력을 유치하는 것은 효과적인 억제책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로 다시 가져오도록 하거나 사드를 배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동맹 공고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여러 방안들의 초점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역외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위협을 다스리는데 한국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고 또 믿을만하고, 실효적인 파트너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것을 통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타격의 확실성을 높이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맹은 서로가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동맹은 일방으로부터 일방적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한국의 역할은 개정된 미일안보동맹에서 일본이 미국에게 제공하는 부분들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 남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현재의 대북군사전략을 버리고 적극적 공격옵션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동시 선제타격 전략이 될 수 있다. 개인 간의 싸움에서 신체적으로 우월한 상대방에 대응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해 들어가거나 주짓주의 경우처럼 상대방을 바닥으로 당겨 눕히는 것이다. 이 경우 상대방 팔의 스윙 안쪽에 생긴 안전지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적을 바닥에 눕힘으로서 적의 신체적 우월함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핵전력을 가진 강력한 적국의 타격을 피하는 것은 적국의 영토내로 가급적 신속히 들어가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적국은 자신의 영토 내에서 핵무기를 사용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게 된다. 만약 북한이 선제타격을 한다면 가급적 신속히 우리의 재래식 군사전력을 북한영토내로 전개시키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적극적 공격 전략은 평양에 집중되어야 한다. 평양의 코앞에 까지 들이닥친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운이 따른다면 평양과 김정은이 직접 공격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함경북도와 같은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고 불만이 많은 지역에서 소요나 상당한 전력이탈이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이 경우 우리국가의 후방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매우 취약해 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동시 선제타격 전략은 사실상 방어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북한군이 손쉽게 신속히 남한전역을 장악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군사적으로 목표지역을 점령하는 것과 해당 지역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그리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01년 이후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대 이라크 전쟁은 그러한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군사적으로 목표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점령된 지역에 주둔하면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의 폭력적 도전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실효적인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우며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모두에서 미군은 사실상 탈레반 정권과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지만 해당 지역의 실효적 통제력을 확보하고 전쟁 자체를 종결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우리가 방어 전략을 포기하고 북한지역에 대한 공격에 집중함으로서 북한군이 남한의 대부분의 지역에 군사력을 전개해 나간다고 할지라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사례를 비춰보면 실제로 실효적 지배를 달성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어떻게 그런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때문에 방어를 포기하는 것이 사실상 방어 전략이 될 수 있다.

방어 전략은 북한군의 주요 공격 전력을 가급적 우리국가의 내부로 깊숙이 끌어들여 남한전역을 북한군의 수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방어선의 개념을 없애고 북한군의 대부분의 전력을 남한지역 내부로 깊숙이 끌어들이게 되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전력을 사용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다. 자신이 점령한 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한 타격을 하려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 전역이 한국전쟁 때와는 달리 고도의 도시화가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북한군의 남한 침공은 대부분의 경우에 도심전투의 모습을 띨지 모른다. 도심 전투는 문에서 문으로 이어지는 (Door-to-Door) 전투이다. 이는 북한군의 진공 속도를 상당히 떨어뜨릴 것이며 남한지역의 장악에도 상당한 장애 요소가 될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와는 달리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도의 도시화의 여파로 이웃에 누가 사는 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이러한 개인화되고 익명화된 국민들을 국가방위를 위해 동원화하기도 어렵지만 동시에 침공하는 북한군이 지지세력과 적대세력을 구분하면서 남한주민들을 집집마다 장악해 나가기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즉 체첸전쟁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처절한 도심전투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으며 기계화된 북한 정규군이 도심을 쉽게 점령하고 신속히 다른 지역으로 전개해 나가기 매우 어려울지도 모른다. 실제로 군사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었던 러시아군은 빈약하게 무장

한 체첸 민병대를 상대로 그로즈니에서 상당한 손실을 내며 패퇴한 바 있다(Oliker, 2001). 전쟁개시의 최초 단계에 민간인들에게 가급적 빠르고 신속하게 총과 수류탄, 폭발물과 그리고 RPG(Rocket Propelled Grenade Launchers) 등의 도심전투에 유용한 개인 휴대무기들을 다량으로 배포한다면 이러한 민병대에 의한 도심 게릴라 전투를 유도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 경우 민병대, 시민군 등을 지도 또는 지휘할 고도로 훈련받고 전투 경험을 갖춘 현역 또는 예비역 들이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전투 집단이 될 수 있다. 이는 리비아나 시리아 등지에서 알카에다나 IS의 정예전사가 시민군 또는 민병대의 야전 지휘관으로 참여하면서 이들 시민군과 민병대가 얼마나 파괴력 있는 전투단위로 빠르게 변했는지를 통해 그 효과성을 살펴볼 수 있다. 오랜 징병제 때문에 우리국민의 대다수가 총기를 다룰 수 있으며 군사지식을 기본적으로 알 고 있다는 사실과 도심전투에서 현지상황(수도, 가스 등의 파이프라인, 지하철의 터널, 배수로, 빌딩의 계단과 옥상, 사무실의 구조 등과 같은)에 대한 지식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 민병대나 시민군이 진공하는 북한군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상당한 이점이 될 것이다. 이에 더불어 북한 지역 공격에 참여하지 않고 남은 예비전력과 동원된 예비군 전력, 그리고 경찰병력 등이 효과적으로 동원된다면 남한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한 북한군에 대해 상당히 효과적이고 파괴력 있는 도심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동시 선제타격 전략에서는 전선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동시 선제 타격은 사실상 선 북한 공격 후 곧 이은 우리국가의 대응타격이다. 따라서 사실상 공격은 북한이 먼저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 선제타격인 이유는 우리의 대응타격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선방어 후반격이 아니라 적의 공격에 맞선 맞불공격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반도 전역이 동시전장화 되는 수렁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공격은 우리의 주력 상비군이 방어는 잔존 정규군과 예비군, 경찰병력과 민병대, 그리고 시민군 등의 도심전투로 이루어진다. 핵심은 시간싸움이 될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얼마나 신속히 효과적으로 적의 컨트롤 타워인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동시 선제타격 모델의 지향점은 핵전력을 가진 북한과 MAD를 복원하는 것이다. 핵심은 김정은에게 우리국가를 공격할 시에 자신도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현실성 있게 믿게끔 할 것인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우리의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의 신속한 전개를 통해 북한의 핵전력과의 MAD를 구축하려고 시도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를 통해 북한의 전쟁의지를 억제하고 전쟁을 회피하려고 시도할 수 있을지 모른다.

Ⅵ. 계량적 크기가 아닌 활용예술로서의 군사력

포커의 매력은 놓은 패를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게임을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낮은 패를 들더라도 효과적인 블러핑과 전략적인 베팅은 게임의 승리를 가져다준다. 즉 포커에서는 패가 잘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가진 패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 가가 더 중요하다.

군사력의 계량적 크기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군 병력의 수적 우위, 전쟁무기의 양적 우세, 첨단 무기의 기술적 우위, 가용한 자원과 물자의 크기 등이 전쟁 수행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교훈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례는 무수히 많다. 최근 역사에서도 베트남 전쟁과 세계 도처에서의 대테러 전쟁 등은 그에 대한 단적인 사례이다. 압도적인 소련군 역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10년 전쟁에서 패배했다.

자신이 가진 군사력을 어떻게 활용하는 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전쟁술에 해당하며 이는 하나의 활용예술(Art of Game)과 같다. 전쟁은 자신이 가진 군사력의 강점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활용한다. 군사력의 강점이 극대화되는 게임방식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쟁은 서로 다른 게임방식이 충돌하는 장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군사력의 계량적 크기가 큰 적국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필요도 군사력의 계량적 크기가 열세인 적국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

주어진 군사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활용예술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 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국가의 전반적의 군사력 건설을 우리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와 우리에게 주어진 제약과 이점이라는 상황적 요인에 근거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하나의 큰 국가안보전략의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하나의 북한의 구체적 도발 사례에 대응한 파편적인 군사력 건설이나 지상군과 해, 공군의 개별적인 군사력 건설 또는 당시의 정권의 선호도에 따른 산발적인 군사

력 건설과 같은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상군 전력은 소규모의 엘리트 전투 집단에 집중할 것인지 첨단화 할 것인지 해군 전력은 잠수함 전력에 집중할 것인지 항모전단 건설에 투자할 것인지 공군의 경우 첨단 전투전력에 주력할 것인지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 등의 전력에 집중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 결정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전쟁수행 방식을 기초로 전체가 디자인 되어야 할지 모른다. 마치 국내의 모든 대학이 서울대학교의 모델을 따라 백화점식의 천편일률적인 대학운영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군사력 건설 역시 미군과 같은 강대국 군사력 건설을 모델로 하여 백화점식으로 단순히 모방하는 것은 제고해볼 여지가 있다.

Ⅶ. 생각할 수 있는 목표로서의 제국주의

제국주의는 한 국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향할 수 있는 최종적 목표이다. 이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만약 이것이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과 같은 역내의 거의 모든 주변국들은 비난받아야 한다. 강대국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다. 강대국만이 제국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강대국이 가지는 능력 때문이지 그 지위 때문은 아니다. 능력은 강대국을 만들고 제국주의의 결과는 지위를 만든다. 때문에 우리국가와 같은 상대적으로 힘의 열세에 있는 국가 역시 제국주의를 지향할 수 있다. 제국주의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추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한 국가 단위가 지향하는 하나의 꿈이자 방향성이다. 꿈은 동기를 만들고 동기는 노력하게 만들며 노력은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다. 제국주의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꿈이다.

영어 속담에 “누구에게나 초라한 시작이 있다(everyone has a humble beginning)”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제국질서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단위들에 해당한다. 지금의 미국은 13개주로 이루어진 초라한 독립국가로부터 시작했다. 러시아 역시 몽고 지배하의 굴종을 극복해 나가면서 제국을 만들어 나갔다. 몽고 제국은 200만 여명으로 이루어진 초라한 유목부족의 연합에 그 기원을 두고 있었다. 영국은 유럽의 초라한 변두리로부터 대영제국을 이룩하였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 역시 그 시작은 보잘 것 없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몽고의 용병으로 이리저리 팔려갔던 투르크 전사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볼 때 우리국가가 제국의 꿈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단지 지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은 상황적 제약과 우리의 지금의 능력의 한계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1, 2백년 뒤 또는 5, 6백년 뒤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궁극적 국가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단위가 내적 성장의 최대치에 도달하게 되면 제국주의 형태의 외부로의 세력의 투사로 변환하게 되는 것은 그 국가의 자연적 성장과정이다. 이는 직접적 정복전쟁에 의한 힘의 투사일 수도 있고 19세기 영국의 경우처럼 식민지의 개척일 수도 있으며 20세기 미국의 경우처럼 자신의 주도하에 글로벌 질서를 경영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간접적으로 투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 국가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제도적으로 성장을 이룩하여 그 임계 치에 도달하게 되면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 같다. 하나는 그러한 발전 궤적을 그 국가의 영역을 넘어 다른 국가들로 힘을 투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그 국가는 외부로 힘을 투사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적과 마주치게 되며 또 다른 외부로부터의 중요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한다. 이러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 국가는 내적으로 더 단결하게 되며 그 국가의 에너지는 더 역동적이 되며 그 국가의 역량은 더 증가하게 된다. 외부의 적대 또는 저항세력의 도전이 압도적이게 되면 그 국가의 팽창 에너지는 꺾이게 되고 국가단위내로 수렴하게 되며 국가의 성장은 멈추게 된다. 반면 그 국가가 내적 선택이건 아니면 외적인 저항에 의해서건 제국주의로의 팽창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 국가의 성장력은 그 국가단위의 영역 내에서 멈추게 된다. 이 경우 국가의 주요 목표는 그 구성원들의 삶의 만족과 물질적 풍요, 개인적 쾌락에 대한 지향과 같은 분열적인 과정으로 이행되게 된다. 이 경우 그 국가단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적 역동성은 퇴행되게 되며 국가 자체가 늙어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국가 구성원의 공통의 지향점이 결여되고 긴박한 외부로부터의 도전이 없기 때문에 이미 획득한 정치적 성숙과 경제적 번영을 차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분열적 갈등에 직면할 수 있다. 오늘날의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이러한 경향이 보이는 듯하다. 만약 이러한 국가단위가 유사한 성격의 국가단위들이 아니라 제국주의 적인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국가의 목표인 통일은 제국적 세력투사의 궁극점 지향점과 통합되어야 할지 모른다. 클라우제비츠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국가의 목표, 그리고 궁극적 목적간의 위계적인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의 분류에 따르면 이 궁극적 목적은 국가

가 지향해 나가야 하는 어떤 가치와 정체성이며 가장 장기간의 가장 상위 차원에 있는 어떤 이루어야할 대상이다. 북한과의 통일은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것 자체가 어떤 최종적인 국가의 도달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남북한 통일이 된다고 해서 우리 국가의 지향점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궁극적 목적은 우리국가의 시작과 끝이라는 긴 역사적 생애주기(life-cycle)에 걸친 하나의 방향성이다. 따라서 통일이라는 중기 목표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다. 반면 제국적 세력투사에 의한 우리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제국질서의 구축은 이러한 장기적인 궁극적 지향점이 될지 모른다. 즉, 통일이라는 중기 목표는 이 장기 목적의 방향성내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이 말은 또한 제국질서의 구축이라는 최종적 지향점으로 가는 여정에서 통일은 선택할 수도 또는 우회할 수도 있는 다양한 옵션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통일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할 궁극적 지향점이 아니라 다른 보다 높은 차원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향한 여정에서 거쳐 가는 하나의 선택 경로일 수도 있다.

폭풍우를 뚫고 항해하는 선박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살아남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적 기대감이나 "별일 없이 지나갈 것"이라는 요행수가 아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구조해 줄 것이라는 무책임한 의존이나 노예근성도 아니다.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장과 항해사, 기관장과 갑판장, 그리고 선원들의 굳건한 의지와 용기, 공포를 달래면서 각자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는 책임의식, 그리고 단결과 선장의 리더십이다. 트라팔카 해전을 앞두고 넬슨이 "영국인은 각자 맡은바 책임을 다하라"고 했던 외침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국가는 최근의 역사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난관을 스스로 해결해 본 경험이 거의 전무 하다. 임진왜란은 명나라의 지휘와 지원을 받았으며 구한말에는 사실상 저항 없이 일본에 양도되었다. 2차 대전 이후의 국가수립은 일본의 패망과 함께 이루어진 강대국으로부터의 선물이었으며 한국전쟁은 미국의 지휘와 지원 아래 치러졌다. 한미동맹은 우리국가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척추와 같지만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국가안보의 문제를 운영해 본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는 우리국가를 둘러싼 역내 및 글로벌 안보위기는 우리국가에 매우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국가는 스스로의 국가안보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한 개인이 성인이 되면서 부모의 의존

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지듯이 국가 역시 성숙한 국가가 되면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던지는 몇 가지 생각할 수 없는 생각들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여기서 제안하는 것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국가안보에 관한 상식과 고정관념 또는 정상적인 방안과 정책들을 넘어선 국가안보에 관한 보다 혁신적인 논의들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외문헌

Hopf, Ted. (2002). Social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Identities & foreign policies, Moscow, 1955 & 1999.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Johnston, Alastair Iain. (1996). Cultural realism and strategy in Maoist China. In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pp. 216-268).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Kier, Elizabeth. (1996). Culture and French military doctrine before World War II. In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pp. 186-215).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McMains, Michael J. and Mullins, Wayman C. (2001). Crisis negotiations: Managing critical incidents and hostage situations in law enforcement and corrections. (2nd ed). Cincinnati, OH: Anderson Publishing Co.

Oliker, Olga. (2001). Russia's Chechen wars 1994-2000: Lessons from urban combat. Santa Monica, CA: RAND.

Tsygankov, Andrei P. (2013). Russia's foreign policy: Change and continuity in national identity. (3rd ed).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Abstract】

Think the Unthinkable on National Security

Yun, Min-Woo

This manuscript proposes the rarely considered ideas for the South Korea responding to the recent trend of international security in the Northeast Asia. It can be a meaningful step to attempt to understand the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beyond existing perceptions and commonsense. This endeavor may stimulate a new alternative perception for the national security assurance or at least play as a devil's advocate to avoid a dogmatic perception on the Korean national security practices. The matters proposed and discussed here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an innovative approach for securing the national security of South Korea.

Key Words: National Security, Perception, War, Strategy, Constructivism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 제1호(2015)
투고일 2015. 05. 04, 심사일 2015. 06. 10, 게재확정일 2015. 06. 17

포괄안보시대 융합적 안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이 홍 기

KNSPSA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포괄안보시대 융합적 안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이 홍 기*

[국문초록]

오늘날 선진화된 복리와 후생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재화 및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별 활동을 개관해보면 융합이 대세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식과 지식, 지식과 인간, 학문과 학문 간의 소통을 통하여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융합함으로써 고효율의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성공하여 왔고 이러한 시도가 초기의 제한적 융합에서 벗어나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가방위 중심의 안보개념을 넘어 국가기반의 보전과 국민안전까지 망라하는 포괄적 안보의 개념이 자리매김한지도 수십 년을 지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가가 관리 및 대응해야할 안보위협은 더욱더 다차원화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가지의 정책적 솔루션이나 기술적 대책만으로는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직면해 있다.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안보위협에 능동적이고 고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확고히 갖추기 위해서는 안보정책 개발 시 융합론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보여진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착안하여 시작된 것이다. 국가목표는 가변성이 낮지만 안보정책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율성이 가장 높은 대안으로 변화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선 안보 이외의 영역에서 융합론을 여하히 활용하여 어떤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안보분야의 융합구현 실태를 점검해보고 앞으로 다양한 안보정책을 연구 및 개발함에 있어서 융합론 적용방향을 개념적 수준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융합, 포괄적안보, 효율성, 융합안보시스템, 안보위협

* 국방대학교 초빙교수(전 3야전군사령관, 예비역 대장)

목 차

Ⅰ. 서 론
Ⅱ. 융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융합의 보편적 실체화 추세
Ⅳ. 21세기 안보위협의 특징과 대응개념
Ⅴ. 융합안보시스템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Ⅵ. 결 론

Ⅰ. 서 론

오늘날 세계는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엘빈토플러가 규정하였던 '정보화시대'를 넘어 융합의 시대로 넘어가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인간의 사고(思考)와 행동방식면에서 한 우물을 깊게 파기보다는 한 우물과 다른 우물의 경계지역을 넓고 깊게 파들어감으로써 전문성 추구에 집착하지 않고 융합성 확장에 주력하여 더 높은 효율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인간은 과학적 세계관이 학문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파편적 개별화를 심화시킴으로써 초래된 적폐를 제거하기 위해 융합의 개념을 태동시킨 것이다. 환언하면 지식과 지식, 지식과 인간, 학문과 학문 간의 소통을 통하여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요소들을 화학적으로 융합함으로써 고효율의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성공하여 왔고 이러한 시도가 초기의 제한적 융합에서 벗어나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인간세계에 선진화된 복리와 후생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재화 및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는 수개의 영역별 활동을 개관해보면 융합이 대세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지식창출의 공장이라 할 수 있는 학문분야에서는 다학

제 학문에서 학제간 학문으로 발전되었다가 이제는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을 갖는 신융합학제가 탄생되어 주류학문의 일종으로 인식되는 단계에 와 있다(박상욱, 2012: 26).

경영 분야에 있어서도 융합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IT기반의 '정보경영(e-비즈니스)'에서 u-IT중심의 '유비쿼터스 경영'으로 진전되었다가 이제는 융합기술과 지식을 통섭하는 '융합경영'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김덕현, 2011: 50). 디지털 컨버전스에 기반을 둔 모바일 혁명은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IT융합은 그 자체가 갖는 고부가가치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성장 동력으로 확산일로에 있다. 그 외에도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산업간 융합과 연계된 21세기형 미래도시 건선(U-City), 새로운 기회창출을 뒷받침하는 녹색경영, 기술발전에 수반되는 부작용 대응 차원의 윤리경영 등으로 융합의 이론은 실천적 차원에서 적용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안전보장의 영역에서 융합적 사고와 정책발전 상황은 어떠한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가방위 중심의 안보개념을 넘어 국가기반의 보전과 국민안전까지 망라하는 포괄적 안보의 개념이 자리매김한지도 수십년을 지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가가 관리 및 대응해야할 안보위협은 더욱더 다차원화 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가지의 정책적 솔루션이나 기술적 대책만으로는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직면해있다. 최초의 융합론이 태동할 당시의 상황과 대단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안보위협에 능동적이고 고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확고히 갖추기 위해서는 안보정책 개발시 융합론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보여진다.

안보위협 대비책의 연구영역에서 융합적 사고와 기술이 적용된 사례는 상당히 많다. 국가방위와 IT는 필수불가분의 융합관계로 발전되어 가시화되고 있으며 기반체계의 보전, 국민안전 확보 등의 영역에서도 많은 관심이 경주되는 가운데 융합형 대안을 모색하는 경향이 최근에 와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일반사회에서 범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융합추세에 비하면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겠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착안하여 시작된 것이다. 안보정책은 국가목표를 달

성하는데 있어 대내적 · 대외적 위협요소 발생에 대해 군사적 · 비군사적 수단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방지(억제)하거나 배제하는 기본정책이다(조영갑, 2006: 88).

국가목표는 가변성이 낮지만 안보정책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율성이 가장 높은 대안으로 변화 및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우선 안보이외의 영역에서 융합론을 여하히 활용하여 어떤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안보분야의 융합구현 실태를 점검해보고 앞으로 다양한 안보정책을 연구 및 개발함에 있어서 융합론 적용방향을 개념적 수준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Ⅱ. 융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Wilson은 자신의 저서 “Consilience : The Unity of Knowledge”에서 16세기부터 분화하기 시작한 학문의 영역과 지식탐구의 방법은 엄청난 양(量)의 지식을 발굴하는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들이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지 못하였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과학과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이 융합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김옥순, 2009: 3; 안돈순, 2012: 6). 단독학문 중심의 연구에 의한 심층적 전문성 탐구방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성 과제 해결의 대안이 곧 융합이라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Wilson의 명제와 대동소이한 방식의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융합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할 만큼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 학문의 영역에서 공감하는 보편적 융합이론이 창시되지 못한 채 부분적으로 관심 있는 학계, 학파, 학자 등이 각자의 해석에 따라 융합을 정의하고 실행에 옮기다 보니 개념상의 혼란이 지속되고 중구난방 식(衆口難防 式)의 개념적용이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실태를 정리하고 통일된 개념인식의 지속성 인식이 가능한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

1. 융합과 유사한 용어들의 활용실태

융합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통용되는 용어들은 복합, 통합, 통섭, 퓨전, 컨버젼스, 하이브리드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복합(複合)은 여러 가지 지식, 기술, 제품 등을 물리적으로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의 틀 속에서 각자의 역할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시한다면 교통센터와 상가를 합해놓은 버스터미널 등이 그 예이다.

통섭(統攝)은 미국의 사회생물학자 Edward Wilson 교수(1929~, 하바드대)의 저서 '컨질리언스(Consilience)'를 최재천 교수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주목받은 용어이다(김덕현, 2011:21). 사용된 문자대로 보면 큰 줄기 또는 실마리를 잡는다는 것이 통섭의 원뜻이 된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해보면 이질적인 요소들을 하나의 틀에 연결해 놓고 재해석하여 전체를 관통하는 줄거리를 찾아낸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원적인 원리(또는 이치, 또는 섭리)를 모르고 한 분야에만 몰입되어 사람과 사람, 조직과 조직, 학문과 학문 간에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는 분해형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전체를 당겨잡아주는 원칙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통섭의 방식은 수직적 통합(Unification), 수평적 통합(Integration), 임의적 결합(Collaboration) 등이 있으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 융통성있게 사용된다(김덕현, 2011: 22~23. 재구성)[1].

퓨전은 독립적인 다수의 요소(또는 개체)를 요구되는 효과에 호응할 수 있도록 혼합하는 것을 원뜻으로 삼는다. 종래의 순수주의적 태도를 지양하고 혼합을 통한 변형을 가져옴으로써 창조적 합리성을 제고시키겠다는 발상을 말한다. 생명공학을 통한 변형 유전체를 만드는 것 등이 그 예다.

하이브리드는 2개의 개체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양직의 장점을 복합하여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며, 이종(異種), 혼합, 혼성 등의 의미를 갖는다. 휴대폰에 카메라와 MP3 기능을 섞어서 휴대폰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컨버젼스는 수렴, 즉 여러 갈래의 경로가 한 점으로 모이는 듯한 현상을 뜻하는데 ICT기술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한 제품에 모아 놓는 것, 또는 이전 별도의 기기와 서비스 통합에 의해 구현되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박상욱, 2012: 22). 예를 들면, 디지털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는 이제 구분되지 않으며, MP3전용 플레이어도 휴대전화에 흡수된 후 자취를 감추었다.

그렇다면 융합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어사전에서 다루고 있는 융합의 의미는 화학, 생물학 그리고 일반적 측면에서 약간씩 다르게

1) 수직적 통합은 카드섹션을 예로, 수평적 통합은 뮤지컬을 예로, 임의적 통합은 수업하는 교실을 예로 들 수 있다.

나타나고 있다. 화학적 의미는 원자핵의 결합으로 중원자핵을 형성하는 것이며 생물학적 의미는 원생동물의 두 개체가 합쳐 하나의 개체가 되는 현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로는 “여럿이 녹아서 하나가 됨”이라 설명한다(새국어사전, 1989: 1450).

2. 학문융합의 개념발전 경과

상기와 같은 원천적 개념의 융합이 학문에 응용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16세기까지의 과학은 오늘날처럼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철학이라는 이름의 한 덩어리로 존재하고 있었다. 중세 유럽의 전형적인 학자들은 거의 모든 학문에 걸쳐 단위학문의 전문가 수준을 능가하는 전문적 역량을 구비하고 있었다. 일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조각, 건축, 해부학, 식물학, 천문학, 지리학, 음악, 도시계획 그리고 발명 등 자연과학과 예술의 전 분야에 능통한 융합인재이었다.

16세기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학문의 영역들이 각자의 고유한 탐구대상과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지식은 분해되어 나갔다. 이러한 추세는 환원주의 영향으로 인해 더욱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엄청난 량의 지식을 발굴해내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7~18세기에 일어났던 계몽사상은 인간의 이성(理性)에 의해 인간과 자연, 정치와 사회문제를 관통하는 보편적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Edward Wilson, 2005: 39). 18세기 뉴턴의 등장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과학의 방법 이론이 다듬어져서 다수 영역의 학문들이 하나의 과학체제로 통일될 수 있는 융합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전반까지 일반적인 학문 발달의 추세는 융합과 수렴보다는 세분화와 전문화의 경향을 이어왔다고 본다(이정모, 2010: 4).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는 학제간 통합의 개념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서로 별개라고 여겨졌던 여러 학문들 간에 두루 통하는 공통적인 법칙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과학과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학문이 탄생하기 시작하였다(예: 유기화학 등).

20세기 중후반에는 생화학, 진화의학, 계산언어학 등이 등장하였고, 디지털컴퓨터의 출현에 따른 인지과학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융합의 흐름에 연계하여 디지털 문화가 급성장하면서 마이크로와 나노수준의 물질세계에 대한 연구가 부각

되었고 유전자 및 생명과학, 복잡계 이론의 발전과 함께 융합이론이 거듭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전문화 및 세분화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학문 연구의 경향은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학문간 융합의 개념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3. 융합의 기본개념 재설정

현재시점에서 모두의 공감으로 합치를 이루어 근착된 융합의 정의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융합의 개념은 미국에서 창안된 수렴테크놀로지(CI)의 한국적 해석+통섭개념+일반인들의 상식적인 이해가 암묵적으로 융합된 것이며 사용자에 따라 서로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여지면서도 통용되는 개념이다(이정모, 2010:11). 다시 말하면 테크놀로지간 수렴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품 생산에서 다른분야 부품의 퓨전개념이라 할 수도 없는데 포괄적이고 융통성 있으며 모호성을 인정하는 통합의 개념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융합은 학술연구의 핵심적 영역으로 부각되어있고 창조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수단으로 인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명확하게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자의 뜻에 따라 融(융)을 해석해 본다면 鬲(력)은 솥을 의미하고 虫(충)은 식재료를 뜻하므로 솥에다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끓여서 하나의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융합은 한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생산공정을 떠올리게 한다. 재료들은 학문,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이 될 것이고, 생산공정은 융합이 될 것이며 생산품은 융합학문, 융합기술, 융합제품 등으로 볼 수 잇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공정은 재료들을 혼합시켜 녹이는 방법에 따라 물리적 결합, 화학적 결합, 생물학적 결합 등 여러 가지의 결합방식을 다 포괄하여 통칭하는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사유(思惟)와 판단을 고려하여 융합의 이론적 정의를 재진술한다면 "독자적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논리와 개체들을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결합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부가가지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새롭게 창조하는 활동"이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써 보면 종전까지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독자적인 영역을 지키고 있던 경제, 기술, 문화, 예술, 인문, 사회 등이 이제는 서로간의 경계구역을 왕래하면서 이론과 실제, 지식과 기술, 기술과 산업, 제품과 서비스 등 영역별 요소간의 적절한 결합과 통섭을 통하여 융합을 구현함으로써 신이론, 신산업, 신부가가치

를 창출해내는 것이라 하겠다.

4. 융합의 구성요소와 융합기술의 발전

앞서 융합의 개념설정을 위한 검토과정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융합은 종전의 성과보다 개선하거나 혁신시킬 것을 목표로 투입요소(Input)를 가공하는 공정의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본질에 충실한 융합의 개념과 유사한 공정의 표현인 복합, 퓨전, 하이브리드, 컨버젼스 등도 융합의 방식, 프로세스, 성과와 가치측면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융합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먼저 융합의 유형에 관한 고찰이다. 학문융합의 유형은 다학제 융합, 학제간 융합, 신(新)학제간 융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홍성욱, 2012: 25). 융합의 소재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개체로 가공해가는 과정과 방식에 따라 복합, 하이브리드, 퓨전, 컨버젼스 등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융합의 결과인 성과의 정도와 량에 따라서 분류하면 개선(Improvement)와 혁신(Innovation)으로 나누어진다. 융합의 대상 즉 공정에서 사용될 재료(투입요소: Input)에는 개념적 개체(학문, 기술, 문화 등), 물리적 개체(제품 등), 가상적 개체(시뮬레이션, 사이버머니 등)로 구분할 수 있다. 융합의 대상이 되는 투입요소의 범주에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 실생활, 가상세계 등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 학문, 기술, 제품, 서비스, 기업과 조직, 산업, 문화, 가상적 서비스, 기업, 산업 그리고 무형적 투입요서인 가치와 사이버 서비스 등이 구체적인 항목들이다.

한편, 융합기술은 독자적인 개체의 형태로 존립되어온 다수의 기술들이 하나로 수렴되어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 진 것을 의미한다. 2002년에 최초로 국가급 수준의 융합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한 나라는 미국이다. 이때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에서는 나노과학(NT), 생명과학(BT), 정보과학(IT), 인지과학(CT)이 각자 개발한 기술들이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나로 수렴시키면 하나로 되어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로 재탄생된다고 하면서 NBIC 융합과학 기술을 제시하였다. 2001년 나노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한 미국은 대도전 5주제(*3)를 선정하여 국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융합기술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NBIC로 불리는 융합기술의 근원을 창조할 수 있었다(김덕현, 2011: 17).[2] 이러한 추세는 캐나다를 거쳐 EU로 옮겨 더욱 활성화 되었는

데 NBIC외에도 사회과학, 문화인류학, 철학 등의 융합으로 건강, 교육,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등의 문제해결을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EU는 CTEKS라는 통칭되는 미래융합 테크놀로지의 틀을 만들었으며 이는 인간 개개인의 성취보다는 인문학적 측면을 강조하여 사회적 협동에 의한 공동체 사회형성과 사회적 협동체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Ⅲ. 융합론의 보편적 실체화 추세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공공부문별 융합의 현황과 트렌드를 관찰해봄으로써 융합의 실천적 의미를 좀더 분명히 이해하고 이 글이 지향하는 융합안보시스템 구축 방향 연구에 기반을 열고자 한다.

공공부문에는 개념적 영역에 해당하는 학문융합으로부터 생산된 물질에 해당하는 제품,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으로 융합을 이루기 위한 연구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일 먼저 거론할 부분은 학문 간, 학문과 기술의 융합을 들 수 있다. 학문 간 융합은 2가지 이상의 학문을 연계시켜 더 우수한 이론을 창출하고자 하며 바이오닉스(생물학+전자공학), 기술경영(기술+경영)등이 그 사례이다. 인지과학은 인간의 심리나 뇌에 들어있는 생각, 심리 등이 표현되는 과정에 대한 학제적 연구인데 언어학, 신경과학, 인류학, 심리학, 철학 등의 학문이 융합된 것이다(지식경제부, 2010:7). 기술 융합은 2가지 이상의 기술을 수렴하여 원천적 기술보다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시키고자하는 융합이며 인터넷 기반의 통신기술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은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품과 제품,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부가가치가 이전보다 훨씬 제고된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복합프린터(제품+제품), e-Book(제품+서비스), IPTV(서비스+서비스)등을 제시할 수 있다. 기업융합은 하나의 완성품을 하나의 기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I(Input) - P(Process) - O(Output)의 전체과정(Full Course) 중 부분적 국면(Partial Step)을 담당하는 각각의 단위기업들간 융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산업융합은 자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산업체가 보유

2) 융합기술개발 대도전 5주제 : ① 개인의 인식과 소통능력 확장, ② 개인건강과 육체적 능력 향상, ③ 그룹과 사회전체의 성과 향상, ④ 국가안보역량강화, ⑤ 과학과 교육의 결합

하고 있는 지식, 기술, 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접목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확언하면 기업생태 사슬을 재구성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자동차와 IT산업의 소프트웨어, 센서, 통신시스템을 결합한 스마트카등을 그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IT융합은 IT기술과 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기능(Sensing, Networking, Computing, Actuating)들을 다른 분야에 융합시킴으로써 공정을 혁신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시킬뿐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IT와 건설을 융합하여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만들 수 있고, IT와 국방 및 안보영역을 융합하면 NCW(넷트웍 중심의 전투)를 구현할 수 있으며 IT와 금융시스템을 융합하여 모바일 뱅킹을 실행하는 것 등이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국가 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과학 중심의 융합 활성화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현재는 창조경제 정책을 기반으로 융합정책을 국가경영의 선도적 정책으로 삼고 있다.

Ⅳ. 21세기 안보위협의 특징과 대응개념

막스베버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근대적 삶에 대한 문제의 접근방식은 분절적(分節的)접근과 관료적 해결 방식으로 인식되었다(윤민우, 2013: 22). 안보에 대한 위협 대응방식도 국가가 관료적 제도에 따라 설치하고 배당한 조직과 능력만으로 전통적 군사위협에 중점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운영했을 뿐 국가의 다양한 부문별 조직과 역량을 통합적으로 발휘하여 그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개념이 근대에는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탈근대화 이후 인간사회가 맞이해야하는 안보환경은 근대시대와는 판이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복잡하고 난해한 형상으로 지속 변화되어 왔으며 지금 순간에도 더 복잡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모두가 목도하고 있다. 이장에서는 위와 같이 변화된 안보환경과 해결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융합의 개념에 따라 사고 및 판단하고,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복잡계 위협을 상쇄시킬 수 있는 맞춤식 수단을 준비하며, 위협대응 시에도 같은 개념의 전술을 구사하는 접근방식을 활용한다면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의 답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현대 안보위협의 특징“1”: 포괄성

20세기 중반이후 안전보장을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과거에 군사적 위협 위주로 대비해왔던 전통적 안보방식에서 탈피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의 입장에서, 안전보장의 의미를 본래적 용어 뜻에 따라 광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종전에는 국가가 주권과 영토, 정치적 체제와 국민적 가치를 수호하는데 주안을 두었으나 국민이 국가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체제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과업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포괄적 안보의 개념이 대세로 자리 잡고 안보에 대한 위협요인도 또한 포괄적 범주의 요소들을 망라하여 재정리하기에 이른 것이다. 포괄적 안보위협에 포함되는 요인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쉽게 그 위협의 범주를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국가의 주권, 영토, 체제, 가치 그리고 국민의 생존권들을 포함하여 한 나라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이다.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총체적 위협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20세기까지는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곧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생각에 몰입되어 있었다. 20세기 후반에 태동되기 시작한 안보위협의 개념변화는 비교적 낮은 속도로 진행되어 왔으나 2001년 알카에다 조직에 의해 자행되었던 9.11테러를 계기로 급반전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9.11테러의 주범이 알케에다 조직이었으므로 비군사적 위협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목도된 인위적 재난이 인간안보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 통감하는 계기를 조성한 것이다. 따라서 비국가적 또는 초국가적 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군사적 물리력에 의한 파괴행위를 전통적 군사위협 못지않게 실체적 위협으로 상정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초래된 것이다. 또 다른 안보위협은 악성의 인위적 대형사고나 심각한 자연재난과 재해가 인간안보에 가져오는 위협은 국가나 안보학계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피폭사고와 최근 네팔의 지진폭발이 가져온 참혹한 인명 및 재산, 그리고 생태계와 도시기반 파괴는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그 생활기반을 보호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의 안보위협은 적대국 또는 적대세력에 의한 군사적 위협과 초국가적 또는 비국가적 비군사 행위자 그리고 부주의한 공무수행자 등에 의한 인위적 재난, 자연계의 우주섭리에 의해 불청객의 신분으로 찾아오는 자연재

난과 악성 기후변화까지도 망라되는 포괄적 안보위협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2. 특징 “2”: 다차원성

오늘날 안보정책 입안자들의 딜레마는 다차원적으로 전개되는 위협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역기능적인 파괴력이 극대화되어 국가, 사회, 국민들 개개인에게 심각한 파워를 가진 위협으로 작동하는데 반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대단히 미미하다는데 있다. 조직전체가 갖고 있는 총화적인 능력은 세분화된 하위조직에 위임 및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한 공동의 위협에 봉착되었을 때 발휘할 수 있는 능력(usable ability for great and common threat)은 극히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안보환경을 맞이한 21세기에 진입하면서 더욱 심각한 고민거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앞에 다가온 21세기의 안보위협은 위협의 행위자, 위협의 영향지역, 위협의 현실화시 파괴력 등의 측면에서 다차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행위자들을 보면 전통적인 위협의 주체인 국가, 민족의 범주를 넘어서 비국가와 테러조직 그리고 국제적 범죄조직과 종교적 목표추구 조직 등으로 다양하다. 재난을 일으키는 행위자도 인간과 자연 뿐 아니라 지층구조와 기후의 변화, 사람과 동물세계에 집단 질병을 감염시키는 여러 유형의 병원체등으로 다변화되어왔고 이러한 위협의 주체는 점차 확산일로에 있다. 다음으로 안보위협의 체감을 요구하는 영향지역도 한층 다차원화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위협의 유형이 다양하므로 발생하는 지역적 범주 또한 지상, 해상, 공중, 수중 및 사이버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변화하고 있고, 안보위협의 행위유형 또한 전면전, 국지전, 테러, 조직적 기획형 범죄, 재난, 악성사고, 재난으로 위장된 광역화 전염병, 전국을 관통하는 가축질병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지고 있다.

3. 특징“3”: 비대칭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의 안보위협은 포괄적이며 다차원적 특징을 갖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비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를 따르는 정치체제하에서는 권력의 주인이 국민이다. 이로 인해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요구를 구현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국민복지 실현에 주안을 두고 제반 국가기관의 책임과 권한이 조화롭게 행사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3면이 바다로 형성되어 있고 국제질서상 4강으로 지칭되는 국가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는 필수 특정분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우리를 위협하는 상대국이나 적대세력은 태생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 틈새로 침입할 수 있는 위협수단을 확보하며 우리가 알면서도 대처하기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비대칭적 위협전략이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만 보더라도 핵무기, 미사일, 특수전부대, 사이버전 능력 등의 분야에서 비대칭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무수히 많은 종류의 산업시설이 신설 및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각각의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소요의 총화는 가용한 능력을 현저히 초과한다. 심각한 자연재해를 유발하는 자연과 우주가 일으키는 재난과 기후변화를 예측 및 제어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지극히 유한하여 위협의 주체가 갖는 파괴력과 이에 대처하는 방어력은 극심한 비대칭적 대비구조를 이룬다.

4. 21세기 안보위협 대응개념 모색

앞서 고찰해본 21세기 안보위협의 3대 특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에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서 더 심각한 위협으로 인간에게 다가오는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탈냉전이후 국제사회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범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과거의 식민통치 지배구조를 벗어나 국가와 민족들은 독립 및 분화해온 반면 과학과 정보화에 힘입어 경제구조는 세계화 수준의 통합경향을 보이면서 높은 수준의 욕구를 분출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는 평화와 안정을 기조로 조화를 이루어낸 분야도 있으나 갈등과 대립의 구도를 형성하면서 서로 맞대결하는 분야도 다수 발생하였으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평화와 안정의 지대보다 갈등과 굴곡의 지대가 더 큰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다차원적으로 발생하는 포괄적 안보위협에 국가라는 행위자가 완벽히 대처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곳은 사각지대로 남게 되고 야욕을 가진 적대세력이 그러한 사각지대로 침입하여 도발을 일으켰을 때 국민들이 받는 충격은 예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것이다. 국가를 통치하는 각국의 정부와 국제질서를 관장하는 초국가적 국제기구들이 현명

한 대안을 찾아낼 시기가 다가오리라 기대는 하지만 현재와 같이 다차원적 안보위협이 인간을 힘들게 하고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안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과 대안을 조기에 탐색하여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하겠다.

그렇다면 앞서 제시한 안보 사각지대는 왜 발생하며 국제평화기구, 각국의 정부와 안보기관, 학자와 이론가들이 이런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가에 대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국가, 비국가, 각종 국내외 조직의 이익과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자들이 상대측에 가하는 위협의 유형과 양상이 급속하게 변화되어 왔다. 반면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변화인식이 늦었기 때문에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사실상 합당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다. 또한 이에 대처하고 있다 하더라도 분절적이고 관료적 행태에 몰입되어 있는 국력사용 방식으로 인해 가용한 능력을 적시에 통합 및 집중 투사하지 못함으로써 마주치는 위협마다 상대적 대응능력면에서 압도당하여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21세기에 다가온 안보위협의 포괄성, 다차원성, 비대칭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으로 확산되고, 관할범위의 경계선을 넘나들어 책임의 혼란을 불러오며 시간적으로도 무경고적이면서 간극이 없이 진행됨에 따라 국가나 국제 안보기구의 안보기재가 제대로 작동치 못하는데도 원인이 있을것으로 본다. 이러한 요인보다도 더 중요한 안보기재 작동부실의 원인은 안보정책의 융합성 부족에 있다고 본다. 군사적 위협에는 군사력으로 대처하고, 재난의 위협에는 소방력으로 대응하며 테러의 위협에는 치안력으로 대응한다는 분절형(分節型) 안보정책과 수단으로 대응하는 개념에 함몰되어 있는 비융합적 정책으로 일관하다 보니 노력의 집중이 곤란할 뿐 아니라 투입한 비용을 초과하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비대칭적인 21세기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투입비용 이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응개념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한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급 수준의 안보위협 대응을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정책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역할분담 방식의 정책인데 이는 사전(事前)에 유관조직별 과업을 매뉴얼 등으로 배당해 놓고 실제로 위협상황이 도래하면 중앙 통제기구의 조정

및 통제 하 각자의 역할을 기관별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대응방식은 상황의 가변성을 고려 시 융통성과 정확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으므로 완성도가 높은 대응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두 번째 유형은 여러 개의 유관 조직 중에서 주도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하고 주도기관이 실시간에 요구되는 자원을 지원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지휘체제가 일원화된 가운데 필수적인 노력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앞서 설명한 역할분담형 대응방식보다는 융통성과 통합성 발휘에 더 유리한 방식이기는 하나 지원기관의 참여태도, 준비태세수준 등이 낮을 경우는 주도기관의 단독적 대응과 다를바 없는 방식이라 하겠다. 세 번째 유형은 통합대응 방식을 또 하나의 대응개념으로 내세울 수 있다. 특정한 1개 지역이나 도계(道界)를 넘나드는 수개의 지역에 무장공비의 침투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합방위법이 정한 바에 따라 도지사가 통합방위의장이 되고 지역사령관은 군사작전을, 경찰청장은 치안유지와 작전지원을 담당하며 실시간 협조와 조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도지사가 협의를 통하여 조정권을 행사하는 통합방위 방식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민·관·군·경이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하나가 되지만 각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기역할을 수행하므로 복합이라는 방식을 취하는 일종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일의 개념은 대단히 복잡한 과업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핵심과제 위주로 단순화시켜 보면 비교적 간단명료하다. 위협을 예측하여 선제 대응함으로써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일 것이며 만약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 요소가 융합된 대응으로 피해를 없애거나 피해가 미미할 정도로 최소화시키는 것이 곧 안보위협 대처의 요체(要諦)라 할 것이다.

윤민우 교수는 그의 저서 "다차원 안보위협의 도전과 융합안보"에서 융합안보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국외실험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 첫 번째 사례는 통합적인 네트워크 중심의 접근법이다. 기존의 관료적 대처방식은 조직별 영역과 관할권의 제약으로 인해 안보기재가 순차적으로 작동되어 실기(失機)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즉 국가기구간 융합, 정부기관과 민간 전문가 및 기업들과의 융합, 부처별 담당자와 전문학자들 간의 융합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 방식으로 결합 및 소통함으로써 위기대응에 충분한 자산을 동원하고 요구되는 능력이 맞춤식으로 투사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앞서 설명한 바 있는 안보 사각지대를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식별하고 공권력을 적극 투사하는 침투 방식의 접근법이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서방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사이버 공간에서 이용 가능한 공개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교한 공정으로 분석함으로써 위협의 도래할 시간을 예측하고 담당기관들이 대응공동체를 형성하여 일사불란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종합해보면 21세기의 포괄적 다차원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협 유형별 책임기관의 전문성 심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안보의 틀을 구성하는 제요소간 융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21세기의 포괄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개념은 "융합안보"라고 할 수 있다.

Ⅴ. 융합안보시스템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앨빈 토플러는 21세기 진입을 앞두고 "인간이 갖고 있는 전쟁과 반전쟁에 관한 지식이 위험할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라고 개탄하면서 미래의 전쟁과 급변하는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통찰력이 있다면 미래지향적 예방으로 세계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Alvin Toffler, 1994:10). 산업의 물결을 넘어 정보의 물결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인간세계는 대단히 스마트하고 안락하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기간에 전쟁양상이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고, 과거와는 본질을 달리하는 다차원적 안보위협들이 지구촌 곳곳을 엄습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의 권고사항을 안보문제와 결부시켜 보자.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간 앞에 출현한 안보위협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선제적 예방과 효율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정보의 물결이 가져다주는 평화와 안정이 넘치는 사회를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명제에 기반을 두어 포괄적이며 다차원적 안보위협이 동시다발적으로 위기상황을 양산하는 오늘날의 안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달을 찾는 것이 Ⅴ章의 핵심내용이다.

1. 융합 안보시스템의 필요성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와 안보관련 국제기구들은 대단히 강력한 안보태세와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도발, 국가운영의 기반을 파괴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비전통적 위기와 재난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는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기존 안보기재의 대응방식이 당면한 다차원적 안보위협을 제어 및 관리하는데 있어서 적절치 못하여 그 효율성이 저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안보기재가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은 분절형(分節型) 대응방식을 넘어서지 못하는 안보정책에 있다. 전통적 군사위협과 비전통적 재난위협에 대처할 조직과 기구가 모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빈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보기재들의 틈새와 공간을 파고드는 다차원적,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위기발샐시 두입되는 능력과 수단이 소요에 비해 극히 부족한데 그 이유는 노력통합의 시스템이 부실하여 가용량의 절대치는 충분하나 투입되는 실효적 노력의 량은 크게 부족하고, 투입되지 못한 잔여 능력과 수단은 대부분 유휴자산으로 남게 되는 유통의 악순환 구조에 있다 세 번째 원인은 C2(Command and Control)의 부실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투입된 능력과 자산은 일사불란한 지휘계통의 통제아래 효율적으로 활용될 때 상응하는 효과를 획득할 수 있으나 C2의 작동이 미약하여 투입된 만 큼의 효율을 내지 못하고 낭비 또는 사장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안보위협 대응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해답은 융합론을 안보시스템 발전에 접목시키는 것이다. 철학이라고 불리는 한 덩어리의 지식체계가 무수히 많은 파편형 지식으로 분해되고 한 우물 깊게 파기식으로 전문화에 치중해온 근대적 탐구방식으로는 경계지대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융합론이다. 오늘날의 초국가적이며 다차원적인 안보위협은 대부분 기존 안보기재들의 경계지대(일명 회색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효율성 높은 융합적 안보기재를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 곧 새로운 대안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2. 융합적 안보시스템 창출을 위한 발전방향

융합이론이 태동된 후 실체로 구현되고 범학제적으로, 범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전문성 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학제별 연구와 시너지 작용에 의한 고효율을 추구하는 융합중심의 연구는 서로 대립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안보분야 또한 지식기반 및 구성원 네트워크와 제도를 공고하게 잘 갖춘 학제형 안보시스템과 사각구역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계를 넘나들며 소통, 수렴, 통섭하는 융합 안보시스템은 양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융합적 안보시스템 창출을 위해 융합의 프로세스에 결합되어야 할 대상을 살펴보면 ① 안보학과 융합이론, ② 안보영역내의 분야별 정책, ③ 안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비안보영역, ④ 기타 안보기재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안보학과 융합이론의 융합은 융합 안보시스템의 논리적 타당성을 담보하게 되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분야이다. 국가위기 관리의 예를 들어보면 군사적 위기관리 이론과 함께 국가기반 보호이론과 국민안전이론이 융합될 때 포괄안보시대의 위기관리론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 될 것이다(이홍기, 2013).

둘째, 안보정책간 융합은 금세기 포괄적 안보개념에 따라 이 영역에 통합된 국가방위, 국가보전, 국민보호 등 3대 분야의 관련요소들을 하나의 주제로 수렴하여 융합시키는 것이다. 또한 각 분야 내에서도 세분화되어있는 부문들의 필수요소를 융합시켜 완성도 높은 안보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일례로, 사이버전 위협에 대한 융합안보시스템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면 정보, 국방, 방송통신, 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의 필수요소들을 융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안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안보 영역과의 융합 또한 대단히 중요한 과업이다. 예를 들어 국가동원체제의 완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융합안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면 예비전력 관리, 산업자원 관리, 수송자원 관리, IT자원 관리 등 다양한 기타영역의 요인들을 결합시켜 목적에 맞도록 융합시키는 공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넷째, 기설치되어 운용중인 안보기재들 중에서도 효율성이 낮은 안보기재는 기능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다른 안보기재와 복합시키거나 융합하여 개선 또는 혁신된 기재로 창출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안보분야와 비안보분야의 기재들에 대한 융합유형을 중심으로 개념적 제안을 하는데 그치겠지만 융합안보의 이론과 실천을 위한 노력이 계속 활성화된다면 더 구체성있는 대안의 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Ⅵ. 결 론

근대이전 하나의 덩어리로 존재하던 학문과 지식체계는 20세기까지 파편식으로 분할되고 분할된 학문들이 무한정 전문화되어 가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무제한적 전문화 일변도의 학문연구는 본질과 원리를 망각할 뿐 아니라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이 양산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꼭 필요한 과업에 대해서는 융합을 통해서 해결하고자하는 기풍이 태동되었으며 이제는 범지구적 대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안보영역은 전통적 위협 위주의 안보개념에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전환된 이후 기존의 분절적 방식으로 해결 못하는 분야가 더욱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안보영역에서는 융합 안보시스템을 창출하고자하는 의지와 관심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보다 현저히 다 낫도록 개선 및 혁신시키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제 안보영역도 포괄안보시대의 위상에 실질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융합이론과 접목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안보현안들을 조속히 개선함으로써 국가목표 달성에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융합안보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할 때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덕현(2011), 융합 경영 : 세상을 움직일 컴버전스 파워 10, 글로세움.

김옥순(2009), 통섭의 학문으로서 청소년학의 가능성,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5호(2009년 6월), pp. 1-21.

박상욱(2012), 개발도상국 국가혁신시스템 성숙도 측정의 효과성 분석, 한국정책학회

새국어사전(1989), 동아출판사.

안동순(2012). 학문융합 관점에서 본 융합인재교육(STEAM)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민우, 2013.국제 테러 양상과 도시 안전망, 행정공제회, 도시문제 = Urban affairs. 통권536호(2013년 7월), pp. 17-21.

이정모(2010), 미래 융합과학기술과 인지과학의 연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홍기(2013), 국가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 방안, 대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영갑(2006) 국가위기관리론, 선학사.

지식경제부, 2010. 지식경제 R&D 혁신전략 : '융합형 R&BD'로 전환, 신성장동력 창출에 실질 기여토록,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산업 제40권 제4호 통권394호(2010년 4월), pp. 34-40.

2. 국외문헌

Edward Wilson(2005),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Abacus(4 September 2003).

Alvin Toffler(1994), War & Anti-War In 21St Century, Little, Brown(20 January 1994).

【Abstract】

Necessity and Progress Direction on Construction of Integrated Security System in Inclusive National Security Period

Lee, Hong-gi

An overview of areal activities which produce new knowledge, goods and services in order to provide advanced welfare illustrates the convergence is the general trend. The interaction between knowledge and knowledge, knowledge and human, and discipline and discipline has succeeded in creating highly efficient synergy. Such attempts proliferate over almost every fields beyond the early limited convergence.

It has been several decades since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 which includes not only the defense of a country against military threats but also the preservation of base of a nation and the safety of citizens. Also, threats on security which a nation needs to manage and address is becoming multi-dimensional with the change of various environments.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deal with simultaneous and complex threats on national security with single policy solution or technical measure. It is time to understand the need for a new approach based on the concept of convergence when developing security policies and make efforts in order to address comprehensive and multi-dimensional threats actively and efficiently.

This article aims to address such security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security policies into the most efficient alternative as time and environment change although the national goal has low changeabil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outcome of the use of convergence theory in the fields outside national security and the state of convergence in the field of security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convergence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various security policies.

In the field of national security, areas which existing segmental ways cannot address are increasing as the traditional concept of security which focuses on security threats has changed into comprehensive concept of security. We need to establish convergence security system which combines with convergence theory and improve security pending issues in blind spots in order to satisfy the status of the era of convergence security.

Key Words: Convergence, Integrated Security, Efficiency, Convergence Security System, Security Threat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 제1호(2015)
투고일 2015. 05. 04, 심사일 2015. 06. 10, 게재확정일 2015. 06. 17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연구
– 정의, 역사,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최 관

KNSPSA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연구
– 정의, 역사,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최 관*

[국문초록]

2014년 세월호 침몰사건이후, 재난관리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등)처럼, 한국도 '국민안전처'라는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하드웨어(H/W)가 갖추어졌다. 국민안전처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체계의 소프트웨어적 측면 역시 필연적으로 향상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재난관련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서 재난의 정의와 재난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서 2010년 이후부터의 재난관리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된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을 확보위한 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항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개정"과 "재난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조항개정"과 "재난 보험관련 내용의 개정"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재난, 안전관리, 정의, 역사, 문제점, 개선방안

* 한세대학교 인문사회학부 조교수(형사사법학박사: 보안 및 안전전공)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의 재난관리법
Ⅳ.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서 론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연적 그리고 사회적 재난들의 다양화 그리고 대형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국가적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서,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소방방재청 신설을 통해 국가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8차례나 개정하면서 재난관련 사고 발생 시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건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은 국가적 규모의 재난발생으로 재난대비체제에 허점을 드러냈다. 결국, 한국정부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해체하였고, 대신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다. 재난관리의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이 한국도 '국민안전처'라는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하드웨어(H/W)가 갖추어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체계의 소프트웨어적 측면 역시 필연적으로 향상시켜야하며, 우선적으로, 재난관련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서 재난의 정의와 재난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서 2010년 이후부터의 재난관리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된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을 확보위한 차원에서 재난관리법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Ⅱ. 이론적 배경

1. 재난의 정의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김석곤, 2005). 첫째, 자연재난과 관련된 재난의 정의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에 근거하면 자연재해에 대하여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라고 정의되고 있다(표 1 참조). 그 중에서도 자연재난은 발생하였을 경우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지역으로 분산되어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으며 위험성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다(표 2 참조).

<표 1> 자연재난의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

종류	주 의 보	경 보
강풍	육상 풍속 14m/s 이상, 순간풍속 20m/s 이상 예상.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	육상풍속 21m/s 이상, 순간풍속 26m/s이산 예상. 다만, 산지풍속 24m/s 이상, 순간풍속 30m/s 이상 예상
한파	10월~4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등	10월~4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등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강풍(또는 풍랑)예상될 경우, 총 강수량이 200mm이상 예상될 경우, 폭풍해일 예상

종류	주 의 보	경 보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4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6월~9월에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소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6월~9월에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소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호우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 될 때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 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 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 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 이하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경우	실효습도 25% 이하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출처: 김은유·윤홍식(2014) 재구성.

<표 2> 자연재난의 위험 및 특성

특 성	형 태
복합성	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 증가 – 예보를 통해서 예상할 수는 있으나 어떤 지역의 집중호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 – 특정지역 침수 및 수난사고 등 예상대응 한계점
광역성	대응지역이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는 경향 – 집중호우지역은 수개의 시·군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나타남 – 인접 시도의 긴급대응기관의 자원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위험성	수난구조중심활동이 요구됨 – 계곡·하천, 관광야영지, 등산객, 낚시꾼에 대한 형황파악 및 사전 대피유도활동 – 고립된 지역에 대한 인명구조 및 침수지역 배수지원, 강풍지역낙하물 제거. – 수난구조 시 필요장비 활동 등 사전안전조치

※ 출처: 서울특별시(2014) 제구성

둘째,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를 살펴보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되고 있다(신상영, 2012). 사회재난은 재난현장의 인명구조, 구급, 구호에 관한 규정과 절차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응급대책, 긴급구조에 관한 대응절차를 우선 적용한다(이진우, 2013).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선박침몰, 난파 등 수난사고의 경우에는 『수난 구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른

다. 감염, 전염병의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른다. 에너지, 통신 등 수개의 개별법애서 규정한 절차를 따른다. 인명피해를 동반한 복합재난, 재해의 경우 재난현장의 인명구조, 구급, 구호에 관한 규정과 절차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규정에 따라 응급대책, 긴급구조에 관한 대응절차를 우선 적용하고 세부 대응사항은『소방기본법』및『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규정과 절차에 근거하고 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결론적으로, 사회재난의 경우 인위적 측면에서 시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과 국가에 주는 일정 이상의 피해로 정의할 수 있다(여차민, 2007). 이는 동일한 선상에서 테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2001년 9.11 테러사건과 2005년 런던테러사건, 2013년 보스턴 폭발 테러 등의 경우 특정되지 않은 대상을 향해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사건으로 인명피해, 재산피해, 사회적 혼란 등을 야기하였다는 공통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주강원, 2014; 9/11 Commission, 2004). 이는 사회재난에 대한 개념정의에 의하면 폭발, 붕괴 등은 사회재난에 속하는 재난으로 테러 사건 역시 사회재난에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인간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협적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다음 <표 3>와 같이 예측 및 통제가능성, 영향의 지속성 등 특성에 있어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 및 사회재난은 서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표 3>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의 비교

특성	자연재난	사회재난
발생과정	돌발적이다	돌발적이다
충격정도	강력하다	강력하다
피해 가시성	보통 가시성으로 환경의 손상초래	가시적으로 피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존재
예측 가능성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 어느 정도의 경고 기능	분명한 전환점이 존재할 수고 있으나, 유독물질 사고의 경우 시간경과에 따라 상황이 호전되자 않는 수 있음
상환 전환점	보통 식별 가능한 분명한 전환점이 존재, 이 시점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황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음	분명한 전환점이 존재할 수고 있으나, 유독물질 사고의 경우 시간경과에 따라 상황이 호전되자 않는 수 있음
통제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

특성	자연재난	사회재난
영향	보통재난의 희생자의 국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영향
영향 지속성	비교적 단기적 지속	단기간 또는 장기적 지속 화학사고의 경우 장기적 영향

※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5) 재구성.

2. 재난관리의 의미

재난관리는 여러 가지 재난적 요소에 대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리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고 능동적이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정상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난관리는 크게 두 가지(광의 그리고 협의)의 재난관리로 구분 가능하다(하규만, 2011; 장시성, 2009).

광의의 재난관리라 함은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등의 4가지 단계들이 순차적으로 총체적 관리를 위해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예방단계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재난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며, 해당 재난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경우 재난 피해를 완화시키는 단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Garrett & Sobel, 2003; Janssen et al., 2006; 안영훈외, 2008). 대비단계는 재난상황에 대한 예방단계를 충실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였을 경우, 재난 상황 발생 후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운영적인 준비 장치들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대응단계는 이미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해당 재난상황 확대의 방지를 통해 순조롭게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복구단계는 해당 재난상황이 안정된 후 재난상황으로 발생한 피해를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시키는데 주력하는 활동이다. 복구단계의 경우, 해당 지역의 피해주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피해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 등의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Garrett & Sobel, 2003).

협의의 재난관리는 재난이 발생한 후 해당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혼잡한 상

황 등에 대해서 질서유지 활동을 하고 재난피해복구를 실시하는 과정으로서 일상적 비상대응기관들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대처기관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체계적인 사고지휘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인명 그리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칭한다. 결론적으로 광의의 재난관리 과정 중 긴급관리의 특징을 갖는 대응단계 및 단기적 복구단계를 일반적으로 협의의 재난관리라 규정할 수 있다(Grant, 2010).

이러한 재난을 관리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재난의 종류에 기초하여 각 부처별로 분산하여 관리하는 유형별 관리방식과 통합된 하나의 기관을 설립하여 모든 재난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 등이 있다(김진원, 2012).

분산형 옹호론적 관점에 기초한 유형별 관리방식은 전통적 재난관리제도에서 유형별 재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30년대 전통조직이론과 함께 합리성을 목표로 하는 재난관리조직이 전문화의 원리를 추구하는 행정 이론적 환경과 일치하는 시기에 탄생하였다(김진원, 2012). 이 관리방식은 지진, 수해, 유독물, 설해, 화재 등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송창영, 2013). 그러므로 재난종류별 계획뿐만 아니라 대응책임기관 역시 각각 다르게 배정되어 있다. 해당 관리방식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유사기관간의 중복 및 과잉대응의 문제점들을 야기하였고, 조잡하고 의미가 없는 계획서의 과잉생산과 다수기관간의 조정, 통제의 어려움과 반복의 문제점 야기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Mendonca, 2007).

해당 유형별 관리문제점 보완을 위해 탄생한 것이 통합관리방식이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EMA) 설립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된 통합관리방식은 재난관리의 전체과정이라 지칭되는 과정 수위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을 종합 관리하는 것으로서, 모든 재난은 피해범위, 대응지원, 대응방식에 있어 유사하다는 이론적 근거에 기초한다(Harvard University, 2014; 송창영, 2013). 이는 물론 모든 지원을 통합관리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난대응에 필요한 대응기능별 책임기관을 지정하여 유사시 참가기관들을 조정하고 통제한다는 조정적 의미가 더욱 강하다(소방방재청, 2008). 재난관리조직이 통합되면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관리과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지휘 계통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는 현장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난관련조직의 통합이 조직 내 권한의 위임이나 신축적이고 유기적인 내부조직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통합할 수 없는 민간단체와 같은 유관기관

과의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유형별 관리방식과 통합관리방식 간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재난관리 방식별 장·단점 비교

유형	유형별 관리방식	통합관리방식
성격	분산관리방식	통합적 관리방식
관련부처 및 기관	다수 부처 및 기관의 단순병렬	단일부처 조정하의 병렬적 다수부처 및 기관
책임범위와 부담	소관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 부담분산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 과도한 부담 가능성
정보 전달체계	특정 재난에 대한 관리활동	모든 재난에 대한 종합적 관리활동과 독립적 활동의 병행
재난대응	대응조직 없음 (사실상 소방)	통합대응/지휘통제 용이 (소방)
재난에 대한 인지능력	미약, 단편적	강력, 종합적
장점	– 한 재해유형을 한 부처가 지속적으로 담당하므로 경험축적 및 전문성 제고가 용이 – 한 사안에 대한 업무의 과다 방지	– 재난발생 시 총괄적 자원동원과 신속한 대응성 확보 – 자원봉사자 등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단점	– 복잡한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에 한계 – 각 부처 간 업무의 중복 및 연계 미흡 – 재원마련과 배분의 복잡성	–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름 – 부처이기주의 및 기존 조직들의 반대가능성이 높고 업무와 책임이 과도하게 한 조직에 집중

상기의 재난관리방식에 따라 재난 발생 및 예견 시 대응방침과 절차는 긴급구조기관의 초동대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경우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응기관은 소방본부 및 일선소방서이다. 일선 소방서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상황을 분석, 재난 규모, 대응능력에 따라 단계별 대응조치를 시작하며, 일상적 소규모사고 등 단순한 사고인 경우 소방 또는 소방과 경찰의 협조를 통해 대응하며,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재난관리의 방식들은 기본적으로 재난관리법제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헌법 제34조 6항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

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기타 재난법령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Ⅲ. 한국의 재난관리법 : 2010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법체계는 한국전쟁 이후 크게 4단계(시작, 분화, 통합 체계화단계 등)를 거쳐 왔다. 시작단계의 경우 한국전쟁 후 1970년대에는 전쟁의 피해로 인한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민방위기본법 등의 정비에 치중하였던 시기이다.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로 구분되는 분화단계는 자연재난 및 인위재난과 관련된 농어업 재해대책법, 도로법, 철도법, 건축법 등 개별 법령들이 정비되는 시기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통합단계는 여러 가지 재난상황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하여 다양한 법률들이 통합시도 되는 시기이다. 구체적으로,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인적재난의 경우에는 재난관리법으로 통합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2000년 이후, 체계화 단계로서 재난의 특성에 근거하여 더욱더 통합적인 관련 법령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과 관련된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만들어졌으며, 마지막으로 2013년 개정을 통한 재난관련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김은유외, 201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2010년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다(제34조 3항). 기존의 재난대응방식에 기초할 경우 여러 유형의 사건사고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대형 재난의 발생원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법은 2012년에 다시 한 번 개정을 하게 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종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제71조 2항). 본 조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안전을 실현하고 재난 및 재해 기술혁신을 재고하기 위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맞춤형 기술개발을 기반으로 하여 재난피해를 줄이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면 재난관리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 등이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해당 직무상 습득하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발설 혹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2013년에 다시 일부 개정이 되는데,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법 개정의 주 내용은 안전관리와 관련된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제12조 2항). 그리고 대규모의 재난상황을 출현하였을 경우 중앙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민간인 자율방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주강원, 2014).

또한 재난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항 역시 신설되었다. 이는 지역사회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재난문제에 대한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 그리고 홍보 등의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사회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소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학교 등 안전문제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66조 2항과 5항). 안전교육 전문 인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양성 및 교육훈련, 경력관리와 해당 자격인증에 관한 규정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제66조 6항). 또한, 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국민안전처장 또는 시장 및 도지사가 지역축제 안정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 및 점검하도록 하였다.

Ⅳ.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상기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과정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재난관리조직은 대형재난 사고가 있을 때마다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국가차원의 관심과 투자는 미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월호사건과 같은 대형 재난상황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인 분석 및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난상황관리의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항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개정의 필요성이다. 일반적인 재난현장에서 재난지역의 지역주민들과 또한 민간재난전문가들의 도움은 재난상황 관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세월호사건의 역시 주변 어선들의 발 빠른 구조 참여가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실종자 수색을 위한 민간잠수부들 역시 재난상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경우 중앙과 지역별로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등으로 단순히 규정되어 있다. 그 역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항을 소위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난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재난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정확한 보도가 필수적이다. 또한 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재난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는 정보제공자면서 동시에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피해 대책 및 복구, 진행상황)를 필수적이다. 세월호사건 당시 신속한 보도만을 추구한 나머지 소위 '사망자가 없다'라는 보도가 초기에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확인 없는 신속한 보도는 음모론 혹은 피해자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와 같은 2차 피해를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국가적 재난발생 시 정확한 보도 수칙을 정하고 관리 및 감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현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2조의 재난방송협의회 조항과 관련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경보, 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와 "정확한 보도수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난 보험관련 내용의 개정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76조 재난 관련 보험 등의 개발 및 보급조항을 살펴보면 "국가는 국민과 지압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잇도록 재난 관련 보험. 공제를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우 2006년에 이전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의 경우, 국가에서 55-62% 보험료를 부담해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강제규정을 둠으로써 보험을 통해 개인과 국가의 피해부담을 줄

이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76조 역시,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보다는 의무적인 가입을 통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상기의 세 가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재난관리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하고 지역사회 시민 개개인들의 행복한 삶이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대명제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상황이 발생하지 않아도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 역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석곤(2005).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의 자원보유인식과 협력에 관한 연구 : 소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은유·윤홍식(2014). 재난안전 방재법규. 서울: 한국법학교육원.

김진원(2012). 재난관리론. 파주: 동화기술.

서울특별시(2014). 2014년 긴급구조대응계획. 서울: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2008). 방재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 서울: 소방방재청.

송창영(2013). 재난안전 이론과 실무. 파주: 예문사.

신상영(2012).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만들기 구현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여차민(2007).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분석적 연구 : 행태, 체계, 그리고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진우(2013). 재난관리체계와 협력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경상북도 소방기관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영훈, 박해육(2008). 주요 선진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비교연구. 서울: 행정안전부 연구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5). 자연재난과 방재시스템.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장시성(2009). 한국의 재난관리체제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주강원(2014) 재난과 재난법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15(2): 415-440

하규만(2011). "한국의 재난대응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5(1): 209-232

2. 국외문헌

Grant, M.(2010). After the Bomb: Civil Defence and Nuclear War in Britain. 1945-68.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Harvard University(2014). EH&S Guidelines for Design. MA: Harvard University.

9/11 Commission (2004).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 official government: http://www.gpoaccess.gov/911/

Janssen, M., Gortmaker, J., & Wagenaar, R. W. (2006). "Web service orchestr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challenges, roles and growth stages".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23(2): 44-55

Mendonca, D. (2007). "Decision support for improvisation in response to extreme events: learning from the response to the 2001 World Trade Center attack". Decision Support Systems. 43(3): 952-967

Garrett, T. A. and Sobel, R. S. (2003). "The Political Economy of FEMA Disaster Payments". Economic Inquiry. 41(3): 496-509.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Disaster and Security Management Act for Civil Safety: Focus on the Definition, History, Problem, and Improvement

Choi, Kwan

The aim of present study is to explore in terms of problems of "Korean Disaster and Security Management Act" and its improvement for safety of community individuals. This present paper consists of four parts including a definition, history, problem, and improvement to better understand in terms of the "Korean Disaster and Security Management Act". Section two highlights the definition of disaster and disaster management. This part is to provides some knowledges regarding disasters which are the Korean disasters and its management systems. Nest section points out how "Korean Disaster and Security Management Act" develops and changes to deal with some serious disaster situations in South Korea. In 2015, especially,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as established in order to handle all sorts of disasters because of Sewol ferry tragedy. The fundamental reform on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now performed by the "Korean Disaster and Security Management Act". Final section is to analyse and argues the key problem the "Korean Disaster and Security Management Act" and its improvement for national security against serious disaster such as Sewol ferry.

To be conclude, present study highlights three key points for improving and developing the "Korean Disaster and Security Management Act" to prevent and control some serious disaster situations. First is a development of committee of public and private for safety management. Second is an improvement of media part for clear reports for public. Three is an development of disaster

insurance. It will be supported to prevent and control some disaster situations such as a Sewol Ferry event for public safety by the “Korean Disaster and Security Management Act”.

Key Words: Disaster, Security Management, Definition, History, Problem, Improvement

부 록

-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 투고 · 심사 및 발행규정 ····· 141
- 논문집필요령 ····· 147
-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162
-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연구윤리 규정 ····· 168
-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표절 규정 ····· 186
- 논문투고 일정 ····· 187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투고·심사 및 발행규정

2014. 12. 22 제정

제1조 【목적 및 주관】

①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인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영문으로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journal 이하 '학회지')의 발간에 있어서 원고의 투고, 심사, 편집과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2조 【원고모집】

①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명칭은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영문으로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journal 이하 '학회지')라 하고 원고모집은 발간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공고하여 실시한다.

② 원고모집과 집필요령 등은 학회홈페이지나 학회지 등의 적정한 방식을 통해 회원들이 공지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

제3조 【게재논문의 성격 및 범위】

①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회칙상의 연구범위로 규정된 "1. 안보, 안전, 치안, 범죄, 경호, 경비, 소방, 보안, 테러 분야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안보, 안전, 치안, 범죄, 경호, 경비, 소방, 보안, 테러분야와 밀접히 관련되는 분야이면서 영역에 속하지 않을 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써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논문집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③ 학술세미나, 학술발표회, 각종 포럼, 인터넷 등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은 게재출처를 밝히고,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자격 및 접수】

① 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복수의 투고자일 경우 투고자 모두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논문 투고 시 단독저자 1편, 공동저자 1편으로 총 2편으로 편수가 제한되며, 투고된 논문은 학회에 소속되며 연구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③ 접수 마감일은 매회 동일하며 논문 투고 후 심사료를 납부한 날로 한다. 접수 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다음호로 연기된다.

④ 온라인으로 논문 원본 파일을 논문게재신청서 및 저작권이양동의서와 함께 제출하면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접수한다. 투고자의 소속이 외국 소재일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고는 본 학회 “논문집필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투고자에게 수정·보완을 위해 투고자에게 반려한다(단, 이 경우 반환된 논문이 다시 제출된 날을 논문 접수일로 한다.).

⑥ 긴급논문투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5조 【학회지 발행일】

① 학회지의 발행은 연2회 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6조 【게재예정증명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후에 제출자의 요청에 한하여 발행한다.

제7조 【인쇄와 발송】

위원장은 편집방향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발송 절차를 밟는다.

제8조 【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회지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기 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관례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1. 논문제목:
2. 게재예정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 제00호(2000년 0월 00일 발행예정)
3. 세부심사결과(해당란에 O표하고 점수란에 점수 기재)

등급기준 / 점수 / 평가기준	매우 미흡	다소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0 ~ 4	5 ~ 8	9 ~ 12	13~16	17~20	
① 연구목적의 적절성과 명료성						
② 연구 방법의 적절성						
③ 내용 전개의 논리성						
④ 연구 내용의 독창성						
⑤ 학문적 기여도와 유용성						
총점 [/100] 점						

※ 각 평가기준별 '다소 미흡' 이하가 2개 이상인 경우 게재불가

4. 종합판정(총점을 근거하여 판정)

구분 (점수)	게재 확정 (91-100)	수정후 게재 (81-90)	수정후 재심사 (71-80)	게재불가 (0 ~ 70)
해당란에 ○표시				

5. 심사위원 인적 사항
   - 소속/직위:
   - 성명:
   - 계좌번호: ( )은행 0000-000-00000 / 예금주 ○○○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위원장 귀하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논문심사소견 및 수정의견

<table>
<tr><td>논문제목</td><td colspan="8"></td></tr>
<tr><td>심사결과</td><td>게재
확정</td><td></td><td>수정후
게재</td><td></td><td>수정후
재심사</td><td></td><td>게재
불가</td><td></td></tr>
<tr><td>심사소견
및
수정의견</td><td colspan="8"></td></tr>
</table>

[별첨 2]

학회지 발간 절차 및 처리기간

(※ 총 처리 누적기간: 70일 이내)

절 차	처리기간	누적처리기간
원고심사배정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		
심 사 의 뢰	송부기간 5일	접수마감 후 14일 이내
⇩		
심 사	심사기간 2주일	
⇩		
심사결과접수	회송기간 5일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
⇩		
게재여부결정	3일	접수마감 후 33일 이내
⇩		
1차수정지시	7일	접수마감 후 40일 이내
⇩		
수정원고접수	7일	접수마감 후 55일 이내
⇩		
2차수정지시	3일	접수마감 후 60일 이내
⇩		
수정원고접수	3일	접수마감 후 67일 이내

※ 2차 수정지시가 없는 경우 바로 발간절차 진행

논문집필요령

Ⅰ. 논문형식

1. 논문의 틀

1) 원고는 제목, 저자, 목차(장만 표기), 국문요약(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키워드 포함)의 순으로 구성한다.
2)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영문), 저자이름(국문·영문),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전화, E-mail 주소 등을 명기하여 첨부한다.
3) 원고 작성은 한글프로그램(1997버전 이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편집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원고의 작성은 A4 용지를 사용하며, 폭: 184mm, 길이: 265mm, 용지 방향: 좁게, 제책: 한쪽(1)으로 한다.
   (2) 여백의 크기는 위: 35.0mm, 아래: 20.0mm, 왼쪽: 33.5mm, 오른쪽: 33.5mm, 머리말: 15.0mm, 꼬리말: 13.0mm, 제본: 0.0mm로 한다.
4) 국문 원고의 분량은 A4 용지 20매로 하며, 영문 원고는 국문 원고에 준한다. 20매를 원칙으로 하되, 25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게재료를 납부하어야 한다.
5) 원고의 편집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아래 논문의 요소별 편집에 따른다.

2. 논문의 요소별 편집

1) 논문의 제목
   (1) 글자체는 진한 고딕체(15.0pt)로 지면 가운데 작성한다.
   (2) 논문제목의 부제를 달 경우에는 앞의 글자에 콜론을 붙여서 쓰되, 뒷 글자와는 한 칸을 띄우고 사용한다.
2) 저자명과 소속
   (1) 저자명은 제목 아래 고딕체(11.0pt)로 기술하며 지면의 오른쪽에 위

치시킨다. 저자가 복수인 경우 이름간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한다.

(2) 저자명 뒤에는 '*' 표시를 하여 동일한 지면 하단에 저자의 소속의 각주 형태(신명조체, 9.0pt)로 제시한다. 저자가 복수인 경우 저자의 순서대로 '*' 표시(두 번째 저자명 뒤 '**' 표시, 세 번째 저자명 뒤 '***' 표시)를 한다.

(3) 저자가 복수인 경우 연구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제1저자를 가장 먼저 제시하며 그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 차례대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순).

3) 요약 및 주제어

(1) 저자명에서 한 줄 간격을 두고 '국문초록'이라는 제목을 가운데 신명조체(13.0pt)로 작성하여 괄호([ ]) 안에 위치시킨다.

(2) 요약의 내용은 논문의 내용을 압축하여 신명조체(10.0pt)로 150단어(600자) 안팎의 길이로 작성한다.

(3) 국문초록의 첫머리에는 들여쓰기를 한다.

(4) 주제어는 고딕체(10.0pt)로 요약내용과 한 줄 간격을 띄워 작성한다.

(5) 국·영문 요약 주제어(Key Words)는 각각 5개 이상 작성한다.

4) 목차

(1) 목차는 저자명 아래 위치시키며, 도표를 작성하여 기술한다.

(2) '목 차'라는 제목을 가운데 고딕체(11.0pt)로 작성하다.

(3) 목차의 내용은 로마 목차만을 신명조체(10.0pt)로 기술하며 들여쓰기를 한다.

5) 본문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I(고딕체, 14.0pt), 1(고딕체, 12.0pt), 1)(고딕체, 11.0pt), (1)(고딕체, 11.0pt), ①(고딕체, 11.0pt), 가)(고딕체, 11.0pt)의 순서를 따른다.

(2) 본문의 내용은 신명조체(10.0pt)로 작성하며 초록의 주요어로부터 페이지를 넘겨 기술하고 들여쓰기를 한다.

6) 참고문헌

참고문헌을 제시할 때는 '참 고 문 헌'이라는 제목을 문단 가운데 고딕체(14.0pt)로 제시하고 참고문헌 내용을 기술한다.

7) 영문 요약과 주제어

(1) 참고문헌을 제시한 뒤에는 영문으로 'ABSTRACT'이라는 제목을 문단 가운데 신명조체(13.0pt)로 제시하고 영문 제목(휴먼명조체, 13pt, 진하게), 저자명(고딕체, 10.0pt), 영문 요약 내용(신명조체, 10.0pt), 주제어(고딕체, 10.0pt)의 순으로 기술한다.

(2) 작성 요령은 국문 초록의 작성 요령과 같다.

8)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9) 논문의 요소별 편집과 관련된 자세한 양식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논문 양식'을 참고한다.

Ⅱ. 본문에서의 참고 및 인용

1. 일반 문헌의 경우

1) 단독 저자의 연구가 하나만 인용되었을 경우

- 국내 문헌의 경우 성명과 출판연도를 본문 내에 기입한다.

  예) 홍길동(2014)은 국가안보란…

- 외국 이름의 경우 동양 저자의 경우에는 우리말식 음독을 쓰고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하고, 서양 저자는 영어로 성만 표기하고 동양 저자의 이름이라도 영문으로 표기된 연구를 인용했을 때는 저자의 성만 표기한다.

  예) 모리야마 타다시(守山 正, 2012)은…

  Moriyama(1999)는…

(1) 인용문헌을 괄호 안에 표기하기

- 저자의 이름이 본문 중에 나오지 않을 경우 문장 끝에 성명과 출판연도를 제시한다.

  예) …라고 주장하였다(홍길동, 2013).

  …이기 때문이다(Samuel, 2013).

(2) 문헌의 부분 인용

- 저자명을 본문 중에 언급하지 않고 저자의 특정 자료 중 일부를

인용할 때 인용한 특정 자료와 출판 연도를 구분하기 위해 출판연도 뒤에 자료를 제시한다.

예) …을 밝혀냈다(홍길동, 김길동, 2010: 표 1 참조).

…을 밝혀냈다(Adams, Smith, & Harrison, 1999: 표 1 참조).

(3) 본문 중에 저자명과 출판연도가 모두 쓰였을 경우

예) 1970년 Bruden은…

(4) 한 단락에서 같은 연구가 반복된 인용된 경우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같은 참고 문헌의 출판년도는 반복해서 표기할 필요가 없다.

예) Sigmund(2009)은 …라고 주장했다. 또한 Sigmund은 …라고 하였다.

2) 여러 저자들이 수행한 연구를 인용하였을 경우

(1) 저자 두 명이 함께 수행한 연구

- 두 저자명을 '와(과)'로 연결하여 두 저자명을 모두 제시
- 본문 중에 저자명이 언급되지 않고 문장 끝 괄호 안으로 처리했을 때 한국문헌과 동양문헌의 저자명은 쉼표로 구분하고, 서양문헌의 경우 '&'를 사용한다.

예) 홍길동과 김길동(2011)는…

Steven와 Trueman(1998)는…

…라고 주장하였다(홍길동, 김길동, 2011; Steven & Trueman, 1995).

(2) 셋 이상 여섯 명 미만의 저자가 수행한 연구

- 처음 인용할 때는 모든 연구자의 성명을 표시하되, 각 이름은 쉼표로 구분하고 서양문헌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열거되는 저자명 앞에 '&'를 삽입한다.
- 두 번째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명만 적고 공동 저자명은 생략하고 "등" 혹은 "외"로 표시한다.

예) [첫 인용]

…을 분석한 연구에서는(김길동, 홍길동, 이길동, 2005)…

Stevens, Green, Taylor와 Guanberg(2010) 등은…

예) [같은 연구일 경우, 두 번째 인용]

김길동 등(2008)의 연구 결과…

Stevens 등(2010)은…

(3) 여섯 명 이상의 공동 저자의 문헌을 인용

- 처음 인용 때부터 첫 저자명만 쓰고 첫 저자명 다음에 “등” 혹은 “외”라고 표기한다.
- 다만 6인 이상의 연구에 첫 번째 저자명이 동일한 다른 문헌이 인용되어 서로 다른 문헌임을 구분해야 할 경우 두 문헌을 구별하는데 필요한 만큼까지 뒤에 따르는 저자명을 표기한 다음 “등” 혹은 “외”라고 표기한다.

예) 김길동, 홍길동 등(2008)의 주장처럼…

예) 최근의 연구(김길동, 홍길동 외, 2012)에서…

예) Kants 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예) 최근의 연구(Kants et al., 2009)에 의하면…

3) 동명 저자에 의한 복수 연구물의 경우

- 동명 저자(들)의 서로 다른 연구가 본문에 포함될 경우 저자명 뒤 표기된 출판연도로 별개 연구임을 구별한다.
- 서양 문헌의 경우 혼동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저자의 성 앞에 머리글자를 기입할 수 있다.

예) 김길동(1998)과 홍길동 외(2000)의 연구에서…

예) 김길동 등(2000)과 홍길동 등(2002)의 연구에서…

예) C. S. Louis(2011)와 G. A. Center(2009)의 연구에서…

4) 저자가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 기관명을 저자명으로 취급하고 완전한 기관명을 밝힌다.
- 기관이나 단체명을 축약어로 표기해도 누구나 알 수 있을 때에는 두 번째 인용부터 축약어로 표기해도 된다.

예) [본문에서 인용할 때]

최근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에 의하면…

외국의 연구(American Society for National Security, 2012)에 의하면…

예) [두번째 인용부터 축약어를 사용할 때]

형정원의(201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국 연구(TIIC, 2014)에 의하면…

5) 저자가 없거나 익명인 경우

- 연구자가 없는 연구를 인용할 경우 저자명 대신 연구를 지칭할 수 있는 두세 단어(보통은 제목의 시작부분)를 저자명으로 취급한다.

예) "한국 국가안보의 태동"(익명, 1980)에서…

"*Private Security*"(anonymous, 1990)에서는…

예) …라고 해석하였다("한국 국가안보의 태동"(익명), 1980).

…라는 주장("*National Security*"(anonymous), 1990)에서는…

- 판례나 법령과 같은 법률 자료도 저자가 없는 인용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법령의 이름이나, 판례의 표기방식에 따라 표기하고 연도를 기록한다.

예) 국가안전보장회의법(법률 제12224호, 2014.01.10)에서…

6) 개인 서신

- 편지나 메모, 전화, 전자우편이나 전자매체를 통한 대화가 인용의 출처일 경우를 말한다.
- 개인적 서신은 재사용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전자매체(electronic media)로부터 얻은 정보와 같이 재생 가능한 정보의 출처는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한다.

예) (홍길동 2012, 9, 13, 개인 서신)

(Taylor, 2007, 4, 22, personal communication)

2. 재인용, 번역서, 및 부분인용

1) 재인용

- 다른 연구의 인용 방법과 같으나, 본문에 인용할 때는 원전(저저명과 출판년도)과 재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
- 저자명이 본문에 제시될 경우 원전의 출판연도 뒤에 콜론을 한 후 재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

예) 홍길동(2008: 김길동, 2005에서 재인용)은…

…을 제시하였다(Steven, 2008: 김길동, 2007: 174에서 재인용).

…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Louis, 1977: Kants, 1976에서 재인용).

2) 번역서

- 원전의 저자명을 적고 쉼표를 한 후 원전의 출판연도와 번역서의 출판연도를 빗금(/)으로 구분하여 나란히 제시한다.

  예) 국가안보 인식개선방법에 대하여 Kalman(1988/2011)은…

  …라고 하였다(Kalman, 1988/2011).

3) 문헌의 특정 부분을 직접 인용한 경우

- 다른 문헌의 특정 부분을 그대로 삽입할 때는 인용 출처의 쪽수 혹은 장(章)을 표시한다.
- 장(章)은 '장'(혹은 'chap.')로 표기하고, 쪽수는 연도 다음 콜론(:) 표시를 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학술지 권수는 축약어 Vol,로 표기하고 권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다만, 원전 제목 속에 로마 숫자로 사용된 경우 그대로 사용한다.

  예) (홍길동, 2012: 2장)

  (김길동, 2009: 15)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 Vol. 4: 44-52)

  (Kai, 2012: chap. 4)

  (Lion & Rush, 1996: 234)

3. 한 괄호 안에 두 편 이상의 연구를 인용했을 경우의 표기 순서

1) 동일 저자의 연구

- 출판연도 순으로 오래된 것부터 배열한다. 이 때 저자명은 한번만 기입하고 출판연도만 기입하면 된다.
- 출판연도까지 동일한 경우 제목의 가나다라 순서로(영문의 경우 알파벳 순서) 출판연도 뒤에 소문자 a, b, c를 붙여 구분한다.

  예) 선행 연구들(홍길동, 2005, 2011)에서…

  선행 연구들(Paker & Rowl, 1998, 2001)에서…

  최근 연구(홍길동, 2008a, 2008b)에서는…

2) 동일인이 아닌 경우

- 저자명의 가나다라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쓰고 연구와 연구 사이에 세미콜론을 찍어 구분한다.
- 다른 연구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한 연구에서 주로 인용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고자 할 때 맨 앞에 주된 문헌을 인용하고 “또한’’이란 용어로 부수적인 문헌을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예) 여러 연구(홍길동, 2011; 김길동, 2012)에서는…

여러 연구자(Rawl, 2011; Steven, 2008; Troy, 2010)들은…

…라고 주장하였다(Hans, 2005; 또한 Harryson, 2008; John, 2010)

3) 국내와 동서양 문헌이 모두 포함된 경우

- 국내문헌, 동양문헌(국가명의 알파벳 순), 서양문헌의 저자순으로 나열한다.

Ⅲ. 참고문헌

1. 참고 문헌 제시 순서

- 참고문헌의 제시 순서는 표기 언어를 기준으로 한국어 출판물을 먼저 제시하고 외국 출판물을 제시한다.
- 외국 출판물은 동양 문헌(알파벳 순) 다음 서양 문헌 순서로 제시한다.

2. 참고 문헌 표기

- 참고문헌 목록에는 제일 먼저 저자명을 적고 한 칸 띄우고, 괄호 안에 출판연도를 쓴 후 마침표를 한다. 저서의 경우는 한 칸 띄운 다음 책이름(고딕체, 영문은 이탤릭체)을 적고 마침표를 하고서 출판 장소와 출판사를 콜론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 학술지 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출판연도, 연구제목, 학술지명, 게재권(호), 쪽수를 적는다. 학술지명과 게재권(호)는 중고딕체(영문은 이탤릭체)로 적는다.
- 참고문헌이 두 줄 이상이 되는 경우, 두 번째 줄부터는 네 칸 들여쓰기를 한다.

예) 홍길동 (2014). 국가안보론. 서울: 진영사.

Paul, M. D., & Kal, C. A. (1999). *Introduction to National security*, New York

: West Publishing.

김길동 (2010). 안전관리사 역할에 대한 의식조사.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

Michael, D. R., & Jinhong, Z. (1999). The determinanats of job satisfaction among united states air force security police.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19(3)*, 5-18.

1) 저자명

(1) 일반적인 표기 순서

- 국내문헌은 완전한 성명으로 성과 이름을 띄어 쓰지 않는다(외자 이름도 동일). 외국문헌의 경우, 동양문헌은 원어 그대로 표기하며 서양문헌은 연구자의 성을 적고 쉼표를 한 다음 첫 글자만 대문자로 적고 생략 표시의 마침표를 찍는다.
- 국내문헌은 가나다 순서대로 제시하고, 같은 자음일 경우, 모음 순서를 비교하고 모음도 같은 경우 받침의 자음 순(국어사전 항목순)으로 제시한다. 글자가 먼저 끝나는 경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글자가 계속되는 것보다 앞에 둔다.
- 영어문헌의 경우 첫 저자 성의 알파벳 순서대로 제시하고 저자명에 포함된 글자 하나의 알파벳 순서를 비교하여 순서를 매긴다.

(2) 맨 앞에 제시되는 저자명이 같은 경우

- 동일한 저자명의 연구는 단독 연구이건 공동 연구이건 출판연도순으로 출판연도가 빠른 것을 앞에 배열한다.
- 맨 앞 저자의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가 모두 참고 문헌 목록에 포함될 경우, 단독 연구자 성명이 짧기 때문에 공동 연구보다 앞에 배열된다.

(3) 출판 연도까지 동일한 저자의 연구

- 제목의 가나다(영어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단 A나 The와 같은 관사는 제외시키고 제목의 알파벳을 비교한다.
- 소문자 a, b, c 등을 표기하고 순서대로 제시한다.

예) 홍길동 (2009a), 국가안보…
홍길동 (2009b), 국민안전…

예) Steve, G. T. (1988a). Origins…
Steve, G. T. (1988b). Risk…

(4) 단체나 기관명의 연구

- 연구 단체나 기관명의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되 기관이나 단체의 완전한 이름을 쓴다.

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2014, 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
60년사. 서울: 백산출판사.

(5) 익명의 연구나 저자가 없는 경우

- 본문에서 인용한 연구 제목의 두세 단어를 저자명과 같이 취급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제시하고 괄호 안에 익명(영문 Anonymous)이라고 표기한 후 쉼표를 찍고 출판연도를 적는다.
- 저자가 없는 경우도 연구의 제목을 저자명으로 취급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예) 국가안보의 태동은 (익명, 1955). 안보의 태동. 서울: 백산출판사.

예) National Security (Anonymous, 1955), *Introduction to security*, Boston: Butterworth.

2) 출판연도

- 저자명 바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괄호를 쳐서 써넣고 괄호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1) 미출판 된 연구가 인쇄 중일 경우는 괄호 안에 “인쇄중”이라고 표기하고 해당 저자의 맨 마지막 연구로 취급한다.

(2) 현재 심사 중이어서 출판이 확실치 않는 경우 괄호 안에 “심사중”이라고 표기하고 심사 중인 정기 간행물명을 밝힌다.

예) 김길동 (심사중). 국민안전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3) 발표 자료 등으로 만들어졌으나 출판되지 않는 경우 괄호 안에 “미간행”이라고 표기하고, 학술대회 등의 발표 자료라면 학술발표 년,

월, 일을 기입하고 쉼표를 한 후 미간행임을 표기한다.

예) 김길동 (2010, 5, 3, 미간행). 국가안보·국민안전 서비스의 발전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서울: 프레스센터.

3) 원전의 서지 사항

- 동양과 국내의 학술지명이나 저서명은 중고딕체로, 서양 문헌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영문 제목이나 부제는 시작 단어의 첫 알파벳만을 대문자로 쓴다.
- 참고자료가 책과 같은 통상적인 출처에서 나오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내용을 제목 옆에 대괄호([ ])를 하고 써 준다.

예) [CD-ROM], [On-Line} 등

(1) 정기 간행물

① 정기 간행물

- 정기 간행물은 간행물의 완전한 이름과 권수를 중고딕체로 쓰고 본문 인용 때의 표기 방식과 달리, 권수 앞에 “Vol.”이란 글씨를 쓰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로 권수를 적는다. 그리고 권수 번호에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호수를 적고 이어서 쪽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적는다.

② 대학의 논문집

- 대학의 논문집의 경우 기관지명이 유사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발행기관을 명시한다.

예) 김길동 (2013). 안전서비스의 효율적 목표달성에 관한 연구. 안전연구, 5(1), 56-87. 안전대학교 일반대학논문집.

③ 신문 기사의 인용

- 사설이나 일반 기자가 쓴 기사는 신문명을 저자명으로 취급하고, 발행일자의 연, 월, 일을 괄호로 묶어 쓰고, 기사의 제목과 게재면을 표시한다.

예) 안전일보 (2009, 3, 1). 안전 관리자의 책임. 5면.

- 독자 혹은 특정인의 기고라면, 이 기고자의 이름을 저자로 취급하여, 일반학술지에 실린 문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익명의 기

고일 경우는 기사의 제목 두세 단어로 기사 작성자명을 대신한다.
예) 홍길동 (2009, 3, 1). 민간경비원의 책임. 경비일보, 5면.

④ 잡지 같은 정기 간행물
예) 김길동 (2014, 겨울). 범죄의 수사구성, 수사연구, 55-98.

(2) 저서를 포함한 비정기 간행물

① 책, 보고서, 학위논문, 안내서(brochures), 요강(要綱), 시청각 매체 등을 포함해서 정기 간행물이 아닌 자료
예) 이길동 (2010). 민간경비론. 서울: 진영사.

② 논문 하나가 단행본으로 묶여진 긴 논문(monographs)의 경우
예) 저자명. (연도). 논문 제목. *논문집명, 권(호)*, 전 권이 아닌 경우 쪽수(연속 간행물인 경우는 일련번호).

③ 학위 논문
예) 김길동 (2014). 경호경비 산업의 발전 방안.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④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술 발표회 발표 논문
예) 김길동 (2014). 국가안보 인식의 개선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초록집.
김길동(2014). 국가안보 인식의 개선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심포지움 "국가안보의 의미".

⑤ 미간행 발표 자료
예) 홍길동 (2014).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 결산 보고.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연차 총회, 12월 22일. 경기대학교 대강당.

(3) 편집서나 저서에 포함된 단일 논문의 인용

- 인용한 장(章의) 저자명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적고 마침표를 찍고 장의 제목을 적는다. 그리고 전체 책을 엮은 편집자의 성명을 적고 한 칸 띄고 편집일 경우 '편' 저서일 경우 '저'(영어는 편집자명 앞에 "In"을 넣어 시작하고 괄호 안에 ED./편집자가 복수일 경우 Eds.)라고 표시한 후 저서명(중고딕체)을 적고 괄호 안에 해당 쪽수를 적어 넣는다.

예) 한상희 (2006). 경찰과거청산의 올바른 방향. 최응렬 (편). 경찰개혁론 (pp. 5-15). 서울: 법문사.

⑥ 역서와 편역서의 경우

예) 원저자명 (번역서 출판년도). 번역서명(중고딕체, 영문은 이탤릭체) (역자명 역/편역). 출판지: 출판사. (원전의 출판년도).

예) Durkheim, E. (2008).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황보종우 역). 파주: 청아출판사. (원전은 1897에 출판).

⑦ 초록 문헌의 경우

예) 김길동(2014). 국가안보 인식의 개선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심포지움 "국가안보의 의미".

⑧ 재인용한 자료들의 제시

- 본문에서와 달리 참고 문헌 목록에는 재인용 문헌만을 제시한다.

⑨ 논문, 책, 영화, 비디오, TV프로그램 등의 논평 문헌 표기

예) 논평자 성명 (출판연도). 제목 [자료가 기술하고 있는 원자요의 형태와 제목]. 자료가 실린 서명, 권(호), 페이지.

※ 논평 문헌이 아니라 매체를 직접 인용한 경우

예) 감독 및 제작자의 이름 (역할) (년도). 제목. [원자료 형태] 방영지역(비디오 경우 출시회사 주소지): 방송사명(비디오 경우 제작사명).

예) 김철민, 조현탁 (감독) (2010). 대물. [TV 연속극] 서울: SBS TV.

(4) 전자 매체 등 인터넷 간행물의 표기

- 인용한 내용의 출처가 마이크로 필름이나 시디롬, 온라인 등의 매체일 경우 그 출처 형태와 출처 정보를 표시한다.

예)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main/main.html, 2014년 12월 22일 검색)

(5) 출판 장소와 출판사

- 저서의 경우 출판 사항에 출판 도시명과 출판사명을 적는다.
- 출판지가 잘 알려진 도시가 아니거나 다른 곳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도시명 다음에 쉼표를 하고 국가명(미국은 주(州)명을 공식화된 약자로)을 적는다.

- 출판사명은 알아볼 수 있을 만큼만 간단하게 적고 associations, corporatio ns, university press 등은 적되 *Publishers, Co., Inc.*, 등의 불필요한 용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면 뺀다. 그러나 *Books*와 *Press*와 같은 고유 명사는 그대로 쓴다.
- 원전의 출판 도시가 하나 이상일 경우 맨 앞에 나와 있는 출판지나 출판사의 본사가 있는 출판 도시를 적는다.

Ⅳ. 서 평

1. 서평은 기획서평과 일반서평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편집위원회가 기획하고 후자는 저자 의뢰 혹은 평자 기고로 이루어진다. 저자 의뢰의 경우 서평을 위한 저서의 제출이 이루어진 후 편집위원회에서 평자를 추천받아 서평을 의뢰한다.

2. 기획서평은 연구서에 대한 비평적 소개를 넘어 연구주제, 참고문헌, 각주 등 논문의 특징을 온전히 갖춘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으로, 심사(可否만 판정)는 2인의 편집위원이 한다.

3. 일반서평은 연구서의 내용 요약, 기여 평가 등 비평적 소개로 참고문헌, 각주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분량은 1권당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로, 심사(可否만 판정)는 2인의 편집위원이 한다.

4. 서평은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가격, ISBN을 포함한다.

Ⅴ. 기 타

1. 외래용어 및 외국어
   - 외래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고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

기한다.

- 외국 인명과 논문 제목은 원어명은 그대로 표기한다.

2. 표와 그림

- 표와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예, 표 1, 그림 1), 표 제목(고딕체, 10pt)은 표 위쪽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그림 제목(고딕체, 10pt)은 그림 아래쪽 가운데에 위치시킨다.
- 표의 설명주는 "주 : 1), 2), 3)"으로 시작하고(※주: ( )은 점유율), 자료 출처는 아래 부분에 밝힌다(※ 자료: Duncan, 1981: 349의 재구성).
- 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는 *p<.05, **p<.01, ***p<.001과 같이 표기한다.
- 표 작성에서 줄긋기는 가로줄만을 사용하며 세로 테두리선을 쓰지 않는다. 가장 바깥 가로 선은 굵은 선을 쓰고 안쪽 가로선은 가는 선을 사용한다.
- 그림에서는 x축과 y축과 곡선·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 주어야 한다.
- 원고 작성의 편의상 표와 그림은 본문에 그 위치만 표시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3.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름을 밝혀 적는다.

4.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논문집필요령은 미국심리학회 출판 지침서(APA) 및 한국심리학회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 지침을 참고로 작성되었으며, 본 논문집필요령에 없는 내용은 미국심리학회 출판 지침서(APA)에 따른다.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4. 12. 22 제정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이하 '본회'라 칭함) 회칙 제4조의 2호에 규정된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 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편집이사로 하며,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① 편집위원은 전문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부교수 이상의 자나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자로 한다. 단 상임이사회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편집위원으로 임명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국내 대학의 공식적인 연구논문집, 연구기관의 공식적 연구지, 학회의 연구지 등 권위를 인정받는 연구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

상)에 1년을 기준으로 3편 이상의 게재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③ 기타 이사회는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인정할 수 있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이때에도 전항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 【업 무】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회지 발간 업무를 집행한다.

-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 2차 심사(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 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

제6조 【논문심사위원의 선임】

①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안보, 안전, 치안, 범죄, 경호, 경비, 소방, 보안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② 편집위원들이 익명으로 된 각 투고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3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7조 【논문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1편, 논문심사의견서 등을 우송한다.

제8조 【논문심사】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①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에 대한 학술지 적격 여부를 판정한 후, 심사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 당 3인의 심사위원들이

선임되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 학회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 각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평가서에 실증논문과 개관논문 또는 이론논문을 구분하여, 7개 심사기준별로 7점 척도에서 평가하며, 총점에 따라서 심사결과를 '수정없이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 '추가의 경험적 연구 첨가 및 재심사후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각 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하여, 필요시 논문수정 제의 요구서를 첨부하여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

② 2차 심사는 '부분 수정 후 게재' 또는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의한다. 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⑤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

게 통보한다.

제9조 【논문 심사료】

심사에 회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6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제10조 【논문게재료】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학술지 20쪽까지는 쪽수에 관계없이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 편당 20만원,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편당 2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20쪽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21쪽부터 한 쪽당 1만원을 초과한 분량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

① 학술지 내에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 명단과 각 권호의 심사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② 국문논문은 국문제목, 저자 및 소속, 국문요약, 국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③ 영문논문은 영문제목, 저자 및 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국문요약, 국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④ 공동논문의 경우, 제 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 1저자 다음에 논문에 대한 기여도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⑤ 공동논문의 경우, 저자주에 제 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⑥ 학회지 논문의 게재순서는 해당 권호의 심사용 원고를 제출한 순서에 따른다.

제12조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제13조 【게재예정증명서】

본 학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저자의 요청에 따라서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된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심사요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 【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편집위원회이외의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15조 【기타】

본 학회지의 투고논문 작성 세칙 또는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가 발간한 출판지침(Publication Manual) 최근판을 참조한다. 그 외에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 【운 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편집이사를 둘 수 있다.

제17조 【내규개정】

내규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8조 【시행일】

이 내규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 【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당시의 편집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연구윤리 규정

2014. 12. 22 제정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의 학술지인 본 학회지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논문기고자들에게 이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연구윤리규정은 1장 연구윤리, 2장 연구진실성심사로 나뉜다.

제1장 연구윤리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①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③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④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2조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심리학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①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②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

①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학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면동의는 참여자의 서명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참여자가 영아, 유아, 또는 독립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기타의 경우 법적인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다.

-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 비밀 보장의 한계
- 참여에 대한 보상
- 연구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로 문의한다.

② 실험 처치가 포함된 개입(intervention) 연구를 수행하는 심리학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 실험 처치의 본질
-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5조 【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②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6조 【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학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②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동의 면제】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참여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①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 연구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②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③ 위 1.항의 경우에도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음을 참여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연구 불참여의 의사결정 기회를 부여한 후에 연구를 시작한다.

제8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해당 학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에서 속이기】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②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

고 속이지 않는다.

③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는 시점을 넘지 않는 기간에 구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0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설명(debriefing)】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

③ 사후설명 정보의 제공은 구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동물의 인도적인 보호와 사용】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 연구에서 동물실험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의 기본 의무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 이외의 대안적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② 동물실험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하며, 실험방법, 사용하는 동물의 종, 동물의 수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적 기준에 따라서 동물을 확보하고, 돌보고, 사용하며, 처리한다.

④ 동물 피험자의 고통, 통증 및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대안적인 절차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그리고 그 목적이 과학적, 교육적 또는 응용 가치에 의해 정당화될 때에만 동물을 통증, 스트레스, 혹은 박탈 상황에 노출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결과 보고】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②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제13조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주요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이중출판)와 부적절행위를 말한다.

① 주요부정행위 : 주요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이중출판을 포함한다.
-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data)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data)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 "왜곡"이라 함은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자료(data)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다. 연구자료(data)가 정확하더라도,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주요부정행위이다.
-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타인이 기 발표한 연구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할 때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 출간물에 게재된 아이디어, 사실, 공식, 기타 정보로서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논문에 사용할 수 있다.
- 이중출판 :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이전에 출판된 연구결과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자료(data)나 결과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심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주요부정행위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자료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 출판에 해당할 수 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학술지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연구자는 투고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할 수가 있다.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자료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소개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동일한 연구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것은 이중출판으로 간주한다. 단, 다른 언어의 학술지에서 그 논문을 인지하고 그 편집장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부적절행위 : 주요부정행위처럼 직접 책임이 있는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단순히 어떤 지위나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 기재되는 것은 연구부적절행위이다.
- 조사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결과 과장홍보
- 주요부정행위 교사·강요 :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주요연구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의 직접 인용 : 과거에 발생한 주요부정행위의 결과를 직접 인용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할 경우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단, 학회에서는 이러한 주요부정행위 논문이나 출판에 대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출판 업적】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용어정의

- 주저자(책임저자)는 주연구자, 연구그룹장(팀장) 또는 실험실 책임자 등이 된다. 주저자의 역할은 논문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확인하며 연구결과물의 정당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 그리고 논문원고 준비동안에 공저자간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도 맡는다. 주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고,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명 기재의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저자들간 합의를 도출한다.
- 제1저자는 저자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한 연구자로서 자료/정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자로 규정한다. 주저자가 제1저자가 될 수도 있다.
- 교신저자는 투고저자라고도 하며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하여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 눈문투고, 심사자와 교신역할을 하며, 연구물의 첫장 각주에 교신저자의 연락처를 제시한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저자들간 합의에 따라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에 기초한 경우 학생 또는 논문지도교수가 할 수 있다.
- 교신저자가 주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구물의 첫장 각주에 주저자의 연락처도 제시해야 한다.
- 공동저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③ 출판물에서 저자로 기재되는 경우는 학술적 · 전문적 기여가 있을 때에 한정된다.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한다.

④ 학술적 · 전문적 기여라 함은 실제로 글을 쓰거나 연구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의미한다. 상당한 기여는 가설이나 연구문제의 설정, 실험의 설계, 통계분석의 구조화 및 실시, 그리고 결과해석을 포함하는 주요부분의 집필을 포함한다.

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실질적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단, 학위논문을 대폭수정하거나 추가 경험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한 경우, 그리고 기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⑥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출판할 경우 그러한 사항을 논문 첫 쪽의 각주에 명시한다.

제15조 【자료보관 및 재검증을 위한 공유】

① (보관)
- 수집된 원자료를 매체(디스켓, CD, USB 등)에 기록하고 보관하는 주 책임은 주저자에게 있다. 매체에 기록된 자료를 기록자료라고 한다.
- 기록자료를 포함하여 연구결과의 결론도출에 근거가 된 자료를 근거자료라고 한다. 근거자료의 보관은 동료 연구자 또는 학계의 다른 연구자에 의한 검증을 허용하기 위하여, 출판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거자료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에 의하지 않는 한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 연구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confidentiality)가 어려운 경우
- 소유한 근거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는 경우
- 재검증의 필요가 없음을 편집위원회에 소명하여 인정된 경우

③ 전항에 의해 근거자료를 제공받은 심리학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근거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근거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근거자료를 요청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하지 않으면 연구부적절행위로 간주되고 연구진실성심사의 대상이 된다.

제16조 【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심리학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 훈령 236호 (2007. 2. 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심리학자 윤리규정 (2003. 8 제정, 2004. 8 수정)의 3장 “연구관련 윤리”.
APA 심리학자 윤리규정 (2002 제정)의 8장 “연구 및 출판”.

프린스톤대학교 학부생을 위한 출판규정 (2006-2007).

서울대학교 연구지침 (2008. 7. 30).

과기총뉴스레터 (2008. 8.5). “올바른 논문저자 표기와 연구윤리”.

연구윤리정보쎈터 “좋은연구” 웹사이트 (http://좋은연구.kr, 또는 http://www.grp.or.kr). (2008. 8.15) “연구활동의 스펙트럼”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2006. 6.16. 규칙 제1563호)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007. 1. 2 제정).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2007. 3. 19 제정).

제2장 연구 진실성 심사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심사·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①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③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편집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④ "본 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판정"이라 함은 본 조사를 완결하고, 결과에 대한 처리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에 기고하는 모든 저자들 및 관련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적용절차】

① 제보 또는 혐의가 접수 된지 15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서 연구진실성예비조사위원회(이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로 본조사의 필요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연구진실성 본조사위원회(이하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로부터 본조사완결보고서를 접수하면 편집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판정사항을 관계자 및 해당기관에 알린다.

④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5조 【예비조사위원회】

①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편집위원회에서 인지한 혐의도 접수절차를 거쳐서 처리한다.

제7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제보·인지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완료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제보내용이 본 학회지의 윤리규정 제1부 13조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제보일이 연구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제보일이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본 학회지에 기고하였으면 조사대상이 된다.

제8조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③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 【예비조사 결정】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0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예비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본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무를 완료한다.

제11조 【본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조사위원회는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윤리위원회와 공조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예비조사 또는 본 조사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판정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본 조사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서 제척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본조사위원에게 조사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 본조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본 조사에서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본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물
- 해당 연구물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관련 증거 및 증인
-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판정 또는 조치 필요사항
-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제17조 【판정 및 조치】

① 본조사결과의 판정 및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연구 부정행위 해당논문은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되고, 해당저자(들)은 1 ~3년간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또한 학회 회원 자격 여부(회원자격 박탈, 회원자격 정지, 자격(면허) 상실, 자격(면허) 정지)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판정사항은 제보자,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산하 학술지 편집위원장, 기고자, 기고자의 소속연구기관에 통보한다.

제18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한다.

① 학회 홈페이지에 실린 논문 삭제 및 표절 사실 공시

②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의 투고 및 학회 세미나 등의 발표 및 토론자로 5년 이하의 참여금지

③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통보

④ 기타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제20조 【시행세칙】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표절 규정

2014. 12. 22. 제정

제1조 【정 의】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나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 【유 형】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를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 【심사주체】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 【제 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한다.

① 학회 홈페이지에 실린 논문 삭제 및 표절 사실 공시

②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지의 투고 및 학회 세미나 등의 발표 및 토론자로 5년 이하의 참여금지

③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통보

④ 기타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논문투고 일정

순서	전반기	후반기
원고접수마감일 / 발행예정일	4월 30일 / 6월 30일	10월 31일 / 12월 31일

1. 논문투고 규정에 관한 안내

1) 논문투고 규정에 관한 안내

1. 위에 명기된 접수 마감일은 매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접수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다음호로 연기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투고된 논문은 학회에 소속되며, 연구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작성규정 : 학회지 편집양식 A4 용지 20매 기준 (별쇄본 및 심사료 포함)
4. 논문투고시 단독저자-1편, 공동저자-1편으로 총 2편으로 편수제한
5. 투고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저자명을 표기할 때 저자가 다수인 경우 한국연구재단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순으로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논문투고 방법안내

온라인 논문투고 : knspsa2014@gmail.com 또는 홈페이지(http://www.knssa.com)

3. 온라인 논문투고 후 문의

담당자 : 이치영 (010-9263-2702/knspsa2014@gmail.com)

한국국가안보 · 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편집위원	곽대훈 (충남대)	김도우 (경남대)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김태훈 (성신여대)
	이 훈 (조선대)	장항배 (중앙대)	최 관 (한세대)	
	Dr. Bankole Cole(영국) (Sheffield Hallam University)		장성준(미국) (Baylor University)	
	Dr. David Baker(호주) (Federation University at Australia)		Hochschule Hannover(독일)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 Arts)	
	Vesna Markovic, Ph. D. (University of New Haven, Henry C. Lee College of Criminal Justice and Forensic Science)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1호

인쇄일 2015년 6월 28일
발행일 2015년 6월 30일
발행인 박준석
편집인 윤민우
발행처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449-71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대학로134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5층 박준석교수 연구실
전화 (031) 8020-2633
FAX (031) 8020-2882
E-mail knspsa2014@gmail.com
Homepage http://www.knssa.com

인쇄처 백산출판사
전 화 (02) 914-1621(代)
F A X (031) 955-9911
editbsp@naver.com www.ibaeksan.kr

비매품